

2 0 0 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국가인권위원회



이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내용과 2004년도 향후과제 및
개선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연간보고서입니다.

Contents

목 차

제1편	총론	9
-----	----	---

제2편 주요 활동 및 평가

제1장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19
제1절	개요	19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20
2.	인권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40
3.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권고	51
4.	인권상황 실태조사	55
5.	청문회, 토론회 등 운영	64
6.	기타: 논문 공모 및 인권 일반 지침개발 등	77
제3절	평가	80
제2장	인권상담의 접근성과 전문성 제고	83
제1절	개요	8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84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현황	84
2.	진정사건 및 상담사례 유형 분류	87
3.	면전진정 접수의 안정화	104
4.	인권상담 전문성 제고	110
제3절	평가	112

Contents

제3장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구제	115
제1절 개요	115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16
1. 개관	116
2. 검찰·경찰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123
3.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125
4. 기타 국가기관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129
5.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134
제3절 평가	135
제4장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137
제1절 개요	137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38
1. 개관	138
2. 평등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148
3.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53
4.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56
5.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57
6.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58
7.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61
8.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62
9.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64
10. 기업의 입사지원서상 차별관행 조사	168
제3절 평가	171
제5장 교육·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173
제1절 개요	17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74

Contents

1. 인권교육 시스템 구성 추진	174
2. 인권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여건 조성	176
3. 인권교육 실태조사	180
4. 인권교육 관련 기관 협의 및 교육 활성화	182
5.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184
6. 월간 <인권> 발간	187
7.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188
제3절 평가	190
제6장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 등과 교류협력의 활성화	193
제1절 개요	19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94
1. 인권시민단체와 협력 강화	194
2. 국제교류 협력체계의 구축	199
제3절 평가	207
제7장 인권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	211
제1절 개요	211
제2절 주요 추진실적	211
1. 인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11
2. 인권 정보자료 서비스 체제 구축	215
제3절 평가	218
제8장 특별사업	219
제1절 차별금지법(안)제정 추진	219
1. 추진배경	219
2. 주요 추진실적	219
3. 평가 및 향후계획	221

Contents

제2절 태스크포스팀(TFT) 운영	221
1. 국가보안법 TFT	222
2. 사회보호법 TFT	223
3. 비정규직 TFT	226
제3절 북한인권연구팀 운영	228
1. 추진배경	228
2. 활동 사항	229
3. 평가 및 향후 계획	232
제4절 지역순회상담 및 홍보	232
1. 원거리 지역의 인권상담 접근성 제고	233
2. 지역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장 간담회 개최	234
3.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홍보 활동	234
4. 평가	235



제3편 인권 보호·향상을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

제1절 인권정책업무의 체계적인 수행	239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마련	239
2.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241
3. 주요 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수행팀 운영	242
4. 북한인권 관련 사업	243
제2절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친화적인 법령 및 제도의 실현	244
1. 인권법령정비시스템의 구축	244
2. 국제인권협약의 국내 이행사항 모니터링	245
3.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체계화	246
제3절 인권 보호 기능의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247
1. 진정사건 조사·구제의 실효성 확보	247
2. 지방사무소 설치	248

Contents

3. 인사·예산의 독립성 확보	249
제4절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체계 구축	251
1.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251
2.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51
3. 인권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의 극대화	252
4.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253
제5절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협력관계의 활성화	254
1. 국내 인권단체와 협력 토대 마련	254
2.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255
3. 인권 관련 국제기구·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 강화	257
4. 국제인권기구에 주재관(연락관) 파견	258



부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61
2. 위원회 조직 및 부서별 기능	264
3. 2003년도 위원회 운영실적	269
4. 2003년도 주요 업무 일지	270
5. 국제기구의 권고 사항	296
6. 유엔인권기구 및 국제 NGO 현황	308
7. 우리나라의 국제인권협약 가입 현황	312
8. 위원회 발간자료	315

Contents

표 목 차

<표 2-1-1>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20
<표 2-1-2> 인권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 표명	41
<표 2-1-3>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권고	52
<표 2-1-4>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현황	56
<표 2-1-5> 청문회 및 토론회 개최 현황	65
<표 2-2-1> 월별 진정·상담 및 안내 접수 현황	84
<표 2-2-2> 진정접수 사건의 유형별 분류 현황	90
<표 2-2-3> 진정인의 지역별 분포현황	91
<표 2-2-4> 진정인의 성별 분포 현황	92
<표 2-2-5> 진정인의 연령별 분포현황	92
<표 2-2-6> 외국인 관련 진정사건 유형별 현황	93
<표 2-2-7> 외국인 진정인 · 피해자의 국적별 현황	94
<표 2-2-8> 상담처리의 유형별 현황	95
<표 2-2-9> 상담처리의 경로별 현황	96
<표 2-2-10>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	97
<표 2-2-11> 인권침해 상담의 내용별 현황	98
<표 2-2-12> 차별행위 주체별 현황	100
<표 2-2-13> 차별행위 상담의 사유별 현황	101
<표 2-2-14> 차별행위 상담의 영역별 현황	102
<표 2-2-15> 기타 상담의 유형별 현황	104
<표 2-2-16> 월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105
<표 2-2-17> 시설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106
<표 2-2-18> 면전진정 신청 철회 사유별 현황	108
<표 2-2-19> 면전진정 신청 사례 중 상담종결 사유별 현황	109
<표 2-3-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117
<표 2-3-2>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유형별 현황	117

Contents

<표 2-3-3>	대상기관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118
<표 2-3-4>	대상기관별 주요조치 내역	118
<표 2-4-1>	차별행위 진정사건 월별 접수 현황	139
<표 2-4-2>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유형별 현황	140
<표 2-4-3>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접수 및 처리 현황	141
<표 2-4-4>	차별행위 진정사건 영역별 접수 및 처리 현황	142
<표 2-4-5>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처리유형별 현황	143
<표 2-4-6>	차별행위 진정사건 주요 조치내역	144
<표 2-4-7>	기타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유형별 현황	167
<표 2-4-8>	기타 진정사건의 각하 사유별 현황	168
<표 2-4-9>	입사지원서상 차별항목 조사대상 기업(100개)	170
<표 2-4-10>	입사지원서상 차별항목 자진삭제 현황	171
<표 2-5-1>	인권교육 강사단 강의활동 실적	177
<표 2-5-2>	인권교육자료 개발·활용 현황	179
<표 2-5-3>	인권 영화 <여섯 개의 시선>의 국제영화제 초청 현황	185
<표 2-5-4>	인권 사진 프로젝트 제작 현황	186
<표 2-5-5>	월간 <인권> 발간 현황	188
<표 2-5-6>	진정안내 홍보물 배포내역	190
<표 2-6-1>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 현황	195
<표 2-6-2>	시민실천프로그램 용역사업 추진 현황	197
<표 2-6-3>	국제회의 참가 현황	202
<표 2-6-4>	외국의 국가인권기구 방문 현황	203
<표 2-6-5>	국가인권기구간의 직원교류 현황	204
<표 2-6-6>	국제 연대서한 발송 현황	205
<표 2-6-7>	국외 인사의 위원회 방문 현황	206
<표 2-7-1>	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 콘텐츠 내용	215
<표 2-7-2>	인권자료실 장서 현황	216
<표 2-8-1>	지역순회상담 전체 일정	234
<표 2-8-2>	지역순회 인권상담 및 교육·홍보 실적	236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2-2-1> 월별 진정, 상담 및 안내 현황	85
<그림 2-2-2> 경로별 민원 접수비율	86
<그림 2-2-3> 진정사건 분류	88
<그림 2-7-1> 인권종합정보시스템 구성도	212
<그림 2-7-2> 진정처리 시스템 구성도	213

제1편

총론



총론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벌인 지난 2년간의 활동은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비민주적·반인권적 문화의 청산과 ‘인간다운 삶’의 지표를 제시하기 위한 희망의 여정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사실상 활동 원년인 2002년이 인권 토양이 척박한 우리나라에 인권이라는 씨를 뿌린 해였다면 2003년은 거기에서 작은 싹을 틔워 낸 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부터는 이 싹을 잘 키워 내면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곧 위원회 제1기를 마무리하는 것과 함께 제2기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2003년은 무엇보다 위원회가 국민들 속에서 분명히 뿌리를 내린 해로 기록될 수 있다. 기존의 관행과 제도에 낙담하고 좌절한 사람들은 이제 위원회를 찾아와 호소한다. 사회적 현안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은 위원회의 의견을 기다리게 됐다. 저 멀리 있는 것으로만 여겨지던 ‘인권’이란 가치가 국민들의 일상과 마음속에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었다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상담과 진정 건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위원회 출범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구금시설 수용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면전진정’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신청 건수가 급증하였다.

“우리나라의 많은 국가기관이 힘있는 사람들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권위원회는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에 보내 온 어느 진정인의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세상에서 소외되고 하소



연할 데가 없는 이들에게 위원회는 새로운 의지처가 되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권의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법령과 정책 마련에 있어 인권을 중요한 기준으로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2003년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라크 전쟁, 외국인 노동자 문제, 호주제, 테러방지법 수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 이들 법과 정책이 인권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노력했다. 또한,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통합특별법, 북파공작원 관련 특별법 등의 제정을 권고하는 등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법령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다.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개별적인 인권문제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종합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또한, 각종 차별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및 비정규직 문제 등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제수행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 가동하였다.

위원회는 이 같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다. 국민 스스로 인권을 가치판단의 중심으로 여기게 하고, 정책 결정의 주체로 나서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려고 했다. 크고 작은 현안마다 각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토론회 등을 열었고 여기서 이뤄진 활발한 논의가 위원회 활동의 실질적인 토대가 됐다.

위원회는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도 많은 힘을 쏟았다. 2003년에는 인권상황 실태조사 용역과제 중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등 10개 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를 완료했으며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등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하여 총 15회의 청문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과 진정사건의 근본



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가 되고 있다.

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인권상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3년 5월 13일부터 5월 28일까지 부산, 광주, 전주, 대전 등 4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및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였다. 아울러 순회 상담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인권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기관장 간담회를 열어 지역 인권 현안 및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했다.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를 위한 위원회의 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인권 침해사건의 경우 위원회 출범 이후 2003년 12월 31일까지 총 5,874건을 접수하여 이 중 4,502건을 처리하였고, 차별사건은 총 547건을 접수하여 이 중 398건을 처리하였다. 그 동안 진정사건처리 시스템의 개선과 제도개선 사항 발굴, 조사관 사건처리 역량 강화 등 적극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시정 노력으로 2003년 총 처리건수는 2002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조사인력의 부족과 관계기관의 미온적인 협조 등으로 사건처리까지 지연되고 있다.

2003년 인권침해행위와 관련한 진정사건은 주로 경찰 등 수사기관과 구금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위원회는 경찰관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와 가혹행위에 대한 징계권고, 1인 시위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행위에 대한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그리고 구금시설의 연속징벌에 의한 수용자 사망에 대한 법률구조 요청,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조사와 구제활동을 전개하였다.

일상 속에 굳어진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와 시정도 더욱 폭넓고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기업의 채용상 차별관행 개선을 위하여 국내 주요 기업 및 공사 등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를 조사한 결과,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중 지원자의 능력이나 채용분야 업무와 연관성이 적고 불합리한 차별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가족사항, 신체사항 기재항목 등을 삭제토록 권고하여 채용상의 관행적 차별행위 시정 및 사전예방



에 기여하였다.

위원회는 2003년에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노력하였다. 먼저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인권 친화적인 사회·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의 로드맵(Road-Map)이 될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학교교육 내에 인권교육을 통합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초·중·고 인권교육과정(시안) 개발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아울러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정부,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인권교육 실태 조사·분석 사업을 실시해 향후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인권교육 강사단 운영, 인권교육 자료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권교육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다.

또한 인권영화 <여섯개의 시선>, <인권사진전>,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행사 주관을 통해 국민들에게 인권이라는 가치를 알기 쉽고 친숙하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시민실천 프로그램 등 인권시민단체와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시민단체의 인권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2003년은 국제적으로 이라크 전쟁 발발 등을 계기로 안보와 인권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부각된 한 해였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출범, 「모든 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협약」의 발효, UN인권위에서 대북결의안 채택, 정보화 사회의 인권문제, 장애인권리협약의 성안 문제 등이 국제적인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한편 제32차 UN아동권리위원회와 제63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의 국가보고서가 심의되기도 하였고, 사회권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사회권 진전에 대한 보고서가 심의되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유엔인



권위원회,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등 국제기구 및 NGO가 주최하는 각종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가하였으며,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회의와 제9차 APF연례회의의 한국 개최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위원회의 국제적 입지를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를 확인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전문성과 인권의식 등을 고양해 직원의 역량을 키우고 국내외 인권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눈에 보이는 침해와 차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론화할 것이다.

위원회의 법적·제도적 한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이다.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독립적 국가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국 각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위원회에 쉽게 접근하여 인권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사무소의 설치가 시급하다.

이 같은 법적·제도적 보완책들이 마련되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확보될 때 위원회는 인권의 실현이라는 헌법상의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기구로서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2편

주요활동 및 평가

제1장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제2장 인권상담의 접근성과 전문성 제고

제3장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구제

제4장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제5장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제6장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 등과 교류
협력의 활성화

제7장 인권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

제8장 특별사업

제1절 개 요

“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따라서 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함으로써 인권침해와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시키는 제도와 관행들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왔던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대변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2003년 한 해는 2002년 활동의 연장선 속에서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사회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권고,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 표명,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 권고, 「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 등 미가입협약에 대한 가입 권고 등 인권 현안으로 부각된 법령과 정책, 제도 등 총 27건에 대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고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국회 또는 해당 행정기관에 표명하였다.

이러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각종 정책사안에 대하여 철저한 자료 분석과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해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문회 및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제23조)을 개최하였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위원회는 <표 2-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 제19조에 의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 등 법령 및 규칙 등에 대하여 총 16건의 제·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관련 부처와 입법부에 제출하였다.

<표 2-1-1>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연번	권고 제목	권고 내용	의결일자	해당기관	처리결과
1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에 대한 의견 표명	소년의 보호관찰 등에 대한 조화와 회보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 권고	2003.3.10	법무부	수용
2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삼청교육 전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 권고	2003.3.10	국회 국방부	수용 (’03.12.29)
3	북파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북파공작원의 실체인정,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 권고	2003.3.12	국회 국방부	국회수용 (’04.1.9)
4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 관련 법령에 관한 의견 표명	지방병무청장의 자의적인 병역감면처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 수정 등 전면 개정의견	2003.3.24	국방부 병무청	검토중
5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정신질환자 등 운전면허 결격 사유와 재취득 제한 규정, 초보운전자특별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2003.4.15	경찰청	수용
6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표명	근로자의 안전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사업주 의무 등 규제 강화 등 개선 권고	2003.4.15	노동부	미수용
7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독학사 학위취득 시험의 부정행위자들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규정에 대한 개선 권고	2003.4.30	교육인적 자원부	미수용
8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외국인 지문날인 대상자를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	2003.7.14	법무부	일부수용



연번	권 고 제 목	권 고 내 용	의결일자	해당기관	처리결과
9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진상규명 및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통합특별법의 제정 권고	2003.7.14	국회 국무총리	미수용
10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교도소와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중인 자 및 행방불명자를 현행법과 같이 납부 예외 지역기일자로 규정하고 납부예외 대상인 교도소 수용자를 '행형법 제2조에 의한 교도소 등의 수용자'로 확대할 것을 권고	2003.8.14	보건복지부	수용
11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신설하는 영업의 제한 규정(제9조의2)이 법령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므로 수범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할 것을 권고	2003.8.25	보건복지부	미수용
12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로마규정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한 '범죄구성요건'을 참조하여 범죄행위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하고 로마규정에 포함된 전쟁범죄를 법안에 수용할 것을 권고	2003.9.22	법무부	검토중
13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	①현행법과 제도 등으로 테러방지 대책이 가능 ②특수부대 출동 요청 등의 위헌 소지 ③정보기관의 권한 강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 ④상당수 조항에 헌법 및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 등으로 인해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므로 입법 반대 의견 표명	2003.10.22	국회	검토중
14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표명	개정규칙안의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항목 중 5개 항목(신체사항 중 혈액형, 가족사항 중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 표명	2003.10.22	교육인적자원부	미수용
15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헌법 제10조와 제17조 등에서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권고	2003.11.10	행정자치부	일부수용
1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제243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심의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부 조항은 반대하고 일부 조항은 재고할 것을 표명	2003.11.28	국회	일부수용



(1)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표명

2002년 12월 5일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2003년 3월 6일 시행예정으로 있었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작성하여 2003년 2월 6일 입법예고하였다.

위원회는 본 법률 및 개정령안 내용 중에 형벌집행 후에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전과기록 등과 관련된 사항 중 소년법에 대한 고려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토에 착수하였다.

개정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이 ‘범죄경력자료’의 범위에 대하여 소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개정령안에는 소년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 「소년법」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32조제5항과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70조제1항의 취지가 개정령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독일의 경우 유죄판결 등을 등록하는 「연방중앙등록법」에서 소년법에 대하여 전과기록의 보존기간을 성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단기(短期)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년법에 대한 조회와 회보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2003년 3월 10일 「소년법」 제32조제5항 및 「소년법」 제70조제1항에 규정된 소년보호의 취지를 감안하고 성인이 아닌 소년 범죄 등에 대하여 성인의 범죄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대한 조회와 회보를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개정령안 제7조에 수사 자료의 조회 및 회보제한 등을 별도로 조문화(條文化)할 것임을 통보해 왔다.



(2)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삼청교육 피해자는 1980년 8월 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명의 시민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군부대에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수용하여 강제적인 순화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당시 강제 연행된 ○○명의 피해자들은 군부대 내 순화교육 중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장과열, 뇌진탕, 질식사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증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동안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정부측에 피해배상 및 명예회복, 특별법의 제정,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재정 부담 능력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표하면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모아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크게 진전을 시키지 않았다. 더구나 삼청교육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한 약속과 국방부의 피해자 신고 접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피해배상 및 명예회복 등을 위해 위원회에 여러 차례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진정사건은 위원회법 제32조에 의거 기간의 도과로 ‘각하’되었으나, 위원회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당시 피해 현황 및 정부의 피해보상 추진과정을 검토하고 피해자들의 요구 및 정부, 법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특별법이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모든 법적 구제수단을 차단당한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삼청교육피해관련특별법을 제정하여 삼청교육 전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2003년 3월 10일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위 특별법을 제정할 것



을 권고하였다. 위원회의 권고가 수용되어 2003년 12월 29일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보상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국방부는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여 2004년 8월부터 삼청교육 피해자 또는 유족들로부터 보상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3) 북파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북파공작원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된 자로 인권을 유린당하는 혹독한 훈련과정을 거친 후 파견되어 사망·실종 혹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거나 북파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없었던 일명 ‘음지의 전사’라고 할 수 있다.

냉전시기에 요인암살, 납치, 테러 공작 등이 행해진 것은 전 세계 특수기관의 공통사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국가는 그 동안 정전협정 위반 사실이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과거 공작원의 실체와 그 피해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데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12부는 북파공작원으로 훈련을 받다가 장애인이 됐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과거 국가에 의해 인권이 침해된 피해자들이 사건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겪어 온 사실 관계를 토대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세계인권선언 제1조, 헌법 제10조 및 위원회법 제1조 규정에 의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을 천명하면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근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과거 북파공작원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에 대하여 더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대상은 사망자와 상이자인데, 실종자와 생존자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북파공작



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며, 「특수민원위로보상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이나 각종 추모사업 지원 또한 단기적이며 잠정적이다.

셋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특수민원위로보상규정」과 국회에서 개정을 시도한 바 있는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에 위원회는 2003년 3월 10일 민족분단과 냉전이 야기한 비극의 한 단면으로 북파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그 동안 드러내 놓지 못하고 음지에서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안할 때, 국가에 의해 인권이 침해된 피해자들에 대한 명확한 실체 파악을 비롯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국회와 국방부에 의견 표명하였다.

그후 위원회의 권고가 받아들여져 2004년 1월 8일, 북파공무원 관련 특별법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안」과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요원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및 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4)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관련 법령에 관한 의견 표명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 심사기준은 법령이 아닌 병무청장의 훈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일반인이 예측하기 어려우며 지방병무청장의 자의적인 감면처분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각도에서 검토 작업을 실시하였다.

헌법 제39조제1항의 국방의 의무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스스로 국가 공동체를 방위한다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국가의 자의적인 징집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적 자유 등을 보장한다는 소극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은 생계





유지근란을 이유로 한 병역감면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병역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7호에서 ‘재산, 수입’에 관한 사항이 병역 감면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생계유지근란자병역감면처리지침」(이하 ‘지침’)으로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75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둘째, 「병역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에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가족을 일정한 연령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지침 제14조제3항을 보면 ‘일정한 사람을 피부양자로 본다’고 하는 한편 동조제5항에서는 부양의무자로 간주하여 위임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셋째, 「병역법시행령」 제130조제3항은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국민역 편입기준을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침 제22조는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병역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 제22조제1항의 ‘객관적 기준’과 동조제2항의 ‘제한 사유’의 내용이 모두 명확하지 않다.

넷째,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침 제23조에서 ‘병역감면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병무사범방지심의대책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 제82조의2,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시행규칙 제97조에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그 근거가 미약하다 할 것이므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상위법령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이 병역 감면 대상자가 병역 감면 여부를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훈령을 통해서만 예측할 수 있다거나 그것도 최종적으로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역감면심



의회 위원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판단에 맡기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불명확하게 하고,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2003년 3월 24일 병역감면사항에 관하여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하거나 동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위임할 것을 권고하고 이와 더불어 보완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침 제14조제3항제5호의 6월 이상을 삭제, 지침 제17조제3항의 재산액 기준의 구체화, 지침 제22조 관련 병역감면처리상의 객관적 기준의 설정, 병역감면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지침 마련, 제23조 및 제25조의 전면 수정 보완 등을 국방부와 병무청에 의견 표명하였고, 해당부처는 이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다.

(5)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일부 조항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경찰청이 의견을 요청해 온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중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법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개정안 제82조제1항제2호, 제5호에서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중독자 등을 운전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2조제1항 국가의 평등 보장 규정과 제9조제12항의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제26조의 평등권 규정에 배치된다.

둘째, 개정안 제82조제2항 제5호, 제6호에서 일률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취득 후 1년 동안 확일적으로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헌법 제11조와 자유권규약 제26조 평등권,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15조 영업의 자유, 「UN의정신장애인권리선언」 제1조와 「정신보건법」 제2조의 이념과도 배치된다.

셋째, 신설 ‘초보운전자 관리기간 제도’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자유권규약 제2조제1항, 제26조에서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위원회는 2002년 7월 22일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경찰청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신질환자 관련 수사적성검사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통보해 왔으나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운전면허결격사유를 규정한 개정안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등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재취득 제한규정인 개정안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초보운전자 관리기간 제도’를 규정한 개정안 제2조, 제73조, 제83조, 제93조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3년 4월 14일 경찰청에 개선의견을 표명하였고 경찰청은 이를 수용하였다.

(6)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표명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도 근로자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근로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안)」(이하 ‘개정안’)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공표대상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해 산업재해 발



생건수, 재해율, 또는 순위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표 여부를 노동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실효성의 담보가 어렵고, 국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여 헌법 제34조 국가의 재해예방 의무, 제35조 국민건강권,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제7조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보장, 제12조 국가의 조치의무 등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근거한 시행령 제12조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선임의무를 완화한 것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헌법 제34조 및 「공업및상업부문에서근로감독에관한협약」 등에 부여된 국가의무, 헌법 제10조, 제35조, 사회권규약 제7조 등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 인권을 궁극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셋째, 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작업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사용허가 의무직을 제조·사용·해체·제거·이동·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과 같이 좀더 확대하여 근로자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정안 제31조의 명칭 등을 표시해야 할 유해물질 표시 규정 삭제와 관련하여 더욱 강화되고 규제되어야 하는 표시의 의무가 노동부장관의 관리의무 등으로 대체되어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헌법 34조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제35조 국민건강권 등과 사회권규약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7조 안전한 근로조건, 제12조 건강권 등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와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해 근로자의 알권리 및 안전권 등이 더욱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위원회는 2003년 4월 14일 개정안 중 사업장 공표대상 선정, 안전관리자 선임, 유해물질 표시의무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및 헌법과 국제규약 등이 요구하는 근로자 보호와 국가의 책무에 부합되도록 국가 및 사업주 의무를 더욱 강화하여 근로자의 안전권 등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부에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노동부는 현재



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7)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응시자격 등과 관련된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첫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은 순차적으로 치러야 하는 시험이어서 부정행위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3년간 정지하는 것은 공익과 비교할 때 수험생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둘째, 한 과목에 대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 과목의 응시자격을 3년간 정지시키는 것은 비록 입법 목적 달성에 정당하다 할지라도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는 어긋난다.

셋째, 개정안 제8조는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규정하여 처분 주체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상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를 고려할 때 수험생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03년 4월 28일 개정안 제8조의 규정 내용을 부정행위의 태양(態樣)·정도 및 응시원서 허위 기재 정도로 나누어 해당 시험과목 또는 해당 시간 시험과목만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둘 것, 응시자격 제한을 시험의 중요도와 부정행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 구체적인 재량 준칙은 향후 하위법령에서 마련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해당 부처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8)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법무부는 2003년 5월 31일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후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의 지문날인제도에 관한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되어 있다. 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개정안 제38조제1항제2호 ‘이 법에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자’와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행위유형을 파악할 수 없고, 조사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우려 또한 높다. 따라서 개정안 제38조제1항제2호 전단 부분은 구체적인 조문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 개정안 제38조제1항제3호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와 관련하여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문날인 여부와 관련하여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문날인의 의무를 부과한 개정안 제38조제1항이 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포괄 위임함으로써 수범자의 이해 가능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한하며, 법집행자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개정안 제38조제1항을 ‘제46조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하였다. 법무부는 등록외국인의 ‘지문날인제도’ 폐지에 대한 동의 의견만을 수용하였다.



(9)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관련 통합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견 표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관련 진정사건들의 원인이 발생한 지 50년 이상이 경과된 사안들로 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의거, 각하사유에 해당되며 공소시효 및 민사상 시효도 모두 완성된 상태였다. 그러나 인권의 보호와 향상이라는 위원회의 설립목적을 감안할 때, 위원회는 과거 한국전쟁 전후에 공권력(국군, 경찰, 국제연합군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을 증대한 인권문제로 인식하여 주요 정책의제로 검토하였다.

국회에서 1960년 5월 27일 양민학살사건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1960년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이후 1996년에 거창사건과 2000년에 제주 4·3사건에 대한 개별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법이 제정되었을 뿐이다.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을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증거자료가 있다 해도 인멸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또한 한국군과 국제연합군 등의 자료는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사건의 전모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일어난 개별사건이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광범위하게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여 접근을 시도하였다.

한국전쟁 전후 또는 전쟁중 국군의 공비토벌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이 ‘민간주민에 대한 살육·섬멸’에 해당하지만, 인도에 반하는 죄의 성립 요건이 되기에는 부족하여 민간인 희생과 관련하여 국제법적 구제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후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와 관련된 본 사안의 경우, 그 진상을 조사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억울한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일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다. 헌법 제10조, 제12조 및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3조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국제규약 및 일련의 원칙의 취지와 이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유족들의 신원권 등에 비추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실질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희생자와 그 유족을 고려할 때 억울한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조치가 함께 뒤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수의 불확정 상태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전국적인 민간인 희생 규모와 실태 등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통합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제정할 것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의견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진상규명을 하는 경우에는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하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국회에서는 김원웅 의원 등 47인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10)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과 기금규모의 증대,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중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2003년 8월 7일 위원회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교도소와 「사회보호법」에 의거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및 행방불명자를 현행법과 같이 납부예외 지역가입자로 하고 납부예외 대상인 교도소 수용자를 행형법 제2조에 의한 교도소 등의 수용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2003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교도소 및 감호시설 수용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납부예외 대상으로 관리하고,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은 당연적용제외 대상자로, 1년 미만은 납부예외 대상자로 하였다. 교도소에 수용중인 경우에는 행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 등에 수용중인 경우로 개정안을 수정하여 2003년 10월 31일자로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통보해 왔다.



(11)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보건복지부는 2003년 7월 28일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업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개정안 제9조의2 본문 부분과 제20조제1항제3호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해 제한을 두고 있으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불이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공익, 선량한 풍속 유지’의 개념도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개정안 제9조의2에서 필요한 제한사유가 대강의 유형이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 규정할 것을 위임하지도 않고 있어 일반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개정안 제9조의2 규정과 제20조제1항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선량한 풍속’이나 ‘필요한 제한’의 기준, 유형, 내용 등에 대해 수범자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그 기본사항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한 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개정 이유에서 위의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 그치고 법조항은 개정하지 않았다.

(12)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우리 정부는 1998년 7월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설립을위한로마규정」을 2000년에 서명하고, 2002년 11월에 비준하여 2003년 2월 1일부로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로마조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이하 ‘법률안’)을 작성하여 2003년 7월 16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로마규정상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인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s)를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 및 그 절차에 대한 것이다.

법률안은 비교적 충실히 로마규정의 해당 범죄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핵심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규정돼 있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인도에 반한 죄’ 조항 중 ‘기타 비인도적 행위’라고 규정할 경우 그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명확히 할 것과 본 법안에 의한 기소남용과 정치적 오용을 막기 위한 처벌조항의 삽입, 로마규정의 전쟁범죄 중 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들, 특히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민간인과 평화유지군, 제네바협약에 의거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보호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였고, 법무부는 현재 이를 검토중에 있다.

(13)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

2001년 11월 28일 국가정보원이 최초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이하 ‘법안’)이 정부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 2001년 11월 30일 위원회에서는 국회의장과 국회정보위원장 앞으로 동 법안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안건으로 국회가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줄 것과 이후 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을 참고하여 심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동 법안에 대해 2001년 12월 7일 청문회 개최, 시민사회단체·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 수렴 및 자체 연구·분석 등을 통하여 2002년 2월 20일에 법안이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테러행위 예방 및 진압효과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입법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2003년 8월 국가정보원에서는 당초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요소로



등장한 이슬람 테러조직의 활동무대가 동남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라크전 이후에 이슬람 참전 및 지원국에 대한 보복테러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산재된 대테러업무를 총괄할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및 전담조직 운영을 위한 「테러방지법(수정안)」(이하 ‘수정안’)을 국회에 재상정하기에 이르렀다. 국회정보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앞둔 상태에서 위원회는 이번 수정안에 대하여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2003년 10월 22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수정안은 기존 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축소 조정됐지만, 내용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소 조항이 상당수 그대로 남아 있다.

첫째, 헌법에서 규정한 죄형법정주의 위배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여전히 다수 내포하고 있다.

둘째, 수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대책기구의 권한에 대해 제도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없으며 이는 자연히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수정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 소지가 더 강화된 반면에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법적 규정이 여전히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첫째 현행법과 제도로 테러방지대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입법을 추진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둘째 특수부대 출동요청 등의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 셋째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가 많다는 점 등 상당수 조항들에 헌법 및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어 수정안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판단하여 2003년 10월 22일에 국회에 위원회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수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나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14)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표명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7월 9일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안)」(이하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지난 2003년 5월 12일 위원회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와 함께 규칙 중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26개 인사기록 입력항목 중에서 21개 항목(호주, 재산사항 등)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규칙안에 존치시키고 있는 5개 항목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혈액형은 응급건강관리상 필요사안으로 공무원중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인권과 무관하며 차별의 대상이 아니며 가족의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등은 부부교원 및 자녀관계에 따라 교원 전보 발령시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 보수와 관련하여 전산시스템 연계 등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희한 5개 시·도교육청(서울특별시·광주·대구·대전·인천광역시) 간에도 이견이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안하고 있는 OECD 가이드라인, UN 및 EU 지침에는 개인정보수집과 관련하여 합목적성과 제한적 수집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5조는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인사기록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은 인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만을 수집·보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혈액형은 인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인사기록과 함께 관리할 유익이 없고,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확성을 담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가족수당 등 보수산정에 필요한 정보로 가족사항 중 성명, 관계, 생년월일 등을 수집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개인의 신상에 대한 상세한 기록 없이도 그 산정이 가능하고 또한 반드시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는 바, 본 항목을 존치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또 부부교원의 전보발령 등의 이유로 존치시키고 있는 가족의 ‘직업’은



부부교원의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2003년 10월 22일 동 개정규칙안 별지 제1호 서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항목의 신체사항 중 ‘혈액형’, 가족사항 중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은 삭제하여 개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의견 표명하였다. 그러나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15)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한 바, 위원회는 개정안의 일부 조항 중 헌법 제17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유추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국제인권 규약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법률안 제3조제2항은 개인정보보호의 적용 범위에서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를 배제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존치시킴으로써 동 법률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둘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명시하였지만 다시 이에 대한 다수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는 미흡하다.

셋째, 위법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대한 처벌규정과 이에 따르는 구제의 절차 또한 미흡하다.

넷째, 행정자치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한 사전협의 및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함과 아울러 전자정부 사업추진 소관부처의 장에게 전자



정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용에 대한 견제기능까지 부여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즉 행정자치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본 위원회의 권한만을 강화시키고 있어, 결국 행정자치부의 관련 권한을 강화한 측면이 있으므로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위원회는 법률안이 헌법 제17조,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특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새로운 법률안을 마련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국제기준이 권고하고 다수의 국가가 법률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립,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변경시 이 기구와 협의해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2003년 11월 10일 행정자치부에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행정자치부는 이를 일부 수용하였다.

(1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위원입법으로 각각 발의된 4건의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보완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받아들여 2003년 11월 19일 대안으로 심사 의결하였다. 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헌법 제21조제1항의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한 규정과 헌법 제21조제2항에서 집회와 결사의 허가제를 금



지하고 있다는 규정,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과 인권및기본적자유보호에관한유럽규약 제11조제1항 등에 의하여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요건인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법익형량이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 등에 따라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및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과 국제인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개정안 제6조제1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장기집회나 위장집회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동 개정안 제8조제3항가호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 각각 변경하고, 제11조제4호 단서의 ‘외교기관’과 단서 가목의 ‘외교기관’을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로 개정하고, 제12조제2항의 단서를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해 반대와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개정안 제18조의2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위원회의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의견도 표명하였다.

2. 인권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위원회는 <표 2-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위원회법 제19조에 의거,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 권고’ 등 7건의 정책 권고를 통하여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인권을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1)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의견 표명

위원회는 2002년 8월 12일 정부의 「외국인력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이후 정부는 2002년 11월 「외국인력 제도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이행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위원회가 실시한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수준, 열악한 작업환경,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으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2003년 2월 10일 국회의장에게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근로자

<표 2-1-2> 인권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 표명

연번	권 고 제 목	권 고 내 용	의결일자	해당부처	결 과
1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	산업연수제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외국인 노동자 송출기관 정부 일원화	2003.2.10	국회의장 국무총리	일부수용 산업연수제 폐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용됨
2	호주제에 대한 의견제출	호주제도의 인권침해성에 대한 의견 표명	2003.3.10	헌법재판소	검토중
3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반전·평화인권	2003.3.26	국 회	미수용
4	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NEIS의 개발영역 중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영역, 교원인사기록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 권고	2003.5.12	교육인적 자원부	일부수용 3개 영역은 학교별로 서버 구축
5	수용자의 집필권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수용자의 집필권 보장을 위하여 형법 제33조의3과 형법시행령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2003.8.25	법무부	전면수용
6	전국교원임용후보명 부등재균복무피해미 발령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회(군미추) 관련 권고	군미추 구성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전원구제, 재교육, 또 다른 피해예방)	2003.9.25	교육인적 자원부	미수용
7	B형 간염보균자 차별시정에 관한 의견표명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의1에 근거한 <채용신체검사>에 간염검사를 명시하고 간염예방접종 필요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은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하여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	2003.10.22	행정자치부	수용하되 채용신체검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함께 강구



의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을 동일노동을 하는 한국인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위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안」을 보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첫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연행할 때 연행지를 밝히고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알릴 기회를 부여한다.

둘째,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의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구제신청과 자녀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산업연수제를 통하여 들어온 산업연수생에게 실제로 근로를 시키면서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산업연수생들과 미등록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여권압류 등의 문제에 시달리게 하므로 산업연수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넷째,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과도한 입국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송출기관을 정부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외국인 노동자 송출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불법체류자 양산구조를 차단한다.

다섯째, 여성 외국인 노동자 중 예술홍행사증(E-6)으로 입국한 이들이 성매매의 강요와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전면 재검토하고, 본래 목적과 다른 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 자료를 송출국별로 1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비치한다.

이와 같은 위원회의 의견 표명 이후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는 등 산업연수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수용되었다.



(2) 호주제에 대한 의견 표명

호주제도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인권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 있었고 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어 있던 중에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원, 헌법재판소 등에의 의견 제출 권한’에 근거하여 호주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헌법은 제36조제1항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保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778조,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 부분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민법 제778조는 혼인과 동시에 처(妻)가 부(夫)(예외적으로 夫가 妻에게), 즉 일방을 호주(戶主)로 하고 일방을 가족으로 구분하여 그들간에 종적 관계의 형성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자유의사를 통한 평등하고 존엄한 가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둘째, 민법 제778조는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에 의하여 가족을 호주에,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고 있으며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 ‘자는 부가(父家)에 입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녀에 대하여 부계(父系) 중심 원칙을 채택하여 모계(母系)를 차별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법률관계 형성의 자율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이혼 여성 자녀의 모계 입적(入籍)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호주와 가족의 존엄한 인격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셋째, 민법 제984조는 호주승계와 관련, 직계비속 중 남자를 호주승계 1순위자로 규정하고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後端) 부분은 자의 부가 우선 입적을 규정하는 등 헌법 제11조제1항의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남이 분명하고 이러한 차별대우는 헌법 원리에 반한다.



넷째,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778조, 제781조제1항 후단은 가족의 장(長) 또는 중심을 남성으로 하여 부계우선주의, 남계혈통계승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원칙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다.

결론적으로 호주제 관련 민법 제778조와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 부분은 가족관계, 부계우선주의, 남계혈통계승을 합리적 이유 없이 강제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호주제 사건과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2003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검토중에 있다.

(3) 이라크 전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표명

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고귀한 임무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았으며 국제평화의 유지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국가기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 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2003년 3월 26일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7가지의 이유와 원칙 등을 들어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에 반대하며 이라크 문제가 군사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첫째, 2002년 11월 채택된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해체 불이행에 따른 무력침공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이 추진중인 후세인 제거와 관련 해서도 무력행위와 간섭행위를 정당화하지 않고 있다.

둘째, 미국은 이라크 민간인의 희생이 최소화할 것이라 하나 무차별 공중폭격으로 민



간인들의 희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본격적인 지상전이 시작되면 희생자의 수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쟁이 지속되는 것을 반대한다.

셋째, 전 세계가 반전시위로 들끓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700여 개 시민단체연대기구인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등도 전쟁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평화운동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넷째,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헌법 제5조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동서고금의 인류역사가 방증(傍證)하는 것처럼 인권 없는 평화와 평화 없는 인권은 모두 허망한 착각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향후 이라크인들이 국제법과 국제인권기구의 협약에 따라 자국의 문제를 평화적·인도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여섯째, 1991년 걸프전 이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이라크 민간인들이 질병과 기아로 사망했다. 이렇듯 현대 전쟁은 아무리 과학적으로 진행된다 해도 대규모의 희생을 피할 수 없다.

일곱째, 이라크 사태는 향후 북한문제와 직결될 수 있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는 반전·평화·인권의 원칙에 입각해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4)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권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은 학생지도 등에 필요한 학생 및 부모에 관한 정보를 학교 내 서버에 학교장이 집적 수집·관리하던 것을 초고속통신망을 통해 16개 시·도교육청의 통합 데이터 베이스에 집적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위원회가 NEIS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침해 여부, 법적 근거, 추진배경, NEIS의 27개 개발영역 중 교육공무원 인사영역의 인권침해 소지 여부,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영역의 입력 제외로 인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



러났다.

첫째, 학교에서 수집·작성된 개인정보를 NEIS에 집적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타 기관에 제공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 설사 법적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NEIS는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시스템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법익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수단의 적정성, 방법의 적절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둘째, NEIS의 집적된 정보 누출시 우려되는 피해는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 정보의 누출에 비할 바 없이 심각하다.

셋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기록사항 중 호주성명, 병역미필 여부, 혈액형, 재산관계 등은 인사의 과학화 목적과 무관하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수집하라는 개인정보보호의 일반 원칙 등에도 반한다.

넷째, 계량화되고 획일화된 NEIS는 장래에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획일화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 또한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2003년 5월 12일 NEIS의 27개 개발영역 중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원인사기록 중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교육공무원의 재산사항, 호주사항 등 26개 항목은 입력항목에서 제외하도록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며,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의견 표명하였다.

(5) 수용자의 집필권 보장을 위한 정책 권고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구금시설 수용자의 집필 관련 진정사건은 2003년 7월 현재 162



건으로 집필권의 침해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필 관련 진정사건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집필의 예비과정이라 할 수 있는 집필보고문 작성을 교도관들이 허가해 주지 않으면 고소장·진정서, 청원서, 서신 등의 집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교도소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및 교도관에 대한 불만사항을 기술하거나 수용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집필은 그 대상을 교도소의 직원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도관들에 의한 회유, 협박 등으로 집필권 행사가 방해받고 있다.

셋째, 집필에 필요한 용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자유롭게 집필하기가 어렵다.

넷째, 징벌과 징벌조사 중에는 집필이 불허되어 본질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 집필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수용자의 집필은 허가사항이고(행형법 제33조의3, 수용자 집필제도운영지침 제2조·제3조,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제33호, 계호근무준칙 제17조), 집필한 문서 등을 수용중에 외부에 발송하거나 석방시에 가지고 나가고자 하는 때에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행형법시행령 제67조) 있어 수용자의 집필권이 제한되고 소장 등을 작성하기 어렵다.

이에 집필 관련 법령 및 지침·규칙과 교정 현실을 검토한 결과, 수용자의 집필은 외부와 소통하기 위한 첫 단계이며 청구권 등 다른 권리의 보장을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수용자가 구금시설의 처우에 불복하거나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구제절차(소장면담, 청원, 고소, 고발,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민원제기)를 밟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집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현행 행형법 제33조의3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필 허가제도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후 위원회는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도화 등을 집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행형법 제33조의3의 규정을 개정하여 집필에 관한 허가제를 폐지하도록 하고 행형법시행령,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수용자집필제도운영지침」 및 「계호근무준



칙」 가운데 수용자의 집필에 관련된 규정을 위 제1항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수용자집필제도운영지침」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각 시설 기관장에게 수용자가 고소·고발 등 권리구제를 위하여 집필을 하려고 할 때에는 불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집필물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검열을 통하여 허·부를 결정하게 하였다. 또한 필기도구는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도록 종류를 확대(볼펜, 샤프펜슬, 형광펜, 수정펜, 지우개)하였다.

(6)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교원으로 미임용된 자에 대한 구제정책 마련 권고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는 국공립 사범대학 출신자를 교사로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이 ‘국민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1조제1항과 제15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문교부(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1990년 12월 31일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동법 제11조제1항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교원임용 정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당시 위헌 결정 이전 이미 교원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발령을 기다리고 있던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경우가 생겼다.

이들 중 일부는 2002년 8월 25일 ‘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군복무피해미발령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회’(이하 ‘군미추’)를 결성하여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사임용에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음을 주장하며 2003년 3월 14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의거, 이 사건을 검토하게 되었다.

위원회 조사 결과, 군미추 구성원들은 1990년 12월 교육공무원법 개정과 교원임용제도



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 재학중 군복무로 졸업이 늦어져 교원후보자명부에 후순위로 등재돼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경우, △ 당시 문교부가 임용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91~93년)의 경과규정을 둔 바 있으나 군복무로 인해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거나 제한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 군복무 기간 중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배정지변경신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의 사례가 있었다. 위원회는 이들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임용 과정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으며 이는 헌법 제39조제2항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위원회는 군복무중인 자의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군복무중인 자에게 새로운 법률이나 제도로 인해 중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국가는 헌법 제39조제2항에 의거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당시 문교부가 동일한 요건을 갖춘 모든 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2003년 9월 25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들에 대한 구제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군미추 구성원들이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10여 년 이상의 공백기간을 가짐에 따라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응하기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 학생들이 헌법 제31조제1항(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과 이들에 대한 구제조치로 인해 현재 교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7)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 차별시정을 위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개정 권고

위원회 출범 이후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한 차별진정은 2003년 9월 기준으로 12건이었다. 이들 진정은 생활상의 다양한 차별을 호소하였지만 주로 고용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원회가 2002년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B형간염바



이러스 보균자에 대한 고용차별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고용차별이 1차 선발 후 채용시 건강진단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B형간염 감염경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매우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실에 주목, 정책적인 측면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한 고용차별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다. 또한 많은 민간기업이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행적으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제도를 준거틀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록 이 제도가 공무원 채용시 차별을 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파급효과를 감안, 우선 정책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0조는 공무원 채용시 반드시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의2에 근거한 채용신체검사서는 간질환검사와 별도로 간염을 검사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간염 예방접종 여부를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효과가 입증된 간염 예방접종은 B형간염뿐이며 대체로 간염검사라 함은 B형간염검사를 의미하므로 위 서식의 간염검사 또한 B형간염검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간염검사를 명시하고 간염예방접종 필요 여부를 표시하게 한 것은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하여 헌법 제11조 평등권 및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해서다.

첫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시 간염검사는 불필요하며 업무적합성 판정과 무관한 것으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1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판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간염보균 여부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병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업무적합성 평가가 단지 어떤 사람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건강상태가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B형간염의 특성을 고려할 때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 유무와 예방접종 필요 여부는 채용시 업무적합성과 무관하다.

셋째, B형간염의 전파경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잘못된 인식으로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한 낙인효과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채용 이후 일상적인 직장생활에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넷째, 공무원채용신체검사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을 야기하지 않더라도 민간부문에 대하여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이에 위원회는 2003년 10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의 간염검사 및 간염예방접종 필요 여부 항목을 삭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행정자치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수용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원회는 향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제도에 대해 좀더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3.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권고

위원회에서 정부보고서를 심사하는 목적은 국제조약 및 협약 등과 관련된 국내법과 현실 제도의 실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법과 제도에 관한 형식적인 기술을 넘어서 실제 협약의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데에 있다.

위원회는 <표2-1-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위원회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제5차정부이행보고서’ 등 2건의 정부보고서에 대하여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에 위원회의 의견을 표명하였고, 「여성차별철폐협약의정서」 등 미가입한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표 2-1-3>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권고

연번	권고 제목	권고 내용	의결일자	해당부처	처리결과
1	여성협약 제5차 정부이행보고서(안)에 대한 의견제출	동성동본금혼, 가족성채택, '차별'의 정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여성의 참여 등 구체적 의견 제출	2003.1.22	외교통상부 여성부	검토중
2	미가입 협약 가입 권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2003.12.8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법무부	검토중
3	제2차 고문방지협약 국가이행보고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상 권리이행, 보장에 어려움을 제시하거나 그에 대한 대비책, 계획 등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불법적 수사관행에 대한 고려가 없고, 제공된 통계치의 근거 자료, 정확한 기간 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것. - 국가보안법과 한총련, 노동조합, 교정과 수용자 처우, 구속수사 관련 국내법령, 고문에 대한 수사,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입회권 등에 대한 기술을 보완수정할 것. 	2003.12.8	외교통상부	검토중
4	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의 국내 이행 권고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인권이사회 결정의 국내 이행방안 마련 및 고문방지협약상 국가간 통보제도와 개인통보제도에 관한 수락선언 권고	2003.12.8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법무부	검토중

(1) 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차 정부이행보고서(안)에 관한 위원회 의견

우리나라는 1985년 1월 26일부터 UN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이하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협약 제18조에 의해 4년마다 한 번씩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위원회는 동 협약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제3차, 제4차 대한민국 정부이행보고서에 대한 최종평가서, 정부이행보고서 가이드라인, 그리고 국내 여성단체의 의견을 참조하여 동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여성 관련 법규 및 정책과 각종 구체적 통계자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나 아직까지 국내법에 가족성 채택 및 최소 혼인연령의 남녀차이 등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일치하지 않는 법조항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개정하기 위한 정부의 법·정책적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며 여성 외국인 노동자, 농촌 여성, 비정규직 여성 인력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2003년 1월 22일 △ 동성동본과 관련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 협약유보조항 협약 16조(g) 가족성채택, 헌법 및 여성 관련 법규상 ‘차별’의 정의를 여성협약 제1조와 비교하여 좀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 성차별적 채용 및 광고 철폐 △ 직장내 성희롱 근절 △ 고능력 여성의 일자리 부족, 최소 혼인연령 남녀차별, 여성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여성 관련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외교통상부와 여성부에 제출하였다. 현재 외교통상부와 여성부에서는 이를 검토중에 있다.

(2) 미가입 협약 가입 권고

위원회는 2003년 12월 8일 미가입 인권협약 중 「여성차별철폐협약에대한선택의정서」와 「아동의무력분쟁관여에관한선택의정서」 및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포르노그래피에관한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제인권조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는 여성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그 침해에 대한 개인통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성의 권리구제를 국제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무력분쟁관여에관한선택의정서」는 18세 미만 아동의 징집을 금지하고 있다. 단, 자원입대에 관해서는 병역법이 동 의정서에 규정하고 있는 연령 기준에 부합되나 자원입대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포르노그래피에관한선택의정서」는 아동의 성적 착취와 아동포르노그래피와 관련된 범죄를 범죄인인도조약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이 국제규약에 가입한다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이들 의정서 가입으로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가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제2차 고문방지협약국가이행보고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

외교통상부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제2차 고문방지협약국가이행정부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는 2003년 12월 8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정된 제2차 정부보고서는 UN 고문방지위원회의 정부보고서 작성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나 제1차 정부보고서 심의 후 고문방지위원회의 최종 견해 제66항(para.66)에서 불법적 처우(illegal-treatment)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정부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현재까지 통보한 사실이 없다면 이번 정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고문방지위원회가 주목한 모든 사건들과 그에 관한 판결 처리 상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둘째, 협약상 권리이행 및 보장상에 어려움을 제시하거나 그에 대한 대비책, 계획 등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불법적 수사관행에 대한 고려와 제공된 통계치의 근거자료, 정확한 기간 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셋째, 국가보안법과 한총련, 노동조합, 교정과 수용자 처우, 구속수사 관련 국내법령, 고문에 대한 수사,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입회권 등에 대한 기술을 보완·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4)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국내 구제절차 마련 특별법 제정 및 「고문방지협약」 제21조와 제22조에 대한 권고

2003년 12월 15일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결정을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과 「고문방지협약」(이하 ‘협약’) 제21조 국가통보제도와 제22조 개인통보제에 대하여 명시적인 수락선언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가입 및 공포한 국제인권규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제인권규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실질적인 구제 방법이 없다. 따라서 유엔인권이사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인권침해 결정을 내릴 경우, 국내에서 배상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근거 법령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약당사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또한 위 협약 제21조 및 제22조에 대하여 정부가 명시적인 수락선언을 하지 않아 조약 당사국간의 국가통보제도(제21조)와 개인통보제도(제22조)가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이 두 조항에 대한 수락선언을 함으로써 위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인통보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권리구제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결정이 국내에서 이행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까지 근거법안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받지 못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배상을 비롯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개인통보에 따른 결정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유효한 권리구제수단을 알리고, 그 결정을 이행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3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업은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위원회’(위원장 박경서 상임위원, 이하 ‘추진위’)를 구성하여 실시되었다. 추진위는 실태조사 사업의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수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어, 전년도 사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사업의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 보



호 및 향상을 위한 지식기반을 확충하고자 노력하였다.

위원회는 위원회법 제19조제4호에 따라 2003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업을 아래 <표 2-1-4>와 같이 실시하였으며 23개의 용역과제 중 10개 과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최종적으로 완료되었으나, 13개 과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2004년도 연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2003년도에 완료된 인권상황 실태조사사업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다만 ‘사회보호법 관련 실태조사’는 제8장 특별사업 제2절의 ‘사회보호법 TFT(과제수

<표 2-1-4>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현황

연번	과 제 명	연구수행자	비고
1	국내 거주 화교의 인권 실태조사	성공회대학교	완료
2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 실태조사	한국사회학회	"
3	기지촌 지역 혼혈아동 인권 실태조사	두 레 방	"
4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함께하는시민행동	"
5	차별 관련 법령 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6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 실태조사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
7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의 유형 분석 및 지침개발	한국외국어대	"
8	구금시설내 여성수용자 인권 실태조사	한림대학교	"
9	사회보호법 관련 인권 실태조사	대구기톨릭대	"
10	사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
11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미완료
12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상황 실태조사	원광대학교	"
13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권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강원대학교	"
14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울산대학교	"
15	주거빈곤계층 사회권 보장현황 실태조사	한국도시연구소	"
16	군대내 성폭력 현황 실태조사	경원대학교	미완료
17	구금시설 평가지침서 개발연구	경원대학교	"
18	성별 등 차별시정 국가인권정책계획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19	장애 및 병력 차별시정 국가인권정책계획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한국재활복지대학	"
20	연령, 학벌, 학력 차별시정 국가인권정책계획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사)국제노동법연구원	"
21	비정규직 차별시정 국가인권정책계획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사)서울사회경제연구소	"
22	규제완화 이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와 노동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조사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
23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차별 관련 실태조사	한국공법학회	"



행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는 제8장 제2절의 ‘비정규직 TFT’에서 다루기로 한다. 또한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의 유형분석 및 지침개발을 위한 실태조사’는 이후 제6항의 ‘인권일반지침개발’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1) 국내 거주 화교의 인권 실태조사

우리나라에 화교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882년 임오군란 이후로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화교집단은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국내 거주인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함은 물론 이들에 대한 기본 인권 실태조사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 없다. 본 조사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소수자 정책의 현황 및 법·제도적인 장치 분석, △화교공동체의 역사적 변천 및 국내현황, △교육과 고용영역에서의 차별현황, △공공 및 민간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 등이며 이러한 문제는 화교집단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소수집단이 직면하고 있는 기본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거주 화교인구는 2002년 현재 약 2만여 명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전체 화교인구의 60% 가량인 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우선 고용영역의 차별사례로는 조사 대상 화교 총 693명 중 77%가 취업단계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답하였고, 승진과정에서는 79%가 심각한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본인이나 가족이 화교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35%로 나타났다. 공공 및 민간 서비스 분야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50%가 ‘구청,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과정’에서, 58%는, ‘은행 등 금융기관 이용시’에, 79%는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가입 등의 상업서비스 이용시’ 심각한 차별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이들은 상업서비스 이용시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상으로 외국인 등록번호를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아 가입절차가 까다롭다고 지적하였다. 이밖에 심층면접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화교 구비서류가 너무 많아 카드발급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교육영역에서는 조사 대상 화교 중 46%가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대학입시에서는 56%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입시의 경우 부모 모두 화교인 경우에는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하나 화교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 중 생활상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한국국적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의 자녀는 화교학교에서 교육을 받아도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만약, 한국인 어머니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인정받아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면서 명백한 교육상의 차별이라고 지적하였다.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성공회대학교 실태조사팀은 부동산 소유제한의 폐지, 영주권 부여, 귀화절차 간소화 등의 화교에 대한 인권보호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영주권을 가진 화교의 경우에 장애인 등록을 할 수가 없거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는 사회복지 혹은 사회보장 서비스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2)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 실태조사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차별에 대해 외국인 청소년 81명 중 42명(51.9%)이 ‘차별을 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피해에 대해 응답자 60명 중 ‘당한 적이 있다’ 18명(30.0%), ‘없다’ 42명(70.0%)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 87명을 대상으로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25명(28.7%)이 다니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으며, 20명을 대상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 7명(35%), ‘한국말을 못해서’ 4명(20%), ‘불법체류 아동이기 때문’ 3명(15%)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응답자 55명 중 28명(50.9%)이 ‘매우 만족한다’, ‘만족’ 8명



(14.5%), ‘약간 만족’ 14명(25.5%)으로 나타나 학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한 아동 50명 중 ‘미숙한 한국어’ 15명(30.0%), ‘한국어로만 수업’ 13명(26.0%)이었으며, 64명의 부모에게 질문한 결과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한국어와 한글교육’ 41명(64.1%), ‘방과후 프로그램’ 9명(14.1%), ‘외국인에 대한 이해증진’ 6명(9.4%) 등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아동 58명에게 질문한 결과 ‘전업 직업이 있다’ 8명(13.8%), ‘파트타임이 있음’ 4명(6.9%), 13명(22.4%)의 청소년이 직업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의료·건강 관련 예방주사 접종 조사결과 설문에 응한 외국인 아동 부모 100명 중 62명(62%)이 ‘제때에 접종했다’, 38명(38%)이 ‘접종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아플 경우 병원 방문이 어렵다고 대답한 응답자 63명 중 ‘건강보험 미적용’ 38명(60.3%), ‘의사소통상의 어려움’ 15명(23.3%),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질까봐’ 3명(4.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양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제도적인 학습권 보장을 넘어 한국어 교육기회 제공, 후견교사제 등을 통한 실질적인 아동 학습권 보장, △외국인 노동자와 그 아동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이해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3)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혼혈인의 인권실태는 기지촌 여성인권단체인 ‘두레방’에 의뢰하여 기지촌 지역에 살고 있는 혼혈인 45명을 대상으로 혼혈인의 생애 및 차별, 혼혈인들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문제 등에 관하여 심층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혼혈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차별은 학교에서 받는 놀림과 따돌림이었다. ‘학창시절 피부색으로 인해 놀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73.3%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64.4%로 나타났다. 졸업 이후의 차별경험으로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수군거린다’는 응답이 75.6%였고 ‘성희롱, 성폭행을 당한 경험’도



각각 29%, 8.9%로 나타났다.

‘고용에서의 차별’ 경험은 44.4%, ‘이성교제와 결혼의 어려움’은 37.8%로 나타났고,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질타’의 문제를 차별로 인식한 경우도 24.4%로 나타났는데 혼혈인들은 출생에서 시작하여 학교와 직장, 결혼과 가족 구성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유형의 차별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혼혈인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101만원에 생활비는 75만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혼혈인 본인의 수입은 월평균 89만원에 불과했다. 저축은 거의 없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혼혈 가구의 평균 빚이 3,882만원으로 수입과 비교했을 때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혼혈인에 대한 차별이 학력 저하를 낳고, 고용과정에서도 혼혈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혼혈인 가구는 빈곤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빈곤으로 이어지는 혼혈인 문제는 심한 무기력과 심리적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 면접 대상자 45명 중 19명(42.2%)이 ‘자살시도 경험’이 있으며, ‘자살충동경험’은 26명(57.8%)에 달했는데, 이는 혼혈인에 대한 차별이 평생 동안 지속되는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혼혈인의 차별 문제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계적으로 접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태조사 결과 △ 혼혈인들의 출생배경에서부터 시작되는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인종차별 금지를 위한 정책 마련, △ 가장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고, 구체적인 차별이 나타나는 시기인 학령기 혼혈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 △ 혼혈인을 위한 실질적인 생계지원 정책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인터넷 이용자 1,0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9%는 ‘유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더라도 실명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6.6%의 응답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약관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관심도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가입시 ‘이용약관을 거의 읽지 않는 편이다’는 응답자가 57.0%,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거의 읽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5.9%에 달했다.

개인정보 공유와 관련,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업체의 수를 안내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는 ‘안내받지 못했다’, 90%는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업체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금융기관,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등 67개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48곳(70.2%)이 개인정보 수집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고, 25곳(37.3%)은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을 설명하되 개별항목과 직결시켜 설명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와 공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현재 공유대상의 기업명을 고지하는 곳은 12개(17.9%) 사이트에 불과했다.

그리고 운영중인 사이트의 양수·양도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안내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은 곳이 57개(85.1%)였으며, 양수·양도시에 동의를 받을 것을 명시하지 않은 곳이 56개(83.6%)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자기정보통제권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연구팀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의 제정과 독립적 감독기구의 설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의 시정, △개인정보 공유에 관한 포괄적 동의 방식 시정,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약관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5) 차별 관련 법령 실태조사

위원회는 국내 법령의 차별 및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정비작업과 국제적 인권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인권 관련 법령 종합조사를 기획하여 추진중에 있다. 이는 광범위한 법령 정비작업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 인권 현안과 관련한 권고, 의견제시 등 주요 업무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차별 관련 법령 실태조사는 이러한 인권 관련 법령 종합조사의 주요 내용의 하나로 국내 법령상 차별적인 규정을 선별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체계적인 법령 정비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실태조사는 2003년 5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조사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시행중인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모두 포함하여 총 3,600여 개 법령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차별적 조항의 선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주된 내용은 위원회법 제30조에 예시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희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 등 18개 차별적 요소를 주된 영역으로 하여 각각의 영역에 있어 차별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법령의 명문상 차별적인 용어를 내포한 규정과 법령의 적용 또는 규정의 효과 면에서 차별 소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국내 250여 개 법령 400여 개 조항에서 차별적 요소가 규정되어 있거나 내포되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별, 장애 등의 개별 영역 또는 문제가 되는 법령별로 더욱 심층적인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해당 부처와 협의 또는 개선 권고 및 의견제시 등을 통하여 차별적 법령에 대한 정비와 개선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6) 구금시설내 여성 수용자 인권실태조사

「구금시설내 여성 수용자 인권실태조사」는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 수용자들의 생활실태 및 구금환경을 조사하여 그들에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하는지를 조사하고, 여성 수용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처우보장 규정의 운영실태 및 법리적 함



의를 분석하여 여성 수용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권리와 처우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구금시설 중 10곳을 선정하여 시설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501명의 여성 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각 구금시설에서 4~8명의 수용자를 선정하여 총 81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했다. 또한 115명의 여성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함께 37명에 대해서는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구금생활 중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이 43.8%였고, 성적 수치심을 가장 많이 느낀 때는 신체검사를 할 때(68.9%)로 나타났다. 심지어 생리중인 여성의 생리대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82.9%로 나타나는 등 수용자 권리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모르는 여성 수용자도 42.6%나 되었다. 거실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거실의 냉난방이 잘 안 됨(41.3%), 거실공간의 협소함(41.9%),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33.5%), 목욕을 자주 할 수 없는 것(29.1%)으로 나타났다. 입소 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55.7%였고, 정기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75.4%,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는 79.6%가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본 실태조사 보고서는 여성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전용수용시설과 설비의 확대, 수용자에 대한 과학적인 분류체계, 직업훈련의 선택 가능성 및 전문성 제고 그리고 가족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하였다.

(7)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위원회는 생명권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생명형인 사형제도 존폐문제를 새 정부에 제출할 10대 인권 현안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였다. 현재의 논의를 연구·분석한 결과 위원회는 형벌로서의 사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의 논증이유 중 “우리의 문화수준



이나 사회현실”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객관적 조사 자료가 필요하며 사회 일반인의 의식조사뿐만 아니라 사형이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송 참여자, 사형집행 참여자,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형제도에 대한 의식조사는 일반 국민의 의식조사뿐 만 아니라 국회의원, 언론종사자, 시민단체 대표와 사형 관련 소송 참여자인 법관, 변호사, 검사와 사형집행 참여자인 교도관, 의무관, 교정위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의식조사 및 법감정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문의 내용은 △ 형벌의 정도와 효과에 대한 의견으로 강력범죄자(살인죄)에 대한 형벌의 정도와 사형제도의 범죄 예방·억제 효과 △ 사형의 존폐 여부와 범위에 대한 의견으로 사형존폐 여부, 사형적용 죄목별 사형존폐 여부, 사형제도 적용범위, 사형집행의 방법 및 절차 △ 사형제도의 폐지와 대체형 도입에 대한 의견으로 종신형제도 도입 여부, 종신형제도 도입시 사형제도 존폐 여부, 종신형제도 채택시 가석방 여부, 사형에 대한 국제적 폐지 추세, 국민의정부 이후 사형집행 중지 등에 대한 의견 △ 범죄피해자구제제도에 관한 의견 등을 묻는 40여 개의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일반 국민 1,000여 명, 국회의원 100여 명, 언론종사자 100여 명, 시민단체대표 350여 명, 법관 100여 명, 검사 100여 명, 변호사 100여 명, 교도관 100여 명, 의무관 57명, 교정위원 100여 명 등 총 2,10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의식조사 결과에 대하여 통계분석중에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다각적인 논리개발을 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 청문회, 토론회의 운영

위원회는 인권에 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의 조사와 연구에 있어서 사회적 쟁점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계 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



는 자 등에 대하여 출석하게 하여 사실관계 또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다.(위원회법 제23조)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총 15건의 청문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03년도에 실시한 주요 청문회 및 토론회는 아래와 같다. 다만, ‘구금시설내 인권침해 유형 및 예방지침(안) 개발을 위한 공청회’ 내용은 제1장 제2절의 6항 ‘인권침해 일반지침 개발’ 항목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표 2-1-5> 청문회 및 토론회 개최 현황

연번	주 제	일 시	토 론 내 용	비 고
1	기간제 교원 차별에 대한 청문회	2003. 2.20	- 비정규직 신분으로 방학중 보수, 퇴직금, 연가불허 등 불합리한 처우 - 정규 직원과의 차별문제	
2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쟁점과 대안에 대한 청문회	2003. 4. 8	- NEIS 추진의 법적 근거 - 입력, 집적관리 등 정보 주체의 권리문제 - 기존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 CS 보안문제	
3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청문회	2003. 4. 9	- 정신질환자수에 비하여 의료시설 및 인력 부족 - 정신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환자 입퇴원 및 장기 수용문제	
4	북한인권 관련 간담회(3회) - 시민단체 간담회 - 전문가 간담회 - 식량난과 재외 탈북자 인권 간담회	2003. 6. 5 2003. 7.30 2003.10.17	- 국내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 - 북한의 식량난과 중국의 재외 탈북자에 대한 접근방법 및 해결방안	
5	구금시설내 계구사용에 대한 공청회	2003. 7. 8	- 계구 종류 사용 요건 및 한계 등에 관한 규정, 실무운영상의 논란과 각계 의견 청취	
6	정보화 사회의 인권을 위한 토론회	2003. 8.19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본법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독립기구 설립	
7	시간강사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03.10.14	- 시간강사제도에 대한 각계 의견 - 바람직한 대안 마련	
8	입사지원서의 차별 항목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03.10.30	- 입사지원서상 가족사항, 신체사항, 종교, 재산사항 등과 개인능력과 채용분야 업무의 연관성	
9	군의문사 관련 토론회	2003.11.26	- 군대내 사망, 폭행사건과 관련한 진정 - 「군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관련 군내 사망사건과 재발방지 대책 등 정책 마련 필요	
10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방안을 위한 청문회	2003.12. 9	- 수용자의 기초 건강보장 내용 - 수용자의 건강권 재원마련 방안 - 구금시설 의료인력 확충방안 - 의료분쟁시 해결 방안	



연번	토 론 명	일 시	토 론 주 제	비 고
11	채용신체검사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2003.12.11	- 채용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포함)로 인한 장애 및 병력 차별실태, 문제점 토론 - 채용신체검사의 개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	
12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에 관한 청문회	2003.12.12	- CCTV 등을 이용한 무인방법과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토론	
13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유형 및 예방지침(안) 개발을 위한 공청회	2003.12.16	- 계구사용 등 우형력 행사 - 외부교통 및 징벌제도 - 수용시설내 처우문제 등	
14	사법제도와 성매매 여성의 인권 토론회	2003.12.17	- 성매매 관련 사법절차 및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 방안 - 성매매 방지법 제정의 측면에서 본 사법 절차의 문제점	
15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공청회	2003.12.19	- 납북억류자 486명 및 그 가족의 인권문제 - 관련 행정부처와 전문가 입장 청취	

(1) 기간제 교원 관련 청문회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휴직, 파견, 휴가 등의 결원 보충, 특정교과목의 한시적 담당, 퇴직교원의 교육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필요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기간제 교원의 경우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보수, 연가, 퇴직금, 호봉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해 위원회에서는 2003년 2월 20일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이 청문회에서는 △ 기간제 교원의 차별과 관련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현황, 실태 △ 기간제 교원의 법적 성격 △ 비정규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방학중 보수지급·연가·퇴직금·호봉책정 등에 있어서 기간제 교원 차별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 △ 기간제 교원 차별에 대한 법적·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당사자인 기간제 교원과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교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였다.

청문회 결과, 기간제 교원은 사회적 신분을 비정규직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 미지급, 연가 불허 등의 처우는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한편, 우리 위원회에 제기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진정’건에 대해서는 2003년 3월 24일 기간제 교원에 대한 보수지급, 연가 등의 차별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로 인정하여 피진정인인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해 기간제 교원의 차별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서울시 교육감 및 ○○중학교장에게 재발방지 등의 권고를 하였다.

(2)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쟁점과 대안에 대한 청문회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이하 ‘NEIS’)이 2003년 3월 1일부터 전면시행을 앞두고 교육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NEIS 반대를 위한 시민단체들이 연대활동을 벌이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위원회에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50년간 정부기관이 저장 관리하는 것은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NEIS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위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적과 각종 교내의 활동, 행동발달상황, 건강기록, 병력 등을 비롯하여 교사의 정당·사회단체 활동, 재산수준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종합적인 전국 교육행정단위로 전산·정보화하고자 한 계획이다.

위원회는 NEIS의 사생활 침해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와 진정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3년 4월 8일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청문회에서는 △NEIS의 반대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인권침해 △전자화에 따른 위험요소와 해결방안 △교육적 관점에서의 NEIS의 위험성 △NEIS 도



입과 시행에 관한 법률적 검토의견, 정보보안문제 중심으로 본 NEIS 등을 주제로 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 학계, 법조계에서 다수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 결과 NEIS 추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이 발견되었고, NEIS 입력사항 누출 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 이외에도 입력, 집적관리 자체가 정보 주체의 권리에 배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기존 교육행정 정보화시스템인 'CS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에 청문회 및 일선학교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쳐 2003년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에 NEIS의 27개 개발영역 중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전입학, 보건영역은 입력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들 영역은 종전의 CS방식으로 하되, CS의 보안상 취약성을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교원인사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하도록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3)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청문회

위원회는 2002년 5월부터 약 4개월간 부산광역시 소재 ○○정신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동년 11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신의료기관 3곳을 방문해 시설·인력·치료프로그램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위원회는 2003년 4월 9일 오후 3시 위원회 11층 배움터1에서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청문회는 최종보고서 작성에 앞서 직권조사 및 방문조사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한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신질환자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며 '정신과 관련 보호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의미있는 자리였다.



주요 토론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장애우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호칭 변경이 요망된다는 점 등 총 15개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정신과 치료환경에서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의 취약점을 설명하면서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정신요양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논의되었다. 또한 소비자인 의료서비스 이용자, 즉 환자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을 촉구하였고, 우리의 이웃이라는 전제하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시설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본 청문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 보고서’에 반영되었으며 향후 정신보호 관련 시설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방향설정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4) 북한인권 관련 간담회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고, 국내외 시민단체 등이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등 북한인권문제의 국내외적 논의가 급속하게 전개됨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고자 2003년 6월 5일, 7월 30일 및 10월 17일 총 3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 내용에 대하여는 제8장 제3절 ‘북한인권연구팀 운영’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5) 구금시설내 계구사용에 대한 공청회

위원회는 2003년 7월 8일 인권침해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계구사용 문제에 대하여 ‘구금시설내 계구사용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계구사용과 관련된 국제인권규약,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문제점과 대안 등에 대한 학계, 법조계, 그리고 실무분야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금시설 수용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공청회에서는 △계구와 수용자의 인권 △ 계구와 관련된 법·제도적인 문제점과 대안 △ 계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과 관련한 법무부 입장 △구금시설 내에서의 계구사용의 사례 등이 발표되었고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와 법무부, 출소자가 직접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의견발표에 앞서 현재 구금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금속수갑, 가죽수갑, 포승, 사슬, 방성구, 안면보호구 등 6종의 계구를 직접 시연하기도 하였다.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는 2003년 7월 22일 법무부장관에게 ‘계구의 종류중 사슬 및 가죽수갑의 폐지, 계구 사용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계구 관련 법과 제도를 시정·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대폭 반영된 계구 관련 법령 및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003년 12월 23일에 ‘징벌 및 계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계구사용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6)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토론회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한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등 행정, 사법, 학술 그리고 인터넷 분야에서 사생활의 비밀보호와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위원회는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될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 정보인권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며 △정보인권에 대한 조속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3년 8월 19일 위원회 배움터1에서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전자정부에서 정보 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수사와 범죄예방활동에 따른 감시기술 활용과 통제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고찰 △인터넷과 인



권에 대하여 각각 행정·사법·학술·인터넷 분야와 정보화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제를 하고, 각계 전문가 7명과 인권단체와 시민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 결과, 우선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규율하는 법률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개정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의 원칙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구분이 모호하거나 혼재된 영역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아울러 현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 명목상의 기구일 뿐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과 공공부분의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의 일반원칙 등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독립적인 국가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에관한개정법률안」 등 정보인권 관련 법령 검토시 토론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7)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03년 6월 서울대학교에서 시간강사 자살사건이 발생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인 시간강사의 문제점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대학 시간강사 문제와 관련한 진정이 위원회에 접수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시간강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둘러싼 각계의 입장을 확인하며 바람직한 시간강사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3년 10월 14일 ‘대학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대학 시간강사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기초발제 △시간강사측과 대학측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 △인권과 교육권의 측면, 법제도 개선 방향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방향 △대학의 입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였으나 그 방법 및 재정조달 주체, 처우개선의 정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부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토대로 관련부처에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8) 입사지원서의 차별적 항목 개선을 위한 토론회

위원회는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100개 기업에 대해 입사지원서의 기재항목 중에서 지원자의 능력이나 채용분야 업무와 연관성이 적고 불합리한 차별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시정해야 할 항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기업들이 차별적 항목을 자진 삭제하거나 수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 10월 30일 위원회 배움터1에서 입사지원서에 개인능력과 채용분야 업무의 연관성을 갖는 적절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기재사항을 개선하고, 차별 여부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구직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인터넷 구직 사이트 운영자, 학계·경영계 대표자 등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입사지원서상 가족사항·신체사항·종교·재산사항 등의 삭제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출신학교명의 삭제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것이 학벌에 의한 차별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를 변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들어 삭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9) 군의문사 관련 정책 토론회

위원회는 군내 사망사고에 대해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그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군의문사 문제의 발생원인과 의문사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2003년 11월 26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군 사망·폭행사건의 실태와 원인 △군 사망사건의 조사상의 난점 △군 수사과정의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국회에 제출된 「군의문사진명규명예 관한 특별법안」의 의의 및 문제점에 대하여 발제 및 토론을 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군의문사와 관련하여 군의문사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군대내 인권 실태 파악,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등 군의문사와 관련한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향후 위원회가 군의문사와 관련한 진정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한다.

(10)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구금시설 의료 관련 진정사건은 위원회 출범 이후 단일 유형의 진정사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2002년에는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 보장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관련 정부 부처를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광범위한 사실 또는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3년 12월 9일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기초건강보장 △재원마련 △의료인력 확충 △의료체계 △의료분쟁 해결 △일반적인 의료처우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참석한 출소자, 교도소 의무과장, 관련 부처로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그 밖에 인권단체와 학계,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토론을 벌였다.

위원회는 향후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회적 무관심과 편견 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방안에 대하여 심층적인 조사



연구를 통하여 관련 부처에 권고 등을 할 예정이다.

(11) 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위원회는 2003년 12월 11일 ‘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2002년 10월 22일 위원회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 간염검사와 간염 예방접종 필요 여부를 기재토록 한 것은 B형간염 보균자를 차별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해당 항목의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차별시정에서 더 나아가 채용신체검사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는 이 작업의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하여 채용신체검사 과정에서 장애 및 병력을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제도를 포함하여 채용신체검사제도 전반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채용신체검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청문회에서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 등은 채용 전에 이루어지는 신체검사제도가 업무 적합성 판정이라는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이나 특정 병력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역할을 하여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기하였으며, 관련 부처 참석자들도 채용신체검사제도의 문제점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였다.

위원회는 청문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채용신체검사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예정이다.

(12)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에 관한 청문회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서가 협력하여 폐쇄회로카메라(CCTV)를 설치·운영하



는 경우와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위원회는 2003년 12월 12일 위원회 배움터1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청문회 참석자들은 △범죄예방 CCTV 설치·운영과 인권침해 여부 △CCTV 설치의 범죄예방 및 전이 효과 △범죄예방 CCTV 설치의 사후 감독 방법 △범죄예방 CCTV 설치 요건 및 운용 기준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위원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개진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범죄예방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3) 성매매 여성의 인권과 사법제도 토론회 개최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산업이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빈곤이나 가정폭력,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의 정리해고,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확산 유도정책으로 인한 신용카드 남용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일부 여성들이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그 단속·수사과정 및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2003년 12월 17일 ‘사법절차와 성매매 여성인권’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 과정에서는 △성매매 업주의 처벌에 미온적인 법원과 검찰의 태도 △성매매 피해 여성의 지원과 보호보다 수사 편의가 우선시된 형사제도와 운영 △성매매 여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의 미흡 △선불금 등의 불법적 채무관계를 이용한 성매매 업주들의 빈번한 고소와 민사소송 제기 등이 해결해야 할 주요한 문제점으로 논의되었다.

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비



릇하여 민·형사 사법절차 내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관련 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다.

(14)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공청회

위원회는 2003년 12월 19일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공청회는 수십 년 동안 가족들과 유리되어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납북자와 남측 가족들의 현황 및 인권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좀더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본 공청회에서는 △법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납북자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향 △납북자 관련 대북협상의 경과와 성과 △납치 피해자의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하여 학계 및 관계 부처인 통일부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의 주제발제가 있었고 이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공청회의 토론에서 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다음과 같이 거론되었다. 첫째, 납북한 당국은 이제 다양한 납치 억류자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들 본인과 가족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납북자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 노력, 납북자 가족들의 인권 회복, 귀환 납북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해야 한다. 셋째,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과 준비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정부가 해결의 주체가 되어 실질적인 협상과 접촉을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우리 정부의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다.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는 수십 년간 가족과 떨어져 고통 받고 있는 납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권보호의 필요성과 납북자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6. 기타 : 논문공모, 인권 일반지침 개발 등

(1) 인권논문 공모사업

위원회는 연구자의 인권 관련 연구를 장려하고 인권 지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인권논문 공모사업을 수행하였다. 인권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박사학위 소지자, 전문직 종사자의 학위 청구논문을 제외하고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수행사업의 원래 취지와 추진방법 간의 격차를 줄이고 사업추진의 일관성을 꾀하도록 하였다.

2003년 인권논문 공모에는 총 26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 의해 1차 서면심사 및 2차 전체 심사단 회의를 거쳐 논문심사가 이루어졌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 및 우수상의 경우 해당 작이 없었으며 가작 2편만이 선정되었다.

<사형제도에 대한 ‘법감정’의 비판적 고찰> (이덕인, 동아대학교 대학원)과 <국가정책의 강제성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공간선택권> (정필주, 서울대학교 대학원)이 가작으로 선정되었다. 우선 이덕인의 논문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는 현실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형폐지론 반대론자들의 법감정은 허구적이라는 점을 국민의 법감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등 논리적 전개와 논문 완성도에서 우수하다는 것이 선정이유였다. 정필주의 논문은 우선 주제선정에 있어 참신함과 독창성이 돋보이고 또한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화된 면접조사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 심층면접 등 연구방법상의 우수성이 그 선정이유가 되었다.

본 심사에서 입상하지 못한 다른 논문들은 주제의 독창성, 인권 지향성, 논리적 일관성 외에 문헌고찰의 타당성, 논문 형식 표절 여부 등의 심사기준에서 벗어나 탈락하였다.



(2) 연간보고서 발간 사업

위원회의 <연간보고서>는 매년 위원회의 연간 주요활동 내용과 향후 과제선정과 활동 계획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위원회 추진사업에 대한 대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2년 연간보고서는 총 3,000부가 출판되었으며 청와대, 국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당, 언론사, 대학 및 공공도서관, 인권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에 2,000부를 송부하였고 잔여분은 일반 국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였다.

연간보고서 발간사업은 위원회법 제29조(대통령과 국회 보고) 및 「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제11조(인권정책국)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사업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2002년 9월 23일 위원회 최초의 연간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외부 자문위원 4명과 내부 발간위원 9명을 위촉하여 연간보고서 발간위원회(위원장 박경서 상임위원)를 구성하였으며 원고작성 방향과 전체 목차구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후 각 부서별로 원고를 취합하여 발간위원회의 집필방향과 기준에 맞추어 원고를 정리하였고, 2003년 4월 4일에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연간보고서는 총 3편, 314쪽 분량으로 구성되었고 제1편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평가, 제3편 인권보호·향상을 위한 과제 및 대책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부록을 별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제·개정 법령,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연혁 및 주요 일지 그리고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자료 목록을 수록하였다.

아울러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제사회, 외국인 등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연간보고서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영문판 연간보고서 1,000부를 발간하여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였다.



(3) 인권침해 판단기준 및 예방지침(안) 제정사업

위원회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진정과 상담사례는 구금시설에서의 인권 관련 문제들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구금시설 수용자의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의거하여 구금시설내의 진정권 보장 및 면전진정 신청제도를 운영, 전 직원이 직접 구금시설을 방문하면서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선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중 구금시설을 상대로 한 진정사건수가 제2편 제2장의 <표2-2-3>과 같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711건으로 전체 진정사건의 약 5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금시설내의 인권침해 유형과 원인분석 및 판단기준 예방지침을 개발하여 구금시설내 인권 보호에 관한 방향 제시 및 가이드라인(guide line)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지침제정 작업은 대외적으로 구금시설 관련 유관기관의 인권 업무에 대한 통일성·체계성·일관성 등을 유지하고 대국민 인권의식을 고취하며, 대내적으로는 인권 정책·교육·홍보 및 인권침해 조사업무의 필요성을 유지함으로써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과정에서 기초적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판단기준과 예방지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는 구금시설내 인권침해 유형을 분석하였고, 구금시설 관련 외부 전문가에게 유형별로 집필 작업을 의뢰하여 초고를 작성하였다. 초고 작성시 유형별 관련 규정(헌법, 국제적 기준,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지침)과 관련 판례(헌법재판소 판례, 대법원 판례, 하급심판례) 및 관련 문헌(학술잡지, 학위논문)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2003년 12월 16일에는 위원회 배움터1에서 ‘구금시설내 인권침해 유형 및 지침(안)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공청회의 추진배경과 목적은 구금시설내 인권침해 유형분석 및 지침(안)을 개발하는 데 있어 전문가, 관련 부처, 관련 시민단체 등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침시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제시하고 토론을 통하여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본 공청회를 통하여 지침(안)과 관련하여 법무부 교정국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유형분석 및 지침(안) 개발은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라는 점을 알리고자 하였다.

본 공청회에는 법대 교수, 법무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헌법학회 등과 법조계와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유형력의 행사(계구사용, 강제력행사, 무기사용, 수용자간 폭행, 교도관의 폭행) △징벌 [징벌사유, 징벌부과절차, 징벌부과내용(특히 금지처분, 징벌의 집행)] △의료관련 문제(의사에 대한 접근성, 구금시설내 진료의 적정성, 외부병원 이송, 교정사고로 발생한 질환의 치료와 관련된 사례, 자비치료의 문제), △접견·서신 등 외부교통(서신발송과 수신, 신문 및 도서열람, 집필, 접견, 변호사와의 교통권), △기타 시설처우(신체검사, 이송, 급여, 수용환경, 생활조건, 교도작업) △권리구제절차의 활용(소장 면담, 청원 및 진정, 소송제기) 등에 대하여 토론을 벌였다.

본 공청회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인권침해 유형과 원인에 대한 분석 및 판단기준, 예방조치에 관한 일반 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로 전문가와 공동으로 그 시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위원회는 본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지침으로 확정할 예정이며 수사과정과 보호시설에 관한 침해유형 분석과 예방조치를 위한 일반지침(안)들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제3절 평가

위원회는 정부정책, 법령, 제도 및 관행 등에 대한 개선 권고와 의견 표명 등을 통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인권 보호가 정부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주요 가치 및 평가지표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2003년은 전년도에 비하여 우리 사회의 첨예한 인권 현안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심도 있는 법령검토, 인권상황 실태조사, 정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이 이루어지는 등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받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 및 기능 정립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

특히 우리나라 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마련 등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사업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폭증하는 인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사무처 인력부족으로 인한 시의성 문제와 권고의 실효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시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 또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마련 및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므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위원회법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또한 2003년은 정책과 제도, 법령 개정의 노력이 주로 긴급 현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마련과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그 동안 구축된 인적·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인권 관련 정책, 제도 및 법령 개정을 위한 중장기적이며 체계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1절 개 요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2003년도에는 권리구제와 관련한 진정, 상담, 안내 건수가 급증하였다. 특히 교도소 등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면전진정 신청과 차별행위와 관련된 진정사건수가 증가하였다.

위원회는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접근경로를 확장하여 화상상담과 실시간 문자상담 등 인터넷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문자 상담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좀더 쉽게 권리구제 절차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전문상담원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위촉함으로써 인권상담 서비스를 좀더 안정화 하였다. 또한 전문상담원과 상담업무 담당직원의 인권 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상담사례 연구모임을 정례화하여 상담사례와 진정접수 사건을 상호교류, 분석하여 환류화(feedback)함으로써 상담기법의 질적 향상을 꾀하였다. 위원회는 이와 같이 축적된 경험과 노력을 기반으로 <면전진정 가이드북>과 <인권상담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상담 및 진정접수와 관련한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하는 성과를 낳았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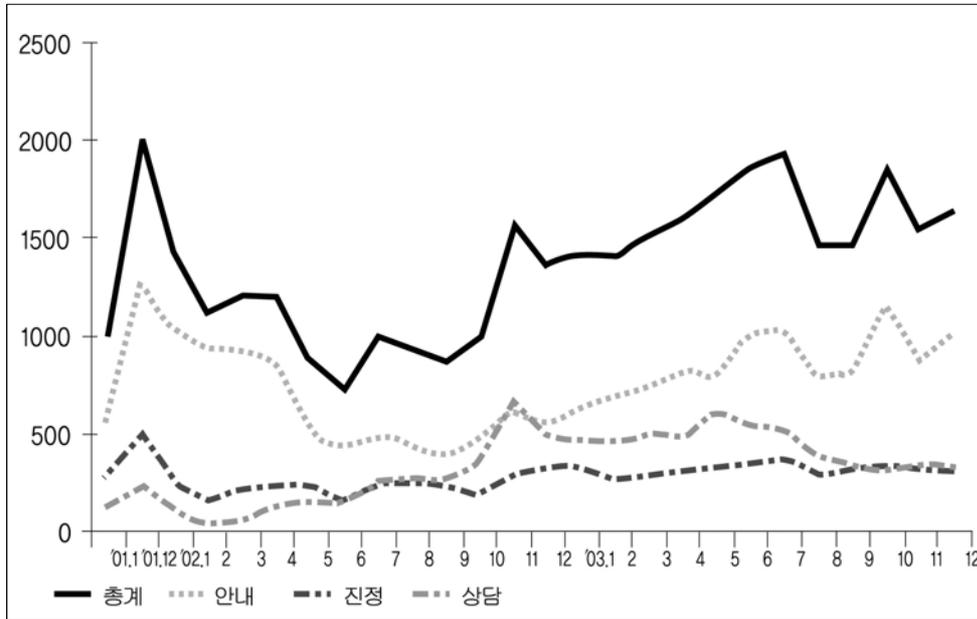
위원회가 진정을 접수하기 시작한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진정 사건수는 7,408건, 상담은 8,508건, 안내는 19,750건으로 총 35,666건에 이르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2003년도 한 해에는 진정사건이 3,815건, 상담은 5,261건, 안내는 10,340건으로 총 19,416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러한 접수건수는 2002년도에 비해 진정 36.7%, 상담 83.4%, 안내가 36.8% 증가한 것으로 특히 상담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2-2-1> 월별 진정·상담 및 안내 접수 현황

경로 연도	진 정						상 담					안 내					총 계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인 터 넷	계	방문		전화	인 터 넷	계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인 터 넷	계	
	대면	면접					대면	면접									
'01	247	5	203	310	38	803	128	3	247	-	378	129	1,713	10	-	1,852	3,033
'02	445	553	177	1,442	173	2,790	639	302	1,928	-	2,869	686	6,357	299	216	7,558	13,217
'03	555	1,129	76	1,760	295	3,815	890	878	3,487	6	5,261	592	7,930	621	1,197	10,340	19,416
누계	1,247	1,687	456	3,512	506	7,408	1,657	1,183	5,662	6	8,508	1,407	16,000	930	1,413	19,750	35,666

※ 2003년에 구축된 인권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해 기존의 사건·사례를 전산입력하고 통계를 정비함에 따라 2002년 연간보고서에 제시된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음.

※ 2002년에는 이메일, 우편, 팩스를 한 항목으로 집계했으나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민원을 '인터넷'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 집계함.



<그림 2-2-1> 월별 진정, 상담 및 안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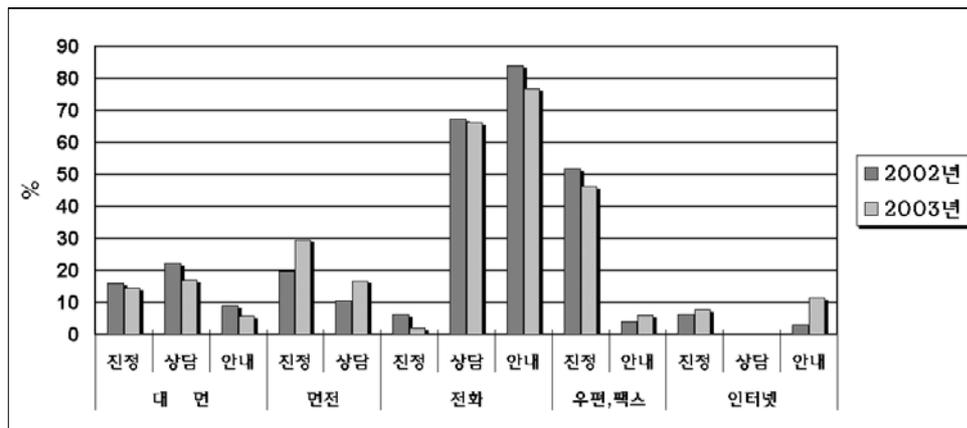
(1) 진정접수

진정의 경우 접수 경로별로 방문, 전화, 우편·팩스, 인터넷으로 구분하고 방문을 통한 진정접수는 다시 ‘대면’과 ‘면전’으로 분류하였다. ‘대면’은 진정인이 직접 위원회를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는 것이고, ‘면전’은 면전진정제도에 따라 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이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수용자를 면담한 후 진정을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표 2-2-1>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진정의 경우 우편·팩스를 이용한 접수가 1,760건으로 총 진정접수건수 3,815건 중 46.2%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면전진정이 1,129건으로 29.6%를 차지했다. 반면 대면진정을 통한 접수는 555건으로 14.5%를 차지했



으며 이메일 혹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295건으로 총 진정건수의 7.7%로 나타났다. 또한 전화를 이용한 진정건수는 총 76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2002년과 비교해 두드러진 차이는 면전진정이 553건에서 1,129건으로 증가하고 총 진정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8%에서 29.6%로 증가한 반면 전화 진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6.3%에서 2.0%로 감소한 점이다.



<그림 2-2-2> 경로별 민원 접수비율

(2) 상담 및 안내

<표 2-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의 경우 전화상담이 3,487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66.3%를 차지하였고 위원회를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한 경우는 890건으로 16.9%를 차지했다. 면전상담은 878건으로 총 상담의 16.7%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금·보호시설 수용자가 면전진정 의사를 밝힘에 따라 위원회 직원이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이들을 면담한 결과 현지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거나 신청인이 진정접수보다는 상담만을 원하는 등의 이유로 상담종결 처리한 경우를 의미한다.



위원회는 인권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화상상담, 실시간 문자 상담 등 인터넷을 통한 상담 접근경로를 확장하고 3개월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2003년 10월에 정식 개통을 하였으나 인터넷을 통한 상담은 총 6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0.1%에 머물렀다. 이는 장난성, 비방성 상담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인증제를 도입한 점과 홍보 미흡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실명인증제가 오히려 미성년자,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의 권리구제절차상의 접근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12월부터는 인증제를 폐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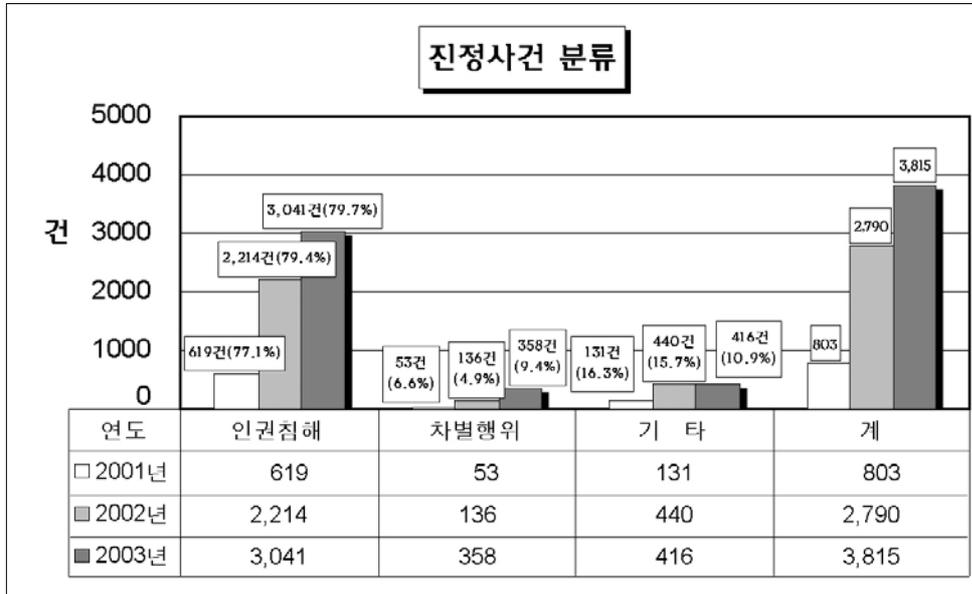
2003년에는 인터넷,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되는 각종 민원성 문의와 질의사항에 대한 안내, 회신처리 건수가 급증하였다. 우편·팩스를 통한 안내 및 회신은 2002년 299건에 비해 107.7%가 증가한 621건, 인터넷을 통한 경우는 2002년 216건에 비해 454.2%가 증가한 1,197건을 처리하여 인권 상담 및 안내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진정사건 및 상담사례 유형 분류

(1) 진정사건 분류

2003년도에 접수된 진정사건 총 3,815건 중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건은 3,041건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하고,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사건은 358건으로 9.4%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사건은 총 416건으로 10.9%를 차지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사건이 2002년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진정건수 중 차지하는 비율도 4.9%에서 9.4%로 증가하였다. 반면 기타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의 15.7%보다 줄어든 10.9%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3> 진정사건 분류

특히 차별행위와 관련된 진정사건이 증가한 이유는 위원회에서 실시한 직권조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주요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별적 관행과 대학교원 모집시 연령차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입사지원서의 기재 내용 중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을 삭제할 것과 국립대학 교원 모집시 연령제한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차별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고 더 적극적인 권리 찾기로 이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여정부가 표방한 5대 차별(여성, 장애, 외국인, 비정규직, 학벌) 시정을 위한 노력도 차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시정의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2년에 비해 기타 사건의 수와 총 진정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감소한 것은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접수가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 진정사건 유형별 분류

인권침해 사건은 위원회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은 사건으로 유형에 따라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입법기관, 기타 국가기관, 구금시설, 보호시설, 군검찰, 군헌병, 국군기무사령부, 군교도소·군구치소 등 군 구금시설, 기타 군 관련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로 분류를 하였다.

차별사건은 위원회법 제30조제2항에 의거하여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에 의한 평등권침해 △ 장애, 병력,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성별,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성적 지향, 나이, 용모 등 신체조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등을 이유로 한 ① 고용 ②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③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서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차별행위로 분류하였다.

<표 2-2-2>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2003년 총 3,041건 중에서 1,686건이 교도소 등 구금시설을 상대로 한 진정으로 진정건수의 55.4%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2002년의 46.3%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 준다. 다음은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한 진정으로 이들은 각각 173건, 702건으로 2002년의 195건, 705건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며 전체 인권침해 사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각각 5.7%, 23.1%로 전년도의 8.8%, 31.9%에 비해 감소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인권침해는 81건으로 2002년에 비해 55건이 증가했으며 인권침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도 1.2%에서 2.7%로 증가하였다.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은 총 358건이 접수되었다. 이 중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에 의한 평등권 침해가 127건으로 전체 진정건수 중 35.4%를 차지하였다. 위원회법 제30조제2항은 법인, 단체,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관련하





<표 2-2-2> 진정접수 사건의 유형별 분류 현황

	인 권 침 해		차 별 행 위			기 타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계	2,214(100.0)	3,041(100.0)	계	136(100.0)	358(100.0)	계	440(100.0)	416(100.0)
검찰	195(8.8)	173(5.7)	장애	19(14.0)	14(3.9)	사인간침해	85(19.3)	43(10.4)
경찰	705(31.9)	702(23.1)	병력	8(5.9)	15(4.2)	회 사	22(5.0)	11(2.6)
국가정보원	15(0.7)	5(0.2)	사회적신분	23(16.9)	36(10.0)	기타단체	7(1.6)	3(0.7)
특별사법경찰관리	31(1.4)	26(0.9)	출신지역	2(1.5)	2(0.6)	재 산 권	23(5.2)	12(2.9)
지방자치단체	26(1.2)	81(2.7)	출신국가	11(8.1)	9(2.5)	법령, 제도	134(30.5)	166(39.9)
사법기관	16(0.7)	35(1.2)	출신민족	-	1(0.3)	입법, 재판	31(7.0)	22(5.3)
입법기관	-	2(0.1)	인 종	1(0.7)	-	기타진정	138(31.4)	159(38.2)
기타 국가기관	124(5.6)	201(6.6)	피부색	-	-			
구금시설	1,025(46.3)	1,686(55.4)	성 별	7(5.1)	34(9.5)			
보호시설	25(1.1)	57(1.8)	혼인여부	2(1.5)	4(1.1)			
군검찰	1(0.0)	1(0.0)	임신출산	-	15(4.2)			
군헌병	6(0.3)	4(0.1)	가족상황	-	2(0.6)			
국군기무사령부	3(0.1)	3(0.1)	성적지향	3(2.2)	2(0.6)			
군구금시설	3(0.1)	6(0.2)	나 이	4(2.9)	21(5.9)			
기타 군관련기관	39(1.8)	59(1.9)	용 모 등	2(1.5)	4(1.1)			
			종 교	4(2.9)	5(1.4)			
			정치적의견	3(2.2)	7(2.0)			
			전 과	6(4.4)	1(0.3)			
			평등권침해	38(28.0)	127(35.4)			
			학력, 학벌	-	27(7.5)			
			기 타	3(2.2)	32(8.9)			

여 18가지 차별사유와 3가지 차별영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중의 평등권 침해(헌법 제11조)에 대해서는 차별사유와 영역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더욱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이나 시설에 의한 차별행위는 그 영역을 18가지 사유에 제한하지 않고 '평등권 침해'로 분류하였으며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구금시설내 수용자간 차별적 처우, 국립기관의 시설 이용에 따른 차별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2003년에는 성별과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진정이 각각 5.1%에서 9.5%, 2.9%에



서 5.9%로 증가하였으며 장애에 의한 차별은 14.0%에서 3.9%로 감소하였다. 2002년까지는 학력 및 학벌에 의한 차별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로 분류되었으나,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이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사건 중 다수를 차지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공론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위원회법이 정하고 있는 18가지 차별사유 외에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2003년 한 해 동안 학력 및 학벌에 의한 차별 진정은 총 27건으로 차별행위와 관련된 총 진정사건 중 7.5%를 차지하였다.

총 416건이 접수된 기타 사건을 살펴보면 재산권 침해 혹은 사인간의 침해 등 대부분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기타 사건 중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인권침해 혹은 차별행위의 주체나 사유 또는 피해자가 특정인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사건이 기타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의 30.5%에서 39.9%로 증가하였다.

2) 지역별 진정인 분포

<표 2-2-3> 진정인의 지역별 분포현황

지 역	건 수(%)	지 역	건 수(%)
계	3,815 (100.0)	강원	95 (2.5)
서울	693 (18.2)	충북	76 (2.0)
부산	314 (8.2)	충남	136 (3.6)
대구	287 (7.5)	전북	161 (4.2)
인천	112 (2.9)	전남	143 (3.8)
광주	218 (5.7)	경북	444 (11.6)
대전	196 (5.1)	경남	226 (5.9)
울산	45 (1.2)	제주	17 (0.5)
경기	593 (15.6)	미상	59 (1.5)

지역별 진정인의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경북,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즉, 인구분포가 높은 지역에서 진정인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진정한 성별 분포

<표 2-2-4> 진정한 성별 분포 현황

성별 \ 유형	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계	3,815 (100.0)	3,041 (100.0)	358 (100.0)	416 (100.0)
남	2,880 (75.5)	2,390 (78.6)	202 (56.4)	288 (69.2)
여	336 (8.8)	190 (6.2)	109 (30.4)	37 (8.9)
미상	599 (15.7)	461 (15.2)	47 (13.2)	91 (21.9)

진정한 성별 분포를 분석해 보면 총 3,815건 중 남성이 2,880건으로 75.5%, 여성이 336명으로 8.8%를 차지했다. 진정유형에 따른 성별은 인권침해의 경우 남성이 78.6%, 여성이 6.2%를 차지한 반면, 차별행위의 경우 남성이 56.4%, 여성이 30.4%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권리구제에 있어서는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평등권 침해 등 차별문제에 있어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진정한 연령별 분포

<표 2-2-5> 진정한 연령별 분포현황

연령 \ 유형	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계	3,815(100.0)	3,041(100.0)	358(100.0)	416
10-19세	24(0.6)	7(0.2)	8(2.2)	9(2.2)
20-29세	256(6.7)	204(6.7)	32(8.9)	20(4.8)
30-39세	713(18.7)	556(18.3)	91(25.4)	66(15.9)
40-49세	707(18.5)	560(18.4)	70(19.6)	77(18.5)
50-59세	282(7.4)	200(6.6)	33(9.2)	49(11.7)
60-69세	132(3.5)	103(3.4)	6(1.7)	23(5.5)
70-79세	30(0.8)	19(0.6)	4(1.2)	7(1.7)
80-89세	14(0.4)	9(0.3)	-	5(1.2)
미상	1,657(43.4)	1,383(45.5)	114(31.8)	160(38.5)



전체적으로 진정인의 연령분포는 30, 40대가 거의 같은 비율로 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경우 30, 40대가 각각 18.3%, 18.4%로 거의 동일한 비율을 보였으나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경우 30대가 25.4%, 40대가 19.6%로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외국인 진정인/피해자 분포

진정인 혹은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2001년 11월 26일 이후에 접수된 총 진정사건 7,408건 중 2.3%에 해당하는 172건이었다. 외국인 진정사건 172건 중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건은 110건(64.0%), 차별행위 사건은 40(23.3%), 기타 사건은 22건(12.7%)으로 나타났다.

<표 2-2-6> 외국인 관련 진정사건 유형별 현황

계	유형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172(100.0)		110(64.0)	40(23.3)	22(12.7)

※ 외국인 진정인/피해자 수가 총 진정건수에서 차지하는 유의미한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위원회가 진정접수 업무를 시작한 2001. 11. 26.이후에 접수된 모든 사건을 포함하였음.

진정인 혹은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별 분포는 <표 2-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이 80건(4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방글라데시 16건(9.3%), 미국(8.1%), 파키스탄(7.6%)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혹은 미국 국적의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대다수는 우리나라 동포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로 분류된 3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이들이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경우였다.



<표 2-2-7> 외국인 진정인·피해자의 국적별 현황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계	172(100.0)	미얀마	1(0.6)
중국	80(46.5)	대만	1(0.6)
방글라데시	16(9.3)	브라질	1(0.6)
미국	14(8.1)	스리랑카	1(0.6)
파키스탄	13(7.6)	에티오피아	1(0.6)
나이지리아	6(3.5)	우즈베키스탄	1(0.6)
베트남	5(2.9)	우크라이나	1(0.6)
이란	4(2.3)	카메룬	1(0.6)
카자흐스탄	4(2.3)	코트디부아르	1(0.6)
러시아	3(1.7)	콩고	1(0.6)
일본	2(1.1)	키르기스스탄	1(0.6)
캐나다	2(1.1)	태국	1(0.6)
라이베리아	2(1.1)	핀란드	1(0.6)
가나	1(0.6)	필리핀	1(0.6)
네팔	1(0.6)	무국적	1(0.6)
몰도바	1(0.6)	기타	3(1.7)

(2) 상담사례 분석

1) 상담처리 결과

상담처리 결과는 크게 상담종결, 타기관 안내, 진정 예정, 재상담 예정, 진정접수,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표 2-2-8> 상담처리의 유형별 현황

처리유형	처리 이유	2002년	2003년
총 계		2,529(100.0)	4,578(100.0)
상담종결	소 계	1,218(48.1)	2,377(51.9)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440	851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139	179
	진술내용의 현실성, 신빙성 결여	110	254
	내담자가 상담만을 원함	116	344
	조사가능기간 도과	87	83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됨	46	235
	이미 진정한 사건에 대한 상담	42	209
	구체적 주장내용 없음	22	48
	기타	216	174
타 기관안내	소 계	466(18.4)	612(13.4)
	적절한 기관에 안내	453	523
	내담자가 타 기관을 문의	9	74
	기타	4	15
진정 예정	소 계	333(13.2)	894(19.5)
	우편, 팩스 등 다른 방법으로 진정 예정	231	390
	고려 후에 진정 예정	34	112
	서류 등을 구비하여 진정 예정	23	233
	조사대상은 아니나 내담자가 원함	10	44
	사건의 추이를 보고 진정 예정	9	61
	재상담 후에 진정 예정	9	32
	기타	17	22
재상담 예정	소 계	247(9.8)	404(8.8)
	전화상담 후 방문상담 예정	111	94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담 예정	35	67
	사건의 추이를 보고 다시 상담 예정	31	133
	내담자가 계속 상담을 원함	29	78
	상담시간의 부족 또는 과다로 재상담 예정	8	7
	기타	33	25
상담 후 진정접수	소 계	169(6.7)	195(4.3)
	조사대상은 아니나 내담자가 강력하게 원함	67	47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	77	94
	조사대상인지 불분명하나 위원회의 판단을 원함	19	41
	제도개선 등	5	6
기타	1	7	
기 타	소 계	96(3.8)	96(2.1)
	상담도중 전화 끊김	49	69
	조사담당자 안내	8	2
	상담도중 내담자가 자리를 뜬	2	3
	기타	37	22

※ 상담처리결과분석 대상 자료는 <표2-2-1>의 총 상담건수 중 <표2-2-19>의 면전진정 접수 과정에서 상담 종결된 건수(제3항 면전진정 접수의 안정화 부분에서 별도로 분석)를 제외하고, '상담후 진정접수'처리건수를 포함한 자료임.(상담처리총계=총 상담건수-면전진정 상담건수+상담 후 진정접수건수)



2003년도 상담종결 사례수는 2,377건으로 총 상담사례 4,578건 중 51.9%, 타기관 안내는 612건으로 13.4%를 차지하였다. 진정 예정은 총 894건으로 19.5%를 차지하였고 재상담 예정은 404건으로 8.8%를 차지하였다. 상담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진정을 접수한 경우는 195건으로 총 상담 중 4.3%를 차지하였다. 기타로 분류된 96건의 경우는 상담도중에 전화가 끊기거나 내담자가 자리를 뜨는 등 상담이 진행되지 않은 사례들이 포함되었다.

2002년도의 상담처리 결과와 비교하면 상담종결은 48.1%를 차지하던 것이 2003년에는 51.9%로 증가했으며 진정 예정인 경우도 13.2%에서 19.5%로 증가하였다. 반면 타기관을 안내한 경우는 18.4%에서 13.4%로, 진정접수를 한 경우는 6.7%에서 4.3%로 다소 감소하였다.

2) 상담유형별 분류

<표 2-2-9> 상담처리의 경로별 현황

상담유형	계(%)	대면(%)	전화(%)	인터넷(%)
계	4,383 (100.0)	890 (100.0)	3,487 (100.0)	6(100.0)
인권침해	1,766 (40.3)	294 (33.0)	1,471 (42.2)	1 (16.7)
차별행위	395 (9.0)	63 (7.1)	332 (9.5)	-
기타	2,222 (50.7)	533 (59.9)	1,684 (48.3)	5 (83.3)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례는 1,766건으로 전체 상담사례의 40.3%, 차별행위 관련 상담사례는 395건으로 9.0%인 반면 인권침해나 차별 범주를 벗어난 기타 상담사례는 2,222건으로 50.7%를 차지하였다. 접수경로별 상담유형을 보면 대면상담과 전화상담 모두 차별행위보다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담이 많았고 기타 상담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보다는 대면상담의 비율이 높았다.



3) 인권침해 상담

가. 기관별 분류

<표 2-2-10>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

기관	연도(건수)	2002년	2003년
계		922(100.0)	1,766(100.0)
검찰		148 (16.1)	269 (15.2)
경찰		442 (47.9)	676 (38.3)
국가정보원		9 (1.0)	18 (1.1)
특별사법경찰관리		2 (0.2)	7 (0.4)
지방자치단체		35 (3.8)	129 (7.3)
사법기관		17 (1.8)	39 (2.2)
기타 국가기관		93(10.1)	313 (17.7)
구금시설		84 (9.1)	104 (5.9)
보호시설		1 (0.1)	3 (0.2)
다수인보호시설		42 (4.6)	117 (6.6)
군검찰		3 (0.3)	9 (0.5)
군현병		2 (0.2)	6 (0.3)
국군기무사령부		2 (0.2)	-
군구금시설		-	1 (0.1)
기타 군 관련 기관		42 (4.6)	75 (4.2)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표 2-2-2>에서 보듯이 구금시설과 관련한 것이 55.4%로 가장 많은 것에 비해 상담의 경우<표 2-2-10>를 보면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경찰과 관련한 것이 676건(38.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앙 행정기관 혹은 특별 행정기관 등 기타 국가기관이 313건(17.7%)이었다. 또한 검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269건(15.2%), 129건(7.3%)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경찰이 442건으로 전체 상담사례 중 47.9%를 차지했으나 2003년에는 676건으로 전체 상담사례 중 차지하는 비율이 38.3%로 감소하였으며 검찰의 경우도 2002년 16.1%에서 2003년 15.2%로 감소하였다. 반면 기타 국가기관의 경우 10.1%에서 17.7%로 증가하였다.





나. 내용별 분류

인권침해와 관련한 상담내용을 기관별로 분석하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검찰, 군헌병,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수사기관(수사관)의 경우 2002년과 다름없이 ① 편파, 불공정 수사 ②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총기 혹은 장구 사용 ③ 과도한 신체검사, 욕설 등 인격권 침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① 위법, 부당한 처분 ② 욕설, 모욕, 면박, 불친절 등 인격권 침해 ③ 행정, 제도개선에 대한 상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구금·보호시설과 관련한 상담내용으로는 ① 의료조치 미흡 ② 폭행, 가혹행위 ③ 부당처우에 대한 것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다수인보호시설의 경우는 ① 강제수용 ② 폭행, 가혹행위 ③ 욕설, 모욕, 면박, 불친절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대 등 군사기관과 관련한 상담은 ① 폭행, 가혹행위 ② 생명권 침해 ③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관한 것이 다수를 차지했다.

<표 2-2-11> 인권침해 상담의 내용별 현황

유형	연도	2002년	2003년
총 계		922(100.0)	1,766(100.0)
	소 계	608(65.9)	985(55.8)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특별사법경찰관 리, 군검찰, 군헌병, 국군기무사령부	불심검문, 부당압수수색검열도감정, 과잉진압	32	55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총기, 장구 사용	117	197
	과도한 신체검사 등 인격권 침해	72	98
	편파, 불공정 수사	252	369
	불법 체포, 임의동행, 부당감금	44	59
	함정수사, 부당강압 증거확보	24	29
	피의자 권리 미고지, 가족에 미통지	2	11
	접견·교통권 제한	2	3
	알권리 침해	5	16
	공소권 남용	14	32
	전과기록 미삭제	2	9
	부당한 사건분류	4	15
	피의사실 유포	2	7
	의료권 방해제한	2	12
사회적 약자,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9	11	
기타	25	62	



유형	연도	2002년	2003년
기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 계	145(15.7)	481(27.2)
	위법, 부당한 처분	33	106
	부작위 등 소극적 처분	17	54
	폭행, 가혹행위	6	34
	인격권 침해	17	78
	사생활 비밀 침해	13	45
	알권리 침해	9	13
	공무원 부당 처우	4	14
	행정, 제도개선	23	68
	출입국 제한	11	33
	기타	12	36
구금보호시설 (군구금시설 포함)	소 계	85(9.2)	108(6.1)
	의료조치 미흡	29	37
	권리구제절차 제한	8	6
	서신 집필 제한	3	6
	부당한 조사, 징벌	10	7
	폭행, 가혹행위	19	19
	부당처우	11	19
	기타	5	14
다수인보호시설	소 계	42(4.6)	117(6.6)
	강제수용	16	58
	폭행, 가혹행위	14	29
	외부교통권 제한	1	6
	의료조치 미흡	3	5
	강제노동	4	2
	인격권 침해	1	7
	시설, 환경문제	2	2
기타	1	8	
군사기관(군수사 기관, 군구금시설 제외)	소 계	42(4.6)	75(4.3)
	생명권 침해	16	14
	폭행, 가혹행위	3	26
	인격권 침해	0	1
	의료조치 미흡	5	7
	불합리한 행정제도	10	10
	기타	8	17





4) 차별행위 상담

<표 2-2-12> 차별행위 주체별 현황

차별주체	연도	2002년	2003년
계		180(100.0)	395(100.0)
국가기관*	소 계	118(65.6)	185(46.8)
	검찰/경찰	77(42.8)	73(18.4)
	군 대	1(0.6)	7(1.8)
	구급시설	-	1(0.2)
	기타 국가기관	34(18.9)	86(21.8)
	지방자치단체	6(3.3)	15(3.8)
	보호시설	-	3(0.8)
법인/단체/사인 등**	소 계	53(29.4)	165(41.8)
	법 인	43(23.9)	125(31.7)
	단 체	2(1.0)	6(1.5)
	개인회사	3(1.7)	17(4.3)
	사 인	5(2.8)	17(4.3)
교육기관	소 계	9(5.0%)	45(11.4)

*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급·보호시설 포함

** 각종 법인, 개인회사 포함

차별행위와 관련된 상담은 국가기관의 평등권 침해와 관련한 차별문제를 상담한 경우가 46.8%로 법인·단체·사인에 의한 차별사례(41.8%)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한 차별상담은 11.4%를 차지하였다. 2002년도와 비교해 볼 때 차별상담의 특징은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사례는 65.6%에서 46.8%로 감소한 반면, 법인·단체·사인 등에 의한 차별 상담이 29.4%에서 41.8%로 증가하고, 교육기관에 의한 차별 상담도 5.0%에서 11.4%로 증가한 점이다.



가. 차별사유

<표 2-2-13> 차별행위 상담의 사유별 현황

차별사유	국가기관 (%)		법인/단체/사인 (%)		교육기관 (%)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계	118(100.0)	185(100.0)	53(100.0)	165(100.0)	9(100.0)	45(100.0)
장애	6(5.1)	16(8.6)	10(19.0)	28(17.0)	2(22.2)	4(8.9)
사회적 신분	9(7.6)	28(15.1)	9(17.0)	36(21.8)	1(11.2)	9(20.0)
출신국가	6(5.1)	11(5.9)	6(11.3)	12(7.4)	-	-
병력	4(3.3)	3(1.6)	3(5.7)	9(5.5)	-	1(2.2)
성별	-	4(2.2)	6(11.3)	17(10.3)	-	4(8.9)
나이	3(2.5)	13(7.0)	2(3.7)	16(9.7)	-	4(8.9)
출신지역	-	6(3.2)	2(3.7)	1(0.6)	-	-
형의 효력이 실희된 전과	4(3.3)	4(2.2)	3(5.7)	3(1.8)	-	-
용모 등 신체적 조건	1(0.8)	-	1(1.9)	6(3.6)	-	-
혼인 여부	-	1(0.5)	2(3.7)	3(1.8)	-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1(0.8)	1(0.5)	1(1.9)	4(2.4)	-	1(2.2)
종교	1(0.8)	1(0.5)	-	-	2(22.2)	3(6.7)
가족상황	-	-	1(1.9)	1(0.6)	-	-
성적 지향	1(0.8)	-	-	1(0.6)	-	-
출신민족	-	2(1.1)	-	-	-	-
임신 또는 출산 여부	-	2(1.1)	-	1(0.6)	-	1(2.2)
인종	-	-	-	-	-	1(2.2)
피부색	-	-	-	-	-	-
학력·학벌	1(0.8)	3(1.6)	-	6(3.6)	-	4(8.9)
평등권 침해	75(64.0)	81(44.0)	-	1(0.6)	-	4(8.9)
기타	6(5.1)	9(4.9)	7(13.2)	20(12.1)	4(44.4)	9(20.0)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법인·단체·사인에 의한 차별행위와는 달리 국가기관 등에 의한 차별행위에 대해 그 사유와 영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편의상 법인·단체·사인에 의한 차별행위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함.

경찰, 검찰, 구급·보호시설,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사례의 경우 총 185건 중 44.0%에 해당하는 81건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되었으며 여기에는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 구급·보호시설내 부당처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28건으로 15.1%를 차지했으며 장애, 나이에 의한 차별이 각각 8.6%, 7.0%를 차지하였다. 특히 2003년도는 2002년도에 비해 국가기관의 경우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차지하는 비율이 7.6%에서 15.1%로 증가하였다.





법인·단체·사인의 경우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36건(21.8%), 장애에 의한 차별이 28건(17.0%), 성별에 의한 차별이 17건(10.3%)이었으며 국가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차별사유 중 기타로 분류된 20건(12.1%)은 주로 내담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었다.

교육기관에 의한 차별사례는 2002년에 비해 상담건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차별사유가 좀더 다양해졌는데 이 역시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9건(2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 나이,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을 상담한 사례가 각각 4건(8.9%)씩 있었다.

나. 차별영역

<표 2-2-14> 차별행위 상담의 영역별 현황

차별영역	차별주체	국가기관(%)		법인/단체/사인(%)		교육기관(%)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계		118(100.0)	185(100.0)	53(100.0)	165(100.0)	9(100.0)	45(100.0)
소 계		20(17.0)	57(30.8)	34(64.1)	120(72.7)	5(56.0)	29(64.5)
고 용	모집	3	14	2	8	-	4
	채용	9	10	8	26	-	1
	교육	-	-	-	1	-	2
	배치	2	8	5	12	1	5
	승진	1	6	3	4	2	5
	임금지급	1	4	9	18	-	1
	임금외 금품지급	1	2	-	3	-	2
	자금용자	-	-	-	-	-	-
	정년	-	-	-	1	-	-
	퇴직	2	4	1	7	-	-
	해고	1	2	3	32	-	9
	기타	-	7	3	8	2	-
소 계		8(6.8)	25(13.5)	11(20.8)	31(18.8)	-	2(4.4)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용	재화	4	18	11	24	-	2
	용역	2	3	-	3	-	-
	교통수단	1	3	-	2	-	-
	상업시설	-	1	-	2	-	-
	토지	-	-	-	-	-	-
주거시설	1	-	-	-	-	-	
소 계		1(0.8)	4(2.2)	-	3(1.8)	4(44.0)	10(22.2)
시설 등 이용	교육시설	1	4	-	3	4	9
	직업훈련기관	-	-	-	-	-	1
기 타	소 계	89(75.4)	99(53.5)	8(15.1)	11(6.7)	-	4(8.9)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상담 사례 총 185건 중 57건(30.8%)이 고용과 관련된 차별행위로 모집과정과 채용, 업무배치에서 차별에 대한 상담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용과 관련한 차별행위와 시설 등 이용에서의 차별행위는 각각 25건(13.5%), 4건(2.2%)이었다. 특히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영역 중 기타 영역이 5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표에 열거한 차별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주로 검찰이 부당하게 불기소 처리했다는 상담이 다수를 차지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모욕적·차별적 언행 등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국가기관의 경우 2002년에 비해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용에 대한 차별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기타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비율이 감소한 점이 2003년의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법인·단체·사인의 경우 고용에서의 차별이 120건(7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에서도 해고와 관련된 차별 상담이 가장 많았다.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용과 관련한 차별과 시설 등 이용에서의 차별에 대한 상담은 각각 31건(18.8%), 3건(1.8%)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에 비해 고용영역에서 차별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증가했다. 교육기관의 경우는 고용에 대한 차별행위가 29건으로 64.5%를 차지하고, 시설 등 이용에 대한 차별이 10건으로 22.2%를 차지했다.

5) 기타 상담현황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상담사례 2,222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2002년과 마찬가지로 사인간의 분쟁이나 폭행 등에 관련한 상담이 737건(33.2%)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재산권침해와 관련된 상담이 203건(9.1%), 법률 문의가 158건(7.1%), 재판 지연·부당한 재판 등 사법기관에 대한 불만이 127건(5.7%)이었으며 법령·제도 개선 요구와 국가기관에 의한 기타 침해가 각각 124건(5.6%), 116건(5.2%)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103건(4.7%), 위원회 관련 제안, 업무 관련 문의 등이 각각 96건(4.3%), 51건(2.3%)을 차지했다. 그 밖에 주장 혹은 하소연하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는 기타 상담사례로 처리하였다.

<표 2-2-15> 기타 상담의 유형별 현황

유형	2002년	2003년
계	1,258(100.0)	2,222(100.0)
사인간 인권침해	471(37.4)	737(33.2)
재산권	100(7.9)	203(9.1)
국가기관에 의한 기타 침해	49(3.9)	116(5.2)
법률문의	102(8.1)	158(7.1)
사법기관에 대한 불만	99(7.9)	127(5.7)
법령·제도개선 요구	65(5.2)	124(5.6)
위원회 업무에 대한 불만	48(3.8)	103(4.7)
위원회 업무 문의	45(3.6)	51(2.3)
위원회 관련 제안	34(2.7)	96(4.3)
기타	245(19.5)	507(22.8)

3. 면전진정 접수의 안정화

면전진정제도가 점차 정착되어감에 따라 2002년까지 월평균 신청건수가 96건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218건에 이르렀다.

폭주하는 면전진정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면전진정 접수체계를 개선하였으며 그 결과 <표 2-2-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2,600건을 처리할 수 있었다. 또한 수용자가 면전진정을 신청한 후 위원회 직원이 신청자를 면담하기까지의 소요기간 또한 대폭 단축되었다.



(1) 접수 및 처리현황

<표 2-2-16> 월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월	'01-02	'03.1.	2.	3.	4.	5.	6.	7.	8.	9.	10.	11.	12.	'03 소계	총계
신청	1,243	219	164	206	209	206	209	256	242	215	240	218	231	2,615	3,858
처리	1,104	193	174	170	228	173	255	266	226	249	235	225	206	2,600	3,704

※ 처리=진정+상담종결+철회

면전진정 신청추이를 살펴보면 명절이 있는 2월과 9월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하절기인 7~8월에는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전진정 신청건수 2,615건 중 위원회 직원과 면담한 후 진정을 접수한 경우는 1,129건으로 총 신청건수의 43.2%이었으며, 면담 후 상담종결 처리한 경우는 878건으로 33.6%를 차지했다. 또한 면전진정 신청을 철회한 경우는 위원회 직원이 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신청인이 면담의사를 철회하거나 시설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거절한 것으로 총 593건(22.7%)을 차지했다.

한편 면전진정 누적 미처리건수는 2002년 139건에서 154건으로 증가하였으나 2003년 신청건수가 2002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2,615건이므로 미처리 비율은 11.2%에서 5.9%로 감소하였다. 이는 위원회의 직원 충원,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그리고 면전진정 접수업무의 효율화 등에 힘입은 결과라 볼 수 있다.





<표 2-2-17> 시설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처리결과 시설명	2002					2003				누적 미처리
	신청	철회	진정	상담종결	미처리	신청	철회	진정	상담종결	
합 계	1,243 (100.0)	241 (19.4)	556 (44.7)	307 (24.7)	139 (11.2)	2,615 (100.0)	593 (22.7)	1,129 (43.2)	878 (33.6)	154 (5.9)
교정시설	1,234	241	548	306	138	2,595	590	1,122	870	152
안양교도소	77	28	32	14	3	115	40	50	23	5
춘천교도소	19	3	6	10	-	45	21	12	11	1
원주교도소	40	9	16	13	2	41	9	16	17	1
의정부교도소	5	3	2	-	-	9	2	2	5	-
여주교도소	2	2	-	-	-	12	3	7	2	-
영등포교도소	5	2	2	1	-	35	5	12	15	4
서울구치소	77	12	39	17	8	228	45	109	74	9
성동구치소	7	2	1	4	-	17	6	8	1	1
영등포구치소	-	-	-	-	-	5	2	3	-	-
인천구치소	27	8	9	8	2	20	5	12	4	1
수원구치소	5	1	2	2	-	31	4	14	11	3
강릉교도소	2	2	-	-	-	16	5	6	4	1
청송교도소	55	6	25	8	16	173	27	83	66	13
청송제2교도소	137	9	59	42	27	143	16	64	81	9
청송제1보호감호소	17	3	8	2	4	68	11	29	27	5
청송제2보호감호소	45	5	18	15	7	33	11	13	16	-
대구교도소	91	11	47	24	9	265	45	108	99	23
부산교도소	51	3	34	6	8	165	20	79	65	9
진주교도소	74	24	27	17	6	100	23	42	38	4
안동교도소	19	3	12	4	-	80	31	25	17	7
경주교도소	3	2	-	1	-	16	5	6	4	1
마산교도소	11	1	-	6	5	47	14	25	9	2
김천소년교도소	-	-	-	-	-	10	7	2	1	-
대구구치소	2	1	-	1	-	18	5	7	6	-
울산구치소	1	-	1	-	-	4	1	3	-	-
부산구치소	53	11	20	18	3	126	26	56	36	11
대전교도소	75	21	32	19	4	189	41	71	65	15
청주교도소	35	4	20	10	1	22	7	10	4	2
공주교도소	42	15	14	7	6	37	8	22	13	-
천안구치지소	1	-	1	-	-	2	1	1	-	-



수용시설명	2002					2003					누적 미처리
	신청	철회	진정	상담종결	미처리	신청	철회	진정	상담종결		
논산구치지소	2	-	1	1	-	2	-	1	1	-	
서산구치지소	-	-	-	-	-	1	-	1	-	-	
천안개방교도소	1	-	1	-	-	-	-	-	-	-	
홍성교도소	14	5	5	1	3	23	8	10	5	3	
청주여자교도소	1	-	-	1	1	8	2	1	5	-	
평택구치지소	1	-	-	-	1	2	1	1	1	-	
천안소년교도소	-	-	-	-	-	5	4	-	1	-	
광주교도소	141	27	55	33	15	232	52	119	73	4	
전주교도소	56	13	28	10	5	74	34	24	19	2	
목포교도소	28	10	12	4	2	118	28	49	32	11	
군산교도소	2	1	-	-	-	38	7	13	15	3	
장흥교도소	5	2	3	-	-	9	6	2	1	-	
순천교도소	4	1	3	-	-	7	1	4	1	1	
제주교도소	1	-	1	-	-	4	1	-	2	1	
군구금시설	-	-	-	-	-	1	-	1	-	-	
21사단헌병대영창	-	-	-	-	-	1	-	1	-	-	
경찰서	5	-	5	-	-	7	3	2	-	1	
안성경찰서	1	-	1	-	-	-	-	-	-	-	
분당경찰서	1	-	1	-	-	-	-	-	-	-	
성동경찰서	1	-	1	-	-	-	-	-	-	-	
서초경찰서	1	-	1	-	-	-	-	-	-	-	
의정부경찰서	-	-	-	-	-	-	1	-	-	-	
거창경찰서	-	-	-	-	-	1	-	-	-	-	
안산경찰서	-	-	-	-	-	1	-	-	-	-	
전주중부경찰서	1	-	1	-	-	-	-	-	-	-	
의성경찰서	-	-	-	-	-	-	-	1	-	-	
통영경찰서	-	-	-	-	-	1	-	1	-	-	
충주경찰서	-	-	-	-	-	3	2	-	-	1	
보호시설	4	-	3	1	1	12	-	4	8	1	
공주치료감호소	-	-	1	-	-	11	-	2	8	1	
갱생보호공단(광주)	1	-	1	-	-	-	-	-	-	-	
화성외국인보호소	2	-	1	1	-	1	-	1	-	-	
국립춘천정신병원	1	-	-	-	1	-	-	1	-	-	

※ 철회+진정+상담종결=신청이지만, 합계가 맞지 않는 경우는 수용자가 면전진정 신청 후 타 시설로 이송, 이입한 것으로 신청시 수용된 시설이 아닌 이입한 시설의 처리건수로 처리함에 따른 것임.





면전진정신청 수용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2년에는 <표 2-2-17>에서와 같이 광주교도소, 청송제2교도소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구교도소,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03년에는 대구교도소 수용자의 면전진정 신청건수가 2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광주교도소, 서울구치소, 대전교도소, 청송교도소, 부산교도소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시설 중에는 여전히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면전진정 신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호시설 수용자의 면전진정 신청건수는 12건이고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들로부터의 신청이 7건, 군구금시설의 신청건수는 1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면전진정 신청에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

<표 2-2-18> 면전진정 신청 철회 사유별 현황

철회 사유	2002	2003
	건수(%)	건수(%)
계	241(100.0)	593(100.0)
진정사유 해소	79(32.8)	218(36.8)
심경의 변화	42(17.4)	89(15.0)
출소로 인한 자동철회	15(6.3)	61(10.3)
진정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	4(1.7)	16(2.7)
서면진정으로 전환	3(1.2)	13(2.2)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2(0.8)	6(1.0)
소송을 위해	2(0.8)	13(2.2)
조사를 원치 않음	1(0.4)	1(0.2)
기진정사건과 동일	-	37(6.2)
출소 후 진정 예정	1(0.4)	-
미 상	92(38.2)	139(23.4)

면전진정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경우 신청자가 작성한 철회서를 근거로 철회 사유를 분석해 보면 ‘진정을 하고자 했던 사유가 해소되었기 때문’이 218건으로 36.8%,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가 89건으로 15.0%를 차지했다. 또한 면전진정을 신청한 후 위원회 직원이 해당 시설을 방문하기 전 출소하게 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철회된 경우가 61건으로 10.3%



를 차지하였으며 ‘이미 진정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진정하고자 했으나 이를 철회한 경우가 37건으로 6.2%를 차지했다. 그 외에 ‘진정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 ‘서면진정이나 소송을 하기 위해’,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되어’ 철회하는 경우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유는 2002년도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2) 상담종결 사례분류

면전진정 신청인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을 방문하여 신청인을 면담한 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지 않고 상담종결로 처리한 경우는 총 878건으로 그 사유를 살펴보면 <표 2-2-19>와 같다.

<표 2-2-19> 면전진정 신청 사례 중 상담종결 사유별 현황

상담종결 사유		연도	
		2002 건수(%)	2003 건수(%)
총 계		307(100.0)	878(100.0)
기진정과 관련	기진정 내용과 동일한 진정, 관련내용 추가 등	75(24.5)	148(16.9)
진정사건 조사 촉구	신속한 조사, 피진정인 처벌 등 요구	49(16.0)	87(9.9)
위원회가 시설에 건의, 시정해 주기를 희망	의료조치, 이송, 전방, 요구 등	45(14.7)	93(10.6)
각하 사유에 해당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1.0)	65(7.4)
	조사가능기간 도과	1(0.3)	1(0.1)
	재판, 수사중이거나 종결	19(6.1)	26(3.0)
	법원의 판결 혹은 현재결정에 반함	6(2.0)	6(0.7)
법령, 제도개선 건의	제도개선 요구 등	15(4.9)	26(3.0)
추후 진정을 원함	상황변화를 기다린 후 진정 여부 결정	9(2.9)	49(5.6)
위원회의 도움을 원함	변호사 섭외, 가족 연락, 자매결연 알선 등	8(2.6)	23(2.6)
진정원인 해소	입병, 독거신청, 외부진료, 집필신청, 소장 면담 신청 등 요구사항 해소	8(2.6)	102(11.6)
상담만을 원함	하소연, 불안감 해소, 외부인 접근을 원함	7(2.3)	82(9.3)
면전진정 중복 신청	위원회 직원이 방문하기 전에 중복 신청	-	67(7.6)
법률상담	소송 절차 문의 등	4(1.3)	18(2.1)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표적 검방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1(0.3)	11(1.2)
기타	형기만료, 진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동료 수용자의 보복행위 우려 등	57(18.5)	74(8.4)





이미 진정한 사안과 동일하거나 유관한 내용을 다시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로 상담 종결로 처리하되 신청인이 호소하는 내용을 해당 사건에 추가하여 처리토록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16.9%), 진정하고자 했던 문제가 면전진정 신청 후 위원회 직원을 면담하기 이전에 이미 해결되었거나, 위원회 직원이 신청인을 면담한 후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토록 한 경우(11.6%)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또한 신청인이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그 요건이 위원회법이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설명한 후 종결처리하거나(11.2%), 위원회가 시설측에 건의하여 향후 시정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10.6%) 등이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위원회의 사무처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누적된 진정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미 서면 등을 통해 진정을 한 수용자가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진정하기 위해 혹은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면전진정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표 2-2-19>에서 보듯이 2002년에는 총 상담종결건수 중 이러한 경우가 각각 24.5%, 16.0%를 차지한 반면 2003년에는 각각 16.9%, 9.9%로 감소한 점이다. 또한 면전진정 신청을 한 후 원래 진정하고자 했던 원인이 해소된 경우가 2.6%에서 11.6%로 증가하였으며, 진정접수보다는 위원회 직원과 상담만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2.3%에서 9.3%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위원회의 업무가 정착되면서 점차 미처리 진정사건의 적체가 해소되고, 면전진정 신청 후 더욱 신속한 방문이 이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시설 수용자들이 위원회의 직원과 면담 및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장 중심의 인권상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4. 인권상담의 전문성 제고

위원회는 인권 상담분야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일차적으로 전문상담원뿐 아니라 상담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면전진정과 관련한 교육은 위원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위원회는 인권상담 업무에 대한 이해와 인권 감수성의 확장을 위한 기본교육과 주제별 토론을 위한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기본교육은 2회(총 40시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상담자의 역할, 인권 관련 법령, 진정사건 유형분석, 인권문제에 대한 분야별 접근, 차별이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심화교육은 정신보건시설 수용자의 인권보장 등 특정 문제에 대한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총 4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또한 상담담당직원과 상담원이 모두 참석하는 사례연구 모임을 총 25차례 실시하는 등 상담 및 진정접수 사례를 토론하고, 분석함으로써 인권상담의 질적 향상을 꾀하였다.

한편, 면전진정 접수업무와 관련하여 구금·보호시설의 특성을 파악하고 업무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응방식 등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두 차례에 걸쳐 ‘면전진정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2) 가이드북 발간

위원회는 축적된 진정사건 및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인권 상담의 방향성과 지침을 제시하는 <인권상담 가이드북>을 발간, 활용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특수한 기능인 면전진정 업무를 표준화, 체계화하기 위해 <면전진정 가이드북>을 제작, 발간하였다. 이러한 가이드북의 발간은 상담업무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와 인권문제에 대한 성찰적 접근방식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인권 상담 서비스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이끌어 내었다.





제3절 평가

2003년에는 상담, 진정, 안내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위원회가 실시한 직권 조사, 진정사건 처리를 통한 권리구제, 인권 관련 정책·법령 등에 대한 권고가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과급력을 이끌어 낸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면전진정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구급시설 수용자의 신청건수가 급증하였으며 그 동안 인권의 취약지구에 있던 ‘갇힌 자’의 권리회복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위원회는 쇄도하는 면전진정 신청에 따라 가급적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출장상담 및 진정접수를 하기 위해 면전진정제도 운영방안을 개선함으로써 신청접수에서 출장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현장 중심의 인권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하였다.

또한 인권상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상담사례를 교류, 분석함으로써 인권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고 상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었다. 이와 같은 전문화 과정을 통해 <인권상담 가이드북>과 <면전진정 가이드북>을 발간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가이드북은 위원회의 상담 및 진정접수에 필요한 정보와 인권에 대한 성찰적 과제뿐 아니라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상담경로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화상상담 시스템, 실시간 문자상담 등 인터넷 상담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운영방식 및 홍보의 미흡으로 인해 이용 빈도가 낮았으며 보호시설 수용자의 면전진정 신청건수가 적었던 점은 향후 보완, 개선해야 할 점이다. 따라서 인터넷상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보호시설의 진정함 설치현황 모니터링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전문상담원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상담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상담원을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이들은 인권, 상담, 법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활동



가라는 지위로 인해 진정 여부를 결정하거나 상담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책임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를 원칙적으로 정규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를 위해 직제개편을 통한 상담담당직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제1절 개 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하며, 동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함)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 등은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의 진정대상이 되는 인권침해의 주체는 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으로 규정된 기관, 지방자치법에 의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도소·구치소 등 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 등이 된다.

위원회법 제2조제2호에 의거하여 구금·보호시설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과 군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포함), 외국인보호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인보호시설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갱생보호시설 등이 해당된다.

진정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각’, 그리고 위원회법 제33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 ‘수사의뢰’ ‘합의권고’ ‘조정’ ‘구제조치’ ‘고발 및 징계권고’ 및 ‘법률구조요청’ 등으로 구분된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개관

(1) 기본방향 및 역점사업

위원회는 헌법과 법률 등에 의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도소·구치소·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의 적극적 구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구금시설 등의 열악한 수용환경 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등의 조사·구제 및 직권조사 등을 통한 능동적인 조사 및 권리구제 기능 활성화를 2003년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 권리인 자유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및 권리구제에 대한 의지표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을 통하여 위원회의 조사 업무와 정책업무, 인권교육, 홍보 등 업무간의 유기적 연계를 꾀함으로써 위원회의 조사 및 권리구제의 기능과 인권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자 한 것이다.

(2) 인권침해 사건처리 실적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2001년 11월 26일 위원회 출범 이후 2003년 12월 31일까지 <표 2-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5,874건이 접수되어 이 중 4,502건을 처리하여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총 처리율은 접수건수 대비 76.6%이다. 2003년의 처리건수는 3,137건으로 2002년 1,365건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2-3-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현황

구 분	접수건수 (이월건수)	사건종결	조사진행
누계	5,874	4,502	1,372
2002년	2,833	1,365	
2003년	3,041 (1,468)	3,137	1,372

※2002년 통계는 2001.11.26~12.31. 접수(처리)건수도 포함된 수치임

2003년 말 현재 위원회가 처리한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유형을 살펴보면 <표 2-3-2>에
서와 같이 고발·수사의뢰가 12건으로 0.3%, 징계권고는 19건으로 0.4%, 권고·합의권고
가 65건으로 1.4%, 합의종결이 23건으로 0.5%, 기각이 853건으로 18.9%, 각하가 3,384건으
로 75.1%, 이송이 142건으로 3.1%를 차지하였다.

<표 2-3-2>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유형별 현황

구 분	접 수 (이월)	처리 유형										조사진행
		소계	고발, 수사의뢰	권 고			합의 종결	기각	각하	이송	긴급 구제	
				징계 권고	권고	합의 권고						
사건수 (비율 %)	5,874	4,502 (100)	12 (0.3)	19 (0.4)	60 (1.3)	5 (0.1)	23 (0.5)	853 (18.9)	3,384 (75.1)	142 (3.1)	4<5> (0.1)	1,372
2002년	2,833	1,365	3	16	5	3	-	136	1,174	26	2<3>	
2003년	3,041 (1,468)	3,137	9	3	55	2	23	717	2,210	116	2	1,372

※ 2002년 통계는 2001.11.26~12.31. 접수(처리) 건수도 포함된 수치임

※ < >는 동일 진정사건에서 긴급구제와 권고조치가 이루어져 권고 1건으로 계산

또한 위원회가 처리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대상기관별 조사처리 비율을 살펴보면
<표 2-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처리 비중이 높은 기관은 검찰(83.3%), 경찰(78.8%),
기타 국가기관(78.0%), 구급시설(74.8%), 보호시설(69.2%), 군대 관련(67.2%) 순이며 고
발·수사의뢰, 권고, 합의권고 등 인용 사건수는 경찰, 구급시설, 기타 국가기관 순이다.





<표 2-3-3> 대상기관별 진정사건 처리현황

구 분	계	검찰	경찰	구급시설	군대관련	보호시설	기타 기관
진정접수건수(A)	5,874	474	1,541	2,799	183	91	786
사건종결건수(B)	4,502	395	1,214	2,094	123	63	613
처리율(B/A, %)	76.6	83.3	78.8	74.8	67.2	69.2	78.0
인용사건수(C)*	123	5	58	42	2	3	13
인용률(%)	12.6	8.1	18.2	8.8	22.2	21.4	13.5

* 인용사건 : 고발, 수사의뢰, 권고, 합의권고, 긴급구제조치, 합의종결 등

* 인용률=인용사건수÷(기각 이상 상정사건+합의종결사건)

* 기타 기관은 국정원, 사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3) 인권침해 진정사건 주요조치 현황

위원회가 처리한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고발, 수사개시 의뢰, 구제조치 등 권고, 합의권고 등 인용사건의 주요조치 현황은 <표 2-3-4>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표 2-3-4> 대상기관별 주요조치 내역

□ 검찰 관련 인권침해 사건(총 3건)

조치 구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긴급구제조치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 침해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권고	2003. 2.15	수 용
고 발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 처사 등 인권침해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의뢰,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체포제도 개선권고, 법률구조요청	2003. 2.24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재)항고)
합의종결	위법수사에 의한 인권 침해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과후 합의	2003. 9. 1	합의 즉시 이행



□ 경찰 관련 인권침해 사건(36건)

조치 구분	사건명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수사 의뢰	경찰의 가혹행위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정에서 일어난 가혹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요외	2003. 3.21	입건유예
수사 의뢰	전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의 가혹행위 등	경찰관 사망사건 조사중 가혹행위 등에 대한 검찰 수사요외	2003. 9.15	수사중
수사 의뢰	경찰조사과정에서의 고문 등 가혹행위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가혹행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외	2003.10.27	수사중
수사 의뢰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 침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는 인권침해행위로 피진정인 인권교육 수강권고	2003.12.29	검토중
징계 권고	경찰의 가혹행위 등	미란다 원칙 미고지 및 폭행에 대하여 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징계 권고	2003. 6.16	수용 거부
징계 권고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범죄경력 누설 등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징계 권고	2003. 7. 7	수 용
권고	유치장내의 신체의 자유침해	유치장내에서 안경을 착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여 시행, 성동경찰서 유치장 관련 담당자들에게 인권교육 실시 권고	2003. 2.10	수 용
권고	경주경찰서의 유치인 인격권 침해	경주경찰서 유치장 관련 담당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 실시 권고	2003. 3. 3	수 용
권고	경찰의 가혹행위	관행적인 밤샘조사와 폭언 등 가혹행위 금지를 위하여 직원 인권교육 실시 권고	2003. 3.21	수 용
권고	1인 시위에 따른 표현의 자유 등 침해	1인 시위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인권교육 수강 권고	2003. 3.24	수 용
권고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부당 수사 등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 수강 권고	2003. 3.31	수 용
권고	과도한 신체검사에 의한 인권 침해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 수강 권고	2003. 4. 7	수 용
권고	집회의 자유침해	외교공관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집회 개최 허용토록 권고	2003. 7. 7	수 용
권고	신체의 자유침해	피진정인 훈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취할 것을 권고	2003. 7.21	수 용
권고	폭언 등 인권침해	진정인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한 피진정인에게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수강 권고	2003.11.10	교육실시 준비중
권고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긴급체포한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인권교육 수강 권고	2003.11.17	검토중
권고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긴급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행위로 인권교육 권고	2003.12.29	검토중
합의 종결	위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과잉총기 사용에 대하여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	2003. 4. 7	합의 즉시 이행
합의 종결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	명예훼손 시위에 대한 경찰의 신변조치 미흡 사과후 합의	2003. 7.14	합의 즉시 이행





조치 구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합의 종결	무주경찰서 수사권 남용	잘못된 지명수배로 인한 구금에 대하여 사과후 합의	2003. 7.21	합의 즉시 이행
합의 종결	부산금정경찰서 직무유기	호송중 상해에 대하여 사과 및 치료비 변상후 합의	2003. 7.28	합의 즉시 이행
합의 종결	편파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변사현장 안전시설관리 실태 등 추가조사키로 합의	2003. 7.28	합의 즉시 이행
합의 종결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사과후 합의	2003. 7.28	합의 즉시 이행
합의 종결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음주측정 잘못에 대한 사과후 합의	2003. 9. 1	합의 즉시 이행
합의 종결	인격권침해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과후 합의	2003. 9. 8	합의 즉시 이행
합의 종결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강제연행 및 사생활 침해부분에 대한 사과후 합의	2003. 9. 8	합의 즉시 이행
합의 종결	인격권 침해	시위대 오인 체포 및 화장실 사용 못하게 한 것에 대한 사과후 합의	2003. 9.24	합의 즉시 이행
합의 종결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하여 사과후 합의	2003.10. 6	합의 즉시 이행
합의 종결	인격권 침해	차량통제 요청에 폭언, 반말한 것에 대하여 사과후 합의	2003.10.27	합의 즉시 이행
합의 종결	시위 취재기자 폭행	치료비 배상 및 사과후 합의	2003.11. 3	합의 즉시 이행
합의 종결	인격권 침해	사과후 합의	2003.11.28	합의 즉시 이행
합의 종결	인격권 침해	인격권 침해에 대해 사과후 합의	2003.11.28	합의 즉시 이행
합의 종결	직무유기	신고내용 오해해명, 현장대처문제 사과후 합의	2003.11.28	합의 즉시 이행
합의 종결	사생활 자유 침해	부주의로 전과사실 유출, 사과후 합의	2003.11.28	합의 즉시 이행
합의 종결	가혹행위	체포과정에서 욕설 및 구타행위 사과후 합의	2003.12.29	합의 즉시 이행
합의 종결	가혹행위	조사과정에서 자백강요 및 구타 사과후 합의	2003.12.29	합의 즉시 이행



□ 구금시설 관련 인권침해 사건(21건)

조치 구분	사건명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징계 권고	생명권 침해	연속징벌 집행시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규정개정, 피진정인들에 대한 징계권고, 손해배상을 위한 법률구조요청	2003. 2.10	수용(징계위원회 회부, 규정 개정 진행중)
권고	시설처우와 관련한 기본권 침해(2건 병합)	수용자에게 징벌을 이유로 합동접견을 1년 동안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 또는 완화 개정 권고	2003. 2.10	수용(규정개정 진행중)
권고	시설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4건 병합)	구금시설의 징벌실내 화장실 칸막이를 설치토록 권고	2003. 2.10	수용
권고	편파조사 등	인권교육 실시 및 작업지정 권고	2003. 3. 3	수용
권고	의료행위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수용자들을 비하하고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교육 수강 권고	2003. 3. 4	수용
권고	부당징벌	부정기 재심사를 통하여 진정인의 권리를 회복토록 권고	2003. 3.10	수용 거부
권고	교도소내 가혹행위 등	외국인 수용자 전담교도소로 이송 권고	2003. 3.21	수용
권고	신체의 자유 침해 등	진정인의 고소장 부분을 가족에게 발송조치토록 권고	2003. 4. 7	수용
권고	미결수용자 재분류	조직폭력사범수용자관리지침에 따른 미결수용자 재분류 시기 개정 권고	2003. 4. 7	수용(규정개정 진행중)
권고	수용자 서신교부 지체	인천구치소 외부교통권 침해 관련 피진정인에 대하여 위원회 인권교육 수강 권고	2003. 4.21	수용
권고	검사조서시 계구사용(施用) 시정요청	검사가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계구의 해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권고	2003. 5. 7	일부수용
권고	부당한 서신불허 등(3건 병합)	발송 및 교부 불허된 서신의 폐기 등에 따라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행 서신수발신 제도 개정토록 법무부장관에게 권고	2003. 5. 7	수용(법개정시 반영)
권고	교도관의 구타	피진정인에 대하여 인권위 인권교육 수강 권고	2003. 5. 7	수용
권고	서신의 부당한 지연처리	재소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서신 관련 절차 및 방법 보완정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토록 의정부교도소장에게 권고	2003. 5.21	수용
권고	구금시설의 징벌권 남용(3건 병합)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징벌 관련 규정 개정, 징벌양정 기준 완화, 불복절차 마련 등 권고	2003. 6.16	수용(규정개정 진행중)
권고	부당 계구사용(5건 병합)	계구사용 요건 명확히 규정, 사슬과 가족수감 폐지 권고	2003. 7.14	수용(규정개정 진행중)
권고	수용자 집필권 침해 등(2건 병합)	행형법 제33조의3 규정을 집필에 관한 허가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 집필 관련 규정 개정 권고(8.25), 담당 교도관들에게 교육실시 등 재발방지 대책수립 권고(10.27)	2003.10.27 (2003. 8.25)	수용 (개정추진중)
권고	수용자 알권리 침해(5건 병합)	구금시설 수용자의 신문구독에 대한 제한규정 개정 권고	2003. 9.15	수용
권고	부당징벌에 의한 인권침해	영치금 사용시 본인확인 등 영치금품관리규정 준수 관리 감독 철저	2003.11.28	수용
권고	시설 및 처우 관련 인권침해	피진정인에게 영치품 휴대허가기준 완화권고	2003.11.28	검토중
합의 종결	수용자 의료권 침해	진정인의 의무과 직원의 태도 변화 촉구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사과를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당사자간 합의	2003. 2.24	합의 즉시 이행



□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사건(2건)

조치구분	사건명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고발	만덕복음병원에 대한 진정 및 직권조사 (진정 1건 병합)	무연고 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에 대한 관련자 고발 및 감독관계기관에 대한 시정 권고	2003. 1.13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및 참고인 중지) ※ 시정권고 수용
합의종결	신체의 자유 침해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체벌, 사과후 합의	2003.12.29	합의 즉시 이행

□ 기타 국가기관 관련 인권침해 사건(11건)

조치구분	사건명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긴급구제조치	강제퇴거 집행정지 및 보호조치 해제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정지와 보호조치의 해제 권고	2003. 8.21	수용
합의권고	인천국제공항 개장검색	X-ray 검색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고지후 세관 직원과 합동으로 개장검색 실시토록 합의 권고	2003. 1. 9	수용
권고	중국동포 강제퇴거	피해자에 대하여 입국금지를 해제토록 권고	2003. 1.13	수용
권고	학교내 장애인 이동시설 미설치	학교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조속히 설치, 편의시설 완비 전까지는 장애인에게 전보, 전학 등에 우선권 부여토록 제도개선 권고	2003. 5.21	수용(엘리베이터 설치 장기적 추진)
권고	역도선수 이적동의서 발급거부	진정인이 원하는 팀에서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적동의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공주시장에게 권고	2003. 6.16	수용
권고	초상권 침해 등	피진정인들에게 인권위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2003. 7.14	수용
권고	본인 동의 없는 지방공무원 전출	본인 동의 없는 지방공무원 전출입사교류 재발방지대책 권고	2003. 9. 8	수용 (개정 추진중)
권고	중국동포 입국금지에 대한 입국해제 권고	과거 불법체류를 이유로 5년간 입국금지한 것에 대하여 입국금지해제 권고	2003. 9. 8	수용
권고	사생활의 자유 침해	가처분집행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관련규정인 민사시행규칙 보완 권고	2003. 9.22	수용
권고	성희롱	대학내 성희롱예방 교육계획 수립·실시, 동일유사 사례 재발방지 조치마련 권고	2003.10.27	검토중
합의종결	행복추구권 침해	전남 장성 부군수 대기발령에 대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임용 발령)	2003. 4.21	합의 즉시 이행



□ 군대 관련 인권침해 사건(2건)

조치 구분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수사 의뢰	군의원사	피진정인에 대하여 수사의뢰, 피해자에 대한 전공사상자 재심의 권고, 장병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 제도개선 방안마련 권고	2003. 4.21	구속 기소
합의 권고	군영창 수감자의 인권침해	「공군영창관리규정」 중 신입감자 독거수용시 각종 권리제한규정 개정, 인권교육 실시 권고	2003. 1. 9	수용

※ 수용 여부는 2003.12월말 현재 상황임

2. 검찰·경찰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1)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한 수사개시 의뢰

진정인은 강도강간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 조사실에서 피진정인들로부터 밤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할 때마다 책상 밑으로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뒤통수를 손바닥, 주먹, 책 등으로 25~30회 구타당하여 후두부에 피하출혈이 생겼으며 그 후유증으로 구토, 현기증, 전신마비 증세를 보였고, 진정인은 강도강간혐의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간혐의는 인정하지만 금품을 강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도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조사 당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강요당하여 동 혐의를 허위자백한 것이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경찰관들이 진정인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동 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당해 경찰관들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개시를 의뢰하였다.





(2) 국내 주재 외국공관 인근 100m 격리장소에서의 집회불허에 대한 허용 권고

진정인이 상임대표로 있는 단체인 ‘○○’은 피진정인에게 ‘광화문시민열린마당 내의 장소 중 ○○대사관 및 ○○대사관, ○○대사관 영사부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를 근거로 집회금지통고 처분을 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진정을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재외공관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장소를 특정하여 집회개최장소로 신고하는 집회에 대해서 집시법 제11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한 것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집회개최를 금지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3) 전과기록 사적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행위에 대한 징계 권고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녀에게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누설함으로써 진정인의 사생활 비밀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진정이 위원회에 제기되었다.

조사 결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사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극적으로는 사생활의 내용·명예·신용 등을 침해받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경찰이 진정인의 범죄경력 자료를 부당하게 취득하여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 제17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당해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였다.



3.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1) 징벌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합동접견 제한에 대한 관련 지침 개정 권고

진정인은 “규율 위반행위로 징벌을 받은 수용자는 징벌집행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합동접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수용자합동접견시행지침」(이하 ‘지침’) 제6조제3항의 규정이 수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및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진정을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규율 위반행위로 징벌을 받은 수용자는 징벌집행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합동접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동 지침 제6조제3항은 징벌을 받은 수용자의 합동접견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 제10조에 보장한 행복추구권 및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규율 위반행위로 징벌을 받은 수용자는 징벌집행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합동접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규정한 지침 제6조제3항을 삭제하거나 그 제한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2) 연속징벌 및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수용자 자살사건 관련 법률구조 요청

진정인은 피해자가 ○○교도소로 이감된 이후 계속되는 징벌집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기까지 단 한 차례의 접견도 허용되지 않은 등의 가혹한 수감생활이 정신병력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켜 자살의 동기를 유발하였고, 또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자살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교도소 수용자에 대하여 폭언과 소란을 이유로 집행된 10여 개월의 연속적인 징벌, 과도한 계구사용, 징벌집행 과정 및 전후에 의무관의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은 정신질환이 있는 피해자에게 견디기 힘든 가혹행위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로 인해 문제수로 지정되었음에도 교도소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자살을 기도,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원회법 제30조제1항의 구금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교도소 직원들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 직원을 징계할 것과 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연속징벌 집행시 반드시 정신과적 진단을 선행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위원회법 제47조에 의거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3) 형 확정 전 수용자를 조직폭력사범으로 분류한 데 대한 관련 지침 개정 권고

진정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범죄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된 후,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범죄단체구성’ 혐의가 제외되어 ‘사기 등’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서 강력범으로 분류가 된 관계로 강력범과 같은 방에 수용되고, 수갑을 차고 항소심 재판정에 들어가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재분류해 주기 바란다는 진정을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공소제기 이후에 조직폭력사범으로 지정·관리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분류를 위해 일률적으로 확정 판결시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은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형 확정 전에도 해제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해제가 가능하도록 법무부 관련 예규인 「조직폭력사범수용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4) 발송불허 서신 폐기에 대해 서신수발 관련 제도 개선 권고

진정인이 제출한 서신이 ‘교화상 부적절하다’며 발송을 불허하고 폐기처분한다고 통보한 것은 너무 자의적이며 차별적인 것이고, 설사 서신이 불허된다고 하더라도 불허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 이를 폐기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이 위원회에 제기되었다.

조사 결과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상위 법률인 「행형법」과 모순 되는 「행형법시행령」 제62조제3항을 개정하여 발송이 불허된 서신도 일정기간 보관 후 석방시 본인에게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발송이 허가되지 않은 사유에 관하여 자의적인 해석이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수용자 서신수발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5) 검사 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에 대한 계호근무준칙 개정 권고

피해자가 2002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구치소 계호 교도관이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처분은 인권침해이니, 해당 처분의 근거규정인 「계호근무준칙」(이하 ‘준칙’) 제298조(검사조사실 근무자 유의사항) 제1호 “계구를 사용한 채 조사실 안에서 근접계호를 하여야 한다” 및 제2호 “검사로부터 조사상 필요에 따라 계호근무자의 퇴실 또는 계구의 해제를 요청받은 때는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단,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이 위원회에 제기되었다.

조사 결과, 검사조사실에서 구속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 예외없이 계구사용을 강제하고, 계구사용에 대한 수사검사의 재량권마저 박탈하고 있는 등 준칙 제29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수사와 계호근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준칙 제298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검사조사실에서는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계구를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할 수 있고, 검사가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계구의 해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권고하였다.

(6) 구금시설에서의 징벌권 남용에 대한 징벌 관련 제도 개선 권고

수용자가 아침 점검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용변 및 세면을 했다 하여 금치에 처한 것은 과도한 징벌집행으로 이는 징벌권 남용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라는 진정이 위원회에 제기되었다.

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여 징벌의 대상행위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수용자의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명백히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금치의 집행내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접견, 서신수발, 집필, 운동 등의 기본권을 허용하며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양정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고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징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수용자 징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4. 기타 국가기관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1) 공항 상주직원에 대한 개장검색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합의 권고

○○공항여객터미널 상주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개장검색은 인격권 침해라는 진정이 위원회에 제기되었다.

조사 결과 ○○공항여객터미널에 상주하는 직원에 대해서 매일 근무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소지품 등을 특수경비원이 개장검색하는 것은 권한 없는 자의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심증적·자의적인 검색방법으로 헌법 제10조(인격권) 및 제11조(평등권)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회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의 합의를 권고하였다.

(2) 불법체류 전력을 이유로 한 중국동포 배우자 입국금지에 대한 해제 권고

진정인과 피해자는 중국과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해 과거 불법체류를 이유로 5년간 입국금지를 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이 위원회에 제기되었다.

조사 결과 진정인과 피해자가 혼인을 위해 자진신고 후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정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국가로 출국한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5년간의 입국규제 처분은 법무부의 「입국규제 업무처리지침」뿐만 아니라 헌법 및 국제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보장의무에 반하는 처분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진정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를 권고하였다.





(3) 학교내 장애인이동시설 미설치로 인한 이동권 침해에 대한 시설개선 권고 등

진정인은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 교통사고로 인해 왼쪽 다리가 약간 짧은 상태인 바 지난 26년간 교사생활을 하면서 장애인 이동시설이 없는 계단을 수도 없이 오르내려 퇴행성관절염을 앓게 되었으니 이에 대한 보상과 함께 학교에 엘리베이터 등 이동시설을 설치해 주기 바란다는 진정을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학교내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승강기 등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관련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교사 및 학생의 신규임용·전보 및 입학·전학시에 ‘장애인 등’에게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4) 운동선수 이적동의서 발급거부에 대한 권고

진정인은 1년간 ○○시청 소속으로 활동한 역도선수로 ○○시청에서 퇴직한 후 군복무를 시작하면서 상무부대 선수로 활동하였다. 2003년 전역한 후 ○○역도팀에 입단하기 위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이적에 필요한 동의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선수생활을 하지 못할 입장에 처해 있다는 진정을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체육계의 묵시적인 관행 및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운동선수의 자기운명결정권 내지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적동의서를 발급해 주도록 권고하였다.



(5) 외국인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비디오 촬영에 대한 재발방지 및 인권교육 수강 권고

외국인보호시설 수용자가 보호시설 수용중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디오 촬영을 당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수용자들에 대한 비디오 촬영은 보호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호자들을 비디오 촬영한 행위는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 외국인보호시설의 장에 대하여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피진정인들 대하여는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6) 본인 동의 없는 지방공무원 전출 관련 명확한 기준시달 등 적정조치 권고

진정인은 ○○광역시 ○구 ○○동장으로 근무하던 지방5급 공무원으로 피진정인에 의해 ○○광역시 ○구로 전출된 바, 이는 진정인의 동의 없는 위법한 행위로 보복인사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진정을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지방공무원의 전출입이나 인사교류가 공무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관장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제30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를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하거나 행정자치부의 명확한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시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7) 법원 가처분 결정문 게시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관련규칙 개정 권고

진정인들은 진정인들의 남편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무연고지로 발령을 받게 되자 피진정인에게 항의와 호소를 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부산지방법원에 출입금지및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 결정이 나오자 이 사실을 공시한다면 서 가로 90cm, 세로 170cm의 입간판에 진정인 등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대중이 지나다니는 정비창의 구 정문과 후문 앞에 3년 이상을 부착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적인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진정을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가처분 결정의 공시방법이 진정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하더라도 이는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가처분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당해 진정을 기각하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규칙」의 개정 또는 새로운 「대법원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민사집행규칙」의 개정 또는 새로운 「대법원규칙」의 제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하였다.

(8) 대학교수의 제자 성희롱 사건 관련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 권고

진정인은 피해자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의 학생회장으로, 피진정인이 자신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귀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들어 입을 맞추고 혀를 내밀어 입술을 핥는’ 등의 성추행을 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진정을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피진정인의 성희롱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과 제3의 피해자가 실재하는 데 반하여 피진정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신뢰성이 떨어져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등에 규정한 성희롱 행위로 헌법 제10조 인격권 및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진정사건 조사중이던 2003년 10월 피진정인이 ‘해임’ 처분되어 진정인 및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충족된 점을 고려하여 ○○대학교총장에게 대학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고 이 사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희롱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9) 군대내 가혹행위에 의한 이등병 자살사건 관련 수사개시 의뢰

진정인은 진정인의 아들이 신병 100일 위로휴가를 나온 당일 자살하자 자살할 이유가 없으며 군 복무중에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우울증 등 복무 부적응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조치의 미흡과 병력관리를 소홀히 한 부대에 책임이 있으며 군 수사기관에서 사망동기를 축소·은폐하고 있으므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의 색출과 아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해 줄 것과 관련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을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사단에 근무중 신병 위로휴가를 나왔다가 책을 사러 간다며 외출한 뒤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경우로 국방부장관에게 피진정인 윤모 소령의 「군형법」 제62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 개시할 것을 의뢰하고, 피진정인 김모 중령, 정모 대위 및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보병 제○○사단 제○○연대 제○대대 장병에 대한 인권교육 및 육군본부 전공사상자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에 대한 자해자살 판정사항을 재심의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복무 부적응 장병에 대한 실질적인 복무지원대책 및 군 사망 사고 발생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5.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1) 지체1급 중증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수사 긴급구제

지체1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불구속상태로 수사할 수 있었음에도 구속수사를 하고 있는 바, 피해자는 배뇨 및 배변을 혼자서 쉽게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는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불구속수사를 원한다는 진정이 위원회에 제기되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지체1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불구속상태로 수사할 수 있었음에도 구속수사를 하고 있는 바, 피해자는 배뇨 및 배변을 혼자서 쉽게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는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구치소에 계속 구금할 경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유지조차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해서도 심각하거나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주는 등 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소정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회법 제48조에 의해 당해 장애인을 불구속 수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였다.

(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정지 및 보호조치 해제 긴급구제

피진정인은 ○○동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외국인 성명불상 2명에 의한 택시강도 사건(택시기사 진정 외 임모씨로부터 금 2만원 강취)을 수사함에 있어, 피해자들은 그 범인이 아닌데도 이들이 만취상태에서 한 진술과 위 택시기사의 진술만으로 피해자들을 준강도죄로 입건하였고, ‘피해자들을 불구속 수사하고 불법체류자로 강제출국 조치한다’는 취지의 검사지휘를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하는 과정에



서 피해자들이 불법체류자가 아님이 확인되자 위 검사지휘서의 ‘불법체류자’를 지우고 ‘준강도 혐의자’라고 임의로 써 넣어 위 출입국관리소장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강제출국 대기상태에 놓이게 하였다는 진정이 위원회에 제기되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검사가 ‘불법체류자’로 강제퇴거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이 검사지휘서의 ‘불법체류자’를 ‘범법자’로 임의 변조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이를 근거로 강제퇴거결정을 한 것은 그 절차에서 합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인들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알리바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범법자’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퇴거조치는 적절하지 않으며 외국인들에 대한 강제퇴거 결정의 절차적 하자가 바로잡아지고 외국인들이 범인임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는 강제퇴거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고 보호조치 처분을 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진정기관에 강제퇴거 집행정지와 보호조치 해제 등의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하였다.

제3절 평 가

2003년의 인권침해행위와 관련한 진정사건은 주로 경찰 등 수사기관과 구금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위원회는 경찰관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와 가혹행위에 대한 징계권고, 1인 시위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그리고 구금시설에서 연속징벌에 의한 수용자 사망에 대한 법률구조 요청, 군의문사에 대한 수사의뢰 등의 적극적인 조사 및 구제활동을 전개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의 대상 및 권한의 한계 그리고 부족한 조사관 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기관 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소홀함으로 발생하는 잘못된 범법행위와 관행 등에 대하여 강력한 징계와 특별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였고, 긴급구제 조치 및 수사의뢰 등을 통하여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반성하도록 하고 쇄신과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위원회는 2001년 11월 26일 위원회 출범 이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인권침해 관련 진정접수건수는 총 5,874건으로 이중 4,502건을 종결 처리하였다. 이로써 총처리율은 76.6%에 달하는 바, 2002년 말 총처리율 48.2%에 비하여 크게 향상된 수치이다. 2003년 당해년도의 처리건수는 총 3,137건으로 전년도 처리건수 1,365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원회 출범 초기에 비하여 진정사건 처리실적이 크게 향상되었음은 물론 진정사건 처리체계가 정착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그 동안 직원의 충원, 조사관 역량강화 및 조사업무 내부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진정사건의 처리방법에서도 이송·수사의뢰·합의권고·조정·구제조치·고발 및 징계권고·법률구조요청 외에도 조사과정에서 합의종결을 통한 진정사건의 해결도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2003년의 진정사건 중 각하·기각사건이 94.0%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외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유형과 판단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대한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진정사건에 비하여 조사방법 및 권한의 한계와 조사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조사관들이 사건의 조사와 증거 수집과정에서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제 4 장

제1절 개 요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헌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 제19조제3호에 따르면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권리구제를 위원회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0조제2항에서는 차별행위 조사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 등 18개 사유를 대상으로 고용영역,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 공급이나 이용영역,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 이용영역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2003년 한 해 동안 차별행위와 관련한 위원회 진정현황을 살펴보면 총 접수건수는 2002년에 비해 2.6배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 차별행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제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진정사유에서도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중심으로 점차 다양해



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또한 사건처리에 있어 총 30건의 권고 중에서 현행 법률 및 제도와 관련한 사항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급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개 관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 앞에서 언급한 18개의 사유를 이유로 하여 ①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등) ②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③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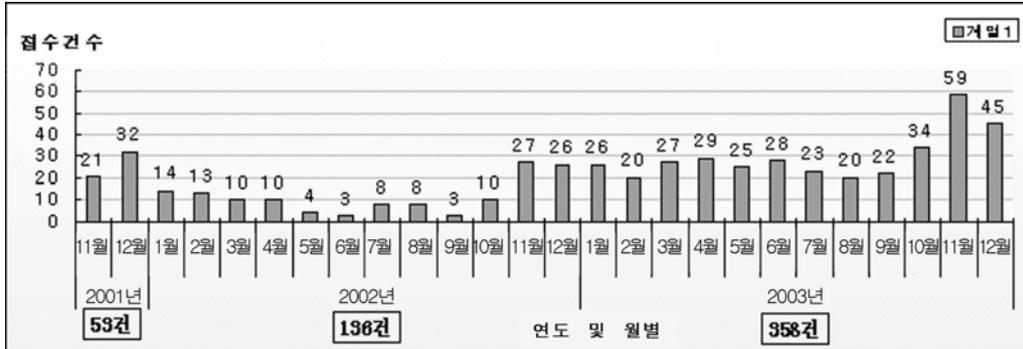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현황은 아래 <표2-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547건으로 2001년 53건(11월25일~12월31일분), 2002년 136건, 2003년 358건으로 2002년 월평균 접수가 11.3건에서 2003년에는 29.8건으로 전년 대비 2.6배로 급증하였다. 이는 그 동안 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한 포스터 및 전단배포, 주요 차별행위 권고사항에 대한 대국민 보도 등 차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차별행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이것이 진정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혹은 경향에 따른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표 2-4-1> 차별행위 진정사건 월별 접수 현황



차별행위와 관련된 진정사건 처리는 2003년 12월 말 현재 총 접수 547건 중 398건이 종결처리(72.8%)되었고, 149건이 조사 또는 검토중에 있다.

종결처리된 398건에 대해 살펴보면 진정의 내용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인정되어 제도개선 또는 인권교육을 권고한 것이 총 38건으로 총 종결사건 대비 9.6%이고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어 합의 종결된 사건이 5건으로 1.3%, 사실이 아니거나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 등 기각사건이 66건으로 16.6%로 나타났다. 위원회가 조사할 수 없어 각하한 사건을 제외한 기각 이상 사건을 기준으로 한 인용률은 39.5%에 이르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이 아니거나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또는 진정 후 취하한 경우 등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이 288건으로 총 종결건수의 72.4%를 차지하였다.



<표 2-4-2>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유형별 현황

구 분	접 수 (이월)	처 리 유 형						조사진행 (이월)
		소계	권고	합의 종결	기각	각하	이송	
사건수 (비율%)	547	398 (100)	38 (9.5)	5 (1.3)	66 (16.6)	288 (72.4)	1 (0.2)	149
2002년	189	102	8	2	18	73	1	87
2003년	358(87)	212(84)	14(16)	2(1)	23 (25)	173(42)	-	146(3)

※ 2002년 통계는 2001.11.26~12. 31. 접수된 사건을 포함한 수치임

※ ()는 2002년까지 접수된 사건 중 2003년에 이월되어 종결된 사건수

※ 권고 : 재발방지 권고, 인권교육 권고, 제도·정책·관행 등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1) 차별행위 사유별 처리 현황

차별사유별로 전체 진정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국가기관에 의한 평등권 침해 165건(종결 113건), 사회적 신분 76건(종결 54건), 장애 46건(종결 37건), 성별 43건(종결 36건), 출신국가 28건(종결23건), 학별(학력) 27건 등의 순으로 진정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차별사건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당한 경우다.

2002년과 비교하여 2003년 차별사유별 진정접수 증가 현황은 평등권 침해가 89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학별 27건, 성별이 25건, 나이 16건, 임신·출산 15건 순으로 증가하였다.



<표 2-4-3>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접수 및 처리 현황

차별사유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전과	성적지향	병력	학벌	평등권침해	기타	
접수계	547	43	11	46	26	76	7	28	1	6	6	15	3	1	1	11	8	6	25	27	165	35
2002년	189	9	6	32	5	40	5	19	0	2	2	0	1	1	1	4	7	4	10	0	38	3
2003년	358	34	5	14	21	36	2	9	1	4	4	15	2	0	0	7	1	2	15	27	127	32
구성비(%)	100	7.9	2.0	8.4	4.8	13.9	1.3	5.1	0.2	1.1	1.1	2.7	0.5	0.2	0.2	2.0	1.5	1.1	4.6	4.9	30.2	6.4
종결	398	36	10	37	21	54	6	23	1	3	6	14	3	1	1	8	8	4	22	0	113	27
미결	149	7	1	9	5	22	1	5	0	3	0	1	0	0	0	3	0	2	3	27	52	8

※ 기타 : 광고게재에 있어 신문사 차별, 부당한 학점처리 등

(2) 차별행위 영역별 처리 현황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영역별 접수·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고용과 관련된 진정이 283건(종결 198건),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분야에서의 진정이 71건(종결 64건), 교육시설 등 이용 분야에서의 진정이 27건(종결 16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영역에서는 채용 72건(13.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해고가 71건(13.0%), 임금 43건(7.9%), 모집 27건(4.9%)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화·용역 등 공급이나 이용영역에서는 재화이용 관련이 59건(10.8%)으로 가장 많은 진정이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용역 관련이 5건(0.9%), 상업시설 관련이 3건(0.5%) 등이며 마지막으로 교육시설 이용영역에서는 교육시설 관련 진정이 21건(3.8%), 직업훈련 관련이 6건(1.1%)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위 3개 영역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차별사건으로 분류된 기타 사건은 166건으로 총 진정사건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표 2-4-4> 차별행위 진정사건 영역별 접수 및 처리 현황

구 분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283건)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71건)					교육시설 등 이용차별(27건)		기타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급	임금의 금품	정년	퇴직	해고	기타	재화	용역	교통 수단	상업 시설	토지	주거 시설	교육 시설		직업훈 련기관	
접수계	547	27	72	1	15	20	43	10	3	7	71	14	59	5	2	3	1	1	21	6	166
2002년	189	6	18	1	1	9	17	6	0	1	10	5	30	3	2	2	0	1	7	3	67
2003년	358	21	54	0	14	11	26	4	3	6	61	9	29	2	0	1	1	0	14	3	99
구성비 (%)	100	4.9	13.2	0.2	2.7	3.7	7.9	1.8	0.5	1.3	13.0	2.6	10.8	0.9	0.4	0.5	0.2	0.2	3.8	1.1	30.3
총결	398	17	37	1	10	18	25	7	2	6	62	13	52	5	2	3	1	1	12	4	120
미결	149	10	35	0	5	2	18	3	1	1	9	1	7	0	0	0	0	0	9	2	46

(3) 차별사유별 주요 사건 처리 현황

2003년에 접수된 진정사건의 주요 조치실적은 <표 2-4-5>와 같이 제도개선 및 시정권고 또는 인권교육을 권고한 사건이 30건, 조사과정에서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 피진정인 사이에 원만히 해결된 합의종결사건이 3건,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진정의 원인이 해결된 사건이 16건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 및 시정 권고나 인권교육 등을 권고한 사건들을 차별사유별로 분류해 보면, 국가기관에 의한 평등권 침해가 10건, 성별은 6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5건, 기간제 교사 등 사회적 신분은 3건, 출신국가와 성적 지향이 각각 2건, 가족상황과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이 각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국가기관에 의한 평등권 침해에 관한 사건의 시정조치 권고율이 높은 것은 여전히 국가기관 등의 의한 제도적·구조적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각종 제도적 측면의 차별적 관행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시정권고 30건 가운데 총 20건(66.7%)이 수용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권고를 받은 기관에서 수용 여부를 검토 및 유보중에 있다.



아울러 조사중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합의하여 원만히 사건을 해결한 사건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사건이 2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한 차별사건이 1건 해결되었다. 합의종결은 당사자간의 의견절충 및 조사관의 중재·합의 노력을 통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예로서 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사중 해결된 총 16건의 사건은 국가기관 등에 의한 평등권 침해사건이 6건, 나이 관련 3건, 혼인 여부 및 성별 관련 각각 2건, 장애 관련 1건, 출신국가 관련 1건, 이밖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승진탈락을 당하는 등의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사건 1건이 해결되었다.

조사과정 중 해결된 사건들은 비록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여 사건 자체는 각하처리되었지만 대부분 조사관의 당사자간의 설득, 피해 구제조치의 유도, 현지출장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법과 규정에 따른 사건해결 절차 및 방식의 안내 등 사건 조사과정에 개입한 담당조사관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는 경우로 결과적으로 진정의 원인이 해소되어 그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2-4-5>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처리유형별 현황

조치구분 차별유형	제도개선 및 인권교육 등 시정권고	합의종결	조사중 해결
소 계 (49건)	30건(병합 11건)	3건	16건
평등권 침해(16)	공인민간자격자 가산점(3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미적용,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자격, 군복무자 건강보험 미적용(2건), 별정직 사직강요, 육아휴직불허, 교원채용	-	쌀공급, 신분확인, 직업훈련추천, 신검기회, 감호병과자, 결혼절차 차별
성 별 (8)	후유장애보험금, 성희롱, 보건의용사용(4건)	-	직급임금차별, 고용차별
장 애 (7)	운전면허 발급시 장애인 차별(5)	후원자 연결 거부	편의시설 미비
나 이 (5)	-	기간제 교사 고용차별, 강제명퇴 및 원격지발령	입학 불허, 교사 응시자격 제한, 교수연령제한
사회적 신분(3)	기간제 교사, 비학성청소년, 독학사 취득자 차별	-	-
출신국가 (3)	직업재활훈련 대상자 선정차별(2건)	-	회원가입제한
성적 지향 (2)	동성애자 차별(2건)	-	-
혼인 여부 (2)	-	-	기혼자 입학제한, 채용탈락
가족상황 (1)	보호자범위 적용의 한정	-	-
전 과 (1)	교원임용 제정차별	-	-
기 타 (1)	-	-	승진탈락



각 차별사유별로 중요 진정사건의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4-6> 차별행위 진정사건 주요 조치내역

□ 국가기관에 의한 평등권 침해

조치 유형	사 건 명	조치내용(요약)	의결날짜	이행현황
권고 사건 (10건)	국가공인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 (3건)	문서실무사 자격증 취득자에게도 승진시 가산 점을 부여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	2003.6.5	유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검찰사무직렬 제외로 인한 평등권 침해	실시대상시험에서 검찰사무직렬을 제외하지 않도록 관련지침 개정을 권고	2003.9.1	권고안 수용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자격상의 평등권 침해	학력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전공분야를 한정하는 등 평등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규정개정 권고	2003.9.1	권고안 수용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권고 (2건 병합)	군복무자가 휴가기간중 민간의료진료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권고	2003.9.8.	권고안 검토중
	별정직 공무원 사직강요 및 업무배제	사직을 강요한 행위는 인권침해 행위이므로 이의 중지를 권고	2003.9.22.	권고안 수용
	육아휴직 불허 관련 국가공무원법 개정 권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 권고	2003.9.22.	권고안 수용
	00대학교의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원자격 차별	"본교 교직원은 지원서 접수 시작일 1월 이전에 사직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시정을 권고	2003.10.15.	권고안 수용
조사중 해결 (6건)	평등권 침해	무료급식소인 외국인노동자의 집에 저가 쌀 미공급에 대해 공급토록 조치	2003.4.7.	조사중해결
	평등권 침해	국립대학생증만을 신분확인한 관행을 사립대학생증도 가능토록 조치	2003.7.21.	조사중 해결
	수용시설내 조직폭력사범 차별	조직폭력범에 대한 직훈대상자 추천제외한 관련 규정을 개정	2003.7.21.	조사중 해결
	유학생 신체검사 기회평등권 침해	영구귀국자만 신체검사하던 것을 일시 귀국자에게도 신체검사기회 제공	2003.9.15.	조사중 해결
	평등권 침해	감호병과자에 대해서도 주말귀휴제, 부부만남의집 운영 등 제외관행 개선	2003.11.16.	조사중 해결
	평등권 침해	한중 결혼절차가 미국 등의 국적 사람과 달리 복잡한 규정을 간소화	2003.11.16.	조사중 해결



□ 성별에 의한 차별

조치유형	사 건 명	조치내용(요약)	의결날짜	이행현황
권고 (6건)	성별에 의한 재화 차별(얼굴홍터)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을 차별요소가 없도록 개정권고	2003.6.30	권고안 수용
	성별에 의한 고용차별(성희롱)	담당교수의 특별인권교육 권고 및 성희롱예방 교육과 대책수립 등 권고	2003.9.1	권고안 수용
	성별에 의한 평등권 침해 등 (4건 병합)	여성교사의 보건휴가 사용제한에 대해 재발방지 권고, 서울시교육감에게는 보건휴가제도의 원활한 사용방안마련 권고	2003.11.17.	권고안 검토중
조사중 해결 (2건)	성별에 의한 고용차별	동일학력의 남성에 비해 여성의 직급과 임금에 대한 성차별 해소	2003.11.16.	조사중 해결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남성과 여성의 퇴직연령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한시적 고용연장 합의	2003.11.16.	조사중 해결

□ 장애에 의한 차별

조치유형	사 건 명	조치내용(요약)	의결날짜	이행현황
권고 (5건)	운전면허발급시 장애인 차별 (5건 병합)	장애인 운전면허 발급시 개인별 특성, 보조장치 사용 등에 의한 운동능력 보완가능성을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권고	2003.6.30	권고안 수용
합의종결 (1건)	기타 사유에 의한 재화 차별 (장애)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후원자 연결을 거부한 것에 대해 후원자 연결로 당사자간 합의	2003.1.9.	합의종결
조사중 해결(1건)	장애에 의한 시설이용 차별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에 대해 새로 시설 설치	2003.6.16.	조사중 해결

□ 나이에 의한 차별

조치유형	사 건 명	조치내용(요약)	의결날짜	이행현황
합의종결 (2건)	나이에 의한 고용 차별	2003학년도 채용용에서 나이제한을 두어 탈락된 진정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합의	2003.8.29.	합의종결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나이기준에 의한 원격지 발령 및 급여 삭감에 대한 원상회복 합의종결	2003.12.19.	합의종결
조사중 해결 (3건)	나이에 의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입학 불허한 진정인을 입학조치	2003.3.31.	조사중 해결
	나이에 의한 고용 차별	교사 응시자격을 47세로 제한한 것에 대해 응시연령을 55세로 조정	2003.9.15.	조사중 해결
	나이에 의한 고용 차별	교수초빙 공고시 연령을 제한한 것에 대해 연령제한규정 폐지	2003.10.15.	조사중 해결





□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조치유형	사 건 명	조치내용(요약)	의결날짜	이행현황
권고 (3건)	기간제 교사(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정규교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 중지 및 규칙개선 권고	2003.3.24	권고안 수용
	사회적 신분(비학생 청소년)에 의한 재화 차별	공공시설 등 이용요금의 할인에서 학생과 비학생인 청소년을 구별하는 관련 법령 등을 개선 권고	2003.9.15	권고안 수용
	독학사의 교사자격증 취득에 대한 차별	독학사에게 교사자격증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규정 개정 권고	2003.12.29	권고안 검토중

□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

조치유형	사 건 명	조치내용(요약)	의결날짜	이행현황
권고 (2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적 차별(2건 병합)	외국인 노동자도 직업재활훈련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선정제도 개선 권고	2003.3.10	권고안 수용
조사중 해결 (1건)	출신국가에 의한 재화 차별	인터넷전화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입력으로 외국인은 사용 못하는 관행에 대해 회원가입시 주민번호 입력란 삭제 개선	2003.12.29.	조사중 해결

□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조치유형	사 건 명	조치내용(요약)	의결날짜	이행현황
권고 (2건)	성적 지향에 의한 행복추구 권 등 침해(2건 병합)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동성애'란 단어 삭제토록 권고	2003.3.31	권고안 수용

□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

조치유형	사 건 명	조치내용(요약)	의결날짜	이행현황
조사중 해결 (2건)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	기혼자에게 입학을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여 피해자 복학조치	2003.2.10.	조사중 해결
	기혼여성 고용차별	기혼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한 진정인을 채용조치	2003.3.31.	조사중 해결



□ 가족상황에 의한 차별

조치유형	사 건 명	조치내용(요약)	의결날짜	이행현황
권고 (1건)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	'보호자'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관행의 개선을 권고	2003.5.7	권고안 수용

□ 전과에 의한 차별

조치유형	사 건 명	조치내용(요약)	의결날짜	이행현황
권고 (1건)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	① 진정한 교원임용제정토록 권고 ② 범죄경력 통보 관행 개선 권고	2003.1.27	권고안 수용

□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

조치유형	사 건 명	조치내용(요약)	의결날짜	이행현황
조사중 해결(1건)	회사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승진탈락 및 지방전출시킴	차기승진시 반영 및 서울로 전보합의	2003.12.1	조사중 해결

□ 기타 진정사건 주요 처리현황

조치유형	사 건 명	조치내용(요약)	의결날짜	이행현황
권고 (2건)	전과를 이유로 한 감사장 수여 차별	전과를 이유로 감사장 수여대상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권고	2003.3.17.	권고안 수용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자격상의 평등권 침해(2건 병합)	응시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평등권 침해 요소가 없도록 관련규정 개정 권고	2003.9.1	권고안 수용
조사중 해결 (4건)	병원검진 결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음	현지출장시 조사관이 진단내용을 설명해 줌	2003.4. 7.	조사중 해결
	수형자 탈출방지라는 명목으로 6개월 마다 전방제도를 일률적으로 운영	6개월 전방제도를 탄력적 운용함	2003. 7.21	조사중 해결
	"귀머거리 잉글리쉬가 병어리 잉글리쉬를 만든다"는 문구는 청각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임	조사과정에서 문구내용을 취소하고 수정함	2003.12.29	조사중 해결
	이민후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는데 여권발급과정에서 이주포기자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	외교통상부 조사과정에서 진정내용이 오해였음을 인정하고 취하	2003.12.29	조사중 해결





2. 평등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평등권 침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주로 행정기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

사단법인 한국○○협회는 「자격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하여 “국가에 의하여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인받은 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선택 가산점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도 교육감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첫째, 공인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는 검정기준, 검정과목 기타 검정수준이 국가기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 자격에 상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점, 둘째로는 교육인적자원부는 자격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민간자격 취득자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바 있다는 점, 셋째 ○○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는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선택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를 가산점 평정대상으로 하면서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2003년 6월 5일 위원회는 공인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한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피진정기관에 권고하였다. 피진정기관은 현재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다.



(2) 양성평등목표제, 검찰사무직렬 제외로 인한 평등권 침해

진정인(피해자)은 2003년 9급 공무원 채용시험 준비중에 ‘여성채용목표제’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바뀌어 적용된다는 공고를 보고 당연히 검찰사무직에도 30%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검찰직·교정직·소년보호직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에서 제외된 바 이는 차별이라며 행정자치부를 피진정기관으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2003년 9월 1일 위원회는 피의자 체포나 구속 등 신병확보 업무에 어느 정도 물리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나 그러한 업무에 언제나 물리력 행사가 따른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러한 업무를 여성 검찰사무직원이 담당하지 못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피의자 체포나 구속 등 신병확보 업무가 검찰사무직이 담당하는 업무의 전부가 아닐 뿐더러 일부 검찰청에서는 여성 직원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찰업무의 특성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의 제외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진정기관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 대상시험의 종류에서 검찰사무직렬을 제외하지 않도록 「양성평등채용목표제실시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후 피진정기관에서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3)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자격상의 평등권 침해

진정인들은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등급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산업기사 등급의 경우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전공 및 실무경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졸업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를 전공하였다 하더라도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학력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노동부를 피진정기관으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기사등급 응시자격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자(산업기사 등급의 경우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전공 및 실무경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전문대학 졸업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는 해당분야를 전공하여도 실무경력을 요구했다. 이는 대학졸업자를 고등학교 졸업자 등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우대하고, 산업기사 등급 응시자격에서는 전문대학 졸업자를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4 중 경력에 따라 응시자격을 부여할 때는 동일 직무분야 실무종사 경력을 요구하면서 학력에 따라 응시자격을 부여할 때는 전공분야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2003년 9월 1일 위원회는 피진정기관에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4 중 학력에 따라 응시자격을 부여할 때는 전공분야를 한정하는 등 평등권 침해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기관에서는 이 권고 내용을 수용하였다.

(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권고

진정인들은 군복무자가 휴가기간 중 군병원 이외의 민간의료시설에서 의료조치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49조제3호에 의거하여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제39조제2항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징집제 국가의 현역병에 대한 의료보장은 국가가 현역병의 경제활동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가 일반예산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현재 군병원은 그 수가 적고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휴가중인 군복무자가 군병원을 이용하기 곤란하며 또한 군의료시설의 수준이 민간의료시설과 비



교할 때 양적·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인식 등으로 휴가중인 군복무자가 민간의료시설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헌법 제11조 및 제39조제2항에 의거, 군복무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므로 현역병이 휴가기간 중 접근하기 편리한 민간의료 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2003년 9월 8일 위원회는 피진정기관에 군복무자가 휴가기간 중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5)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사직강요 및 차별

진정인은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인사쇄신을 위해 별정직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처를 피진정인기관으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별정직 공무원은 신분보장에 제한이 있고 임면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지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도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사유 및 신분보장에 준하는 조리상의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지속적인 재직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정인을 면직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인사적체 해소와 조직쇄신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사직을 강요하고 업무에서 배제시킨 행위는 헌법 제10조(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및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인정하여 2003년 9월 22일 위원회는 피진정기관에 이러한 행위의 중지를 권고하였고, 피진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수용하였다.





(6) 육아휴직 불허 관련 국가공무원법 개정 권고

진정인은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1조가 정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라며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육아휴직 제도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게도 가족에 대한 책임과 직장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정책이다. 「여성공무원인사관리지침」에는 여성 공무원 인사정책의 방향으로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모든 공무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장 및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제도인 육아휴직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국제협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들 공무원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았다. 이에 2003년 9월 22일 위원회는 피진정기관에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기관에서는 동 권고내용을 수용하였다.

동 진정은 입법에 관한 사안으로 각하 처리하였으나 진정내용이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해 심도 있는 조사와 자료수집 등을 거쳐 정책 권고를 했다.

(7) 전임교원신규채용 지원자격 차별

진정인은 ○○대학교 총장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대학교전임교원신규채용업무지침」 중 “본교 교직원은 지원 접수 시작일 1월 이전에 사직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소속 교직원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교육공무원법」 제33조는 소속 교수의 임용권을 대학의 자율성 차원에서 동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자격소지자 중에서 자체적으로 우수한 인재의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학교의 지침은 권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전임교원 채용에 있어 ○○대학교에 교직원으로 재직하는 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3년 10월 15일 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동 권고 내용을 수용하였다.

3.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는 양성평등이라는 기초 위에서 “모든 사회적인 영역에서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배제·제한 그리고 폭력 등”을 의미한다.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의 대상’에는 특정한 성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평등한 대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기준이나 규칙들이 특정한 성별에게 불평등한 효과를 낳게 하는 간접차별도 해당되며, 나아가 특정한 성별에 대한 폭력도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1) 성별에 의한 재화지급의 차별

진정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이하 ‘시행령’)에 안면에 같은 흉터가 남은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남자는 300만원, 여자는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며 건설교통부를 피진정기관으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남성과 여성의 등급을 다르게 적용하여 보험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추상(醜相)으로 인해서 받는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및 직종의 제약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다는 사회적 통념에 기인하여 여성에게 상위등급을 부과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의학적 타당성이 없고 안면후유장애는 남녀에게 모두 고통과 피해를 주며 이와 유사한 법률인 「국가배상법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등에서는 남녀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행위로 판단하여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보험금액 등의 한도금액을 남녀에 따라 차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행위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6월 30일 위원회는 피진정기관에 후유장애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진정기관에서는 이를 수용하였다.

(2) 성별에 의한 고용차별(성희롱)

진정인(○○대학교병원노동조합지부장)은 ○○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주임교수 겸 ○○대학교병원 비뇨기과 과장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피해 간호사들을 성희롱하고 폭행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그를 교수직에서 해임하여야 한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해 간호사들에 대한 성희롱 및 폭행·인격무시·비하언동 등은 그 경위, 내용, 주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 종사자로서 업무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그 상대방이나 관계자들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간호사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의 간호사들에 대한 성희롱 및 폭행·인격무시·비하언동 등의 행위는 차별행위(성희



통) 및 인격권 침해행위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9월 1일 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함과 아울러 ○○대학교총장과 ○○대학교병원장에게 성희롱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향후 성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며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발생시 공정하게 조사·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이 소속한 기관에서는 이를 수용하였다.

(3) 성별에 의한 평등권 침해 건의 권고

진정인들은 여교사의 보건휴가 사용시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보건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보건휴가 사용내용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리는 등 여교사의 평등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일선 초등학교에서 보건휴가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바 이는 여교사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인정, 서울시 교육감은 이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으로 보건휴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 서울○○초등학교장과 서울○○초등학교장의 행위는 보건휴가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이는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하여 ○○시교육감에게는 보건휴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서울○○초등학교장과 서울○○초등학교장에게 보건휴가 사용제한 행위의 중지와 재발방지를 권고하였다. 피진정기관에서는 위원회 권고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4.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장애에 의한 차별은 “장애를 이유로 고용·교육 등에서 배제하거나 구별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살펴보면 고용영역(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임금 외 금품, 정년, 퇴직, 해고 등)과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영역(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등), 교육시설 등 이용영역(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역에서 비장애인과의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행위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들을 배제·구별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는 차별행위로 볼 수 있다.

(1) 운전면허 발급시 장애인 차별사건에 대한 권고

진정인들은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뇌성마비장애인들로서 자동차면허시험장에서 장애인 운동능력측정분야의 현행 관련규정이 개별 신체장애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아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각기 다른 진정인 5명이 동일한 내용으로 경찰청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5건의 진정내용을 병합하여 조사한 결과, 장애인의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와 조건기준을 외형적인 신체상태별 장애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운전보조장치에 의한 보완가능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인 기준의 운동능력을 요구하는 규정은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 1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진정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2003년 6월 30일 위원회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3의3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 및 조건부과 기준’과 별표 13의5 ‘운동능력측정기기 판정기준 중 핸들조작의 합격기준’은 진정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을 인정하



여 피진정기관에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시 개인별 특성과 보조장치 사용 등에 의한 운동능력 보완 가능성을 반영하도록 동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기관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수용하였다.

(2) 장애차별에 대한 합의종결

진정인은 지체장애1급 장애인으로 2002년 4월 피진정기관인 ○○동사무소에 의하여 후원대상자로 추천되었으나 이후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을 배제하고 다른 후원대상자를 추천하자 계속해서 후원자 연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진정인의 요구를 거절함에 따라 진정인은 이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다시 후원자를 연결시켜 주고, 앞으로도 피진정인이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합의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당사자간 원만하게 합의종결 처리하였다.

5.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나이 차별’은 연령의 많고 적음을 이유로 기회를 박탈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고용영역, 재화·용역·교통수단·주거시설 등의 이용영역, 교육시설·직업훈련기관 등의 이용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구제(합의종결)한 사건내용은 아래와 같다.





진정인은 2002학년도 기간제 교원으로 재직할 당시 발생한 중간고사 수학시험문제 사전유출 및 모의고사 답안지 유출사건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해고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03학년도 기간제 교원 재임용에서 나이제한(만 35세 이하)을 두어 진정인을 탈락시켰다며 ○○고등학교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나이를 이유로 임용을 제한한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2003년 8월 26일 진정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종결 처리하였다.

또한 ○○보증기금 ○○지점 부지점장(2급)으로 근무하고 있던 진정인은 직급별 차등을 둔 ‘나이’ 기준에 따라 강제 명예퇴직을 종용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진정인은 ‘준 정년퇴직 대상자’로 분류되어 고용안정의 명분으로 연고가 없는 원격지인 ○○지역본부의 ○○연구역(대기발령) 보직으로 인사발령 조치되고 약 54%의 급여 삭감을 당했다. 진정인은 나이를 이유로 한 명예퇴직 거부에 따른 회사측의 대기발령은 부당하므로 원상회복을 원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을 원상회복(조사역)한 후 만 55세에 별정직으로 신분을 전환하고, 진정인의 중간퇴직금 정산시 평균보수액은 원상회복된 조사역 신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당사자간 합의종결로 처리하였다.

6.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일정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의 집단(학생, 공무원, 변호사, 기간제 교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 신분 차별’은 이러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이나 재화·용역 등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기간제 교원(비정규직) 차별

진정인은 기간제 교원으로서 정규교원 자격증을 가진 경우로 정규직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방학기간 중의 보수, 연가, 퇴직금 및 호봉획정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 조사 결과, 기간제 교원도 방학기간 중 정규직 교원과 같이 교재연구 및 학생지도준비 등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인정되며 이 기간 동안 피진정인이 기간제 교원에게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규정된 연가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교원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호봉을 10호봉으로 제한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인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방학중의 보수, 퇴직금, 연가, 호봉 등을 정규직 교원에 비해 적게 지급하거나 불리하게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2003년 3월 24일 위원회는 ○○중학교장에게 교원들에 대한 방학기간중의 보수, 연가, 퇴직금, 호봉책정에서 기간제 교원을 정규의 교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를 중지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서울시교육감에게는 각급 학교의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교원에 관한 운영지침 등 행정규칙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들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였다.

(2) 사회적 신분(비학생청소년)에 의한 재화차별

진정인은 청소년의 경우 공공 및 교통시설 이용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청소년이라





는 증명을 학생증으로만 하고 있어 학생이 아닌 청소년은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위원회 조사 결과,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보장규정 및 청소년헌장 중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청소년의 권리 조항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시설 등 이용요금을 학생들에게는 할인해 주면서 비학생 청소년에게는 할인해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또한 경제적·사회적으로 불우한 입장에 처해 있는 비학생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볼 때 비학생 청소년에 대해 차별적 요소가 있는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2003년 9월 23일 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인 문화관광부에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의 할인에서 학생과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구별하는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였고, 피진정기관은 동 권고내용을 수용하여 비학생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시행중에 있다.

(3) 독학사의 교사자격증 취득에 대한 차별

진정인은 현행 법령상 국가가 정한 ‘독학사취득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일반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학사의 경우는 교육대학원을 졸업해도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독학사에 대한 차별이라며 교육인적자원부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독학사제도는 일반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수강하여 학위를 취득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원회는 관계법령



에서 독학사와 일반학사의 학위의 동등성을 인정하고 있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서 독학사의 경우도 일정 범위에서 학점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인 「교원자격검정령」에서 독학사를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2003년 12월 29일 위원회는 피진정기관에게 독학사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하지 않아 교사자격증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7.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은 태어난 나라 또는 성장한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교수 등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내국인에 비해 차별하는 경우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입국하여 연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법체류를 하는 문제도 있으나 이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내국인에 비해 지나친 저임금, 부당한 근무조건, 부당한 교육·직업훈련시설 이용제한 등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진정사건의 처리내용은 아래와 같다.

진정인들은 외국 국적 출신의 노동자로서, 국내에서 취업하여 일하던 중 산업재해를 입고 직업재활교육을 받기 위해 피진정인에게 직업재활훈련원 입소와 직업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진정인이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직업재활훈련을 거부당했는데, 이는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2건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2건의 진정사건을 병합하여 조사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수급 대상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직업재활훈련 대상자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산재장해자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선발제외 대상자에 외국인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외국인 노동자의 직련훈련 비용신청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직업재활훈련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2003년 3월 10일 위원회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진정인을 직업재활훈련 신청대상자에서 배제한 것은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인정하여 피진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진정인들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를 직업재활훈련 신청대상자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직업재활훈련 대상자 선정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기관에서는 이를 수용하였다.

8.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성적 지향’이란 일반적으로 성적 정체성과 달리 본인의 의식이나 자각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내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향이라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어떤 성의 사람에게 성적으로 끌리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성적 지향성은 특정한 성의 상대방에게 성적·감정적 그리고 애정적으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성적 지향성의 개념에는 감정에 의한 성적 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동성애자란 자신과 같은 성의 사람에게 정서적·성적·신체적으로 끌리는 성적 지향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참고로 동성애는 과거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여기기도 하였으나 1972년 미국 정신의학



회에서 동성애를 병리적 현상의 범주에서 삭제하였고, 동성애자를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로 보고 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처리내용은 아래와 같다.

진정인(○○인권연대의 1)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에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 지향에 의한 인권침해이므로 이 사건의 규정에서 ‘동성애’라는 표현의 삭제를 요구하며 2002년 10월 15일 및 12월 23일 각각 청소년보호위원장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결과,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바 이와 같은 성적 행동에는 동성애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성애를 변태 성행위로 묘사하고 동성애를 표현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 이 사건의 규정은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곧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애자에 대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며 또한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동성애가 이와 같은 권리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없는 한 동성애에 대한 표현의 자유 또한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2003년 3월 31일 위원회는 피진정기관에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에서는 동 권고 내용을 수용하여 현재 동 조항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9.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혼인 여부’란 기혼이나 미혼, 이혼, 사별 등 혼인과 관련된 모든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혼인 여부를 이유로 고용이나 재화·용역 등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중 해결된 사건은 2건으로 다음과 같다.

진정인은 ○○대학교가 학칙상 기혼자에게는 입학에 제한하고 있으며 재학중에 결혼을 한 자는 제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학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기혼자 입학제한 및 재학중 결혼한 자에 대한 제적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주)의 면접시험에서 기혼여성이라는 이유로 탈락되었다는 진정내용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을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진정인을 구제 조치하여 조사중 원만히 해결되었다.

(2)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가족상황, 즉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등 가족의 형태나 구성원 그리고 가족에 대한 부양의 책임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한 진정사건의 주요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정인[피해자(부산○○초등학교)의 어머니]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제3항



의 초등학교생의 ‘보호자’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으로 한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보호하고 있는 진정한이 해당 학생의 거주지 이전 없는 전학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불허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위원회 조사 결과, 초등학교생의 거주지 이전 없는 전학을 추천할 때에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친권자나 후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사정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전학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볼 때 보호자에는 친권자나 후견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학생을 보호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학추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닌 사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생의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닌 보호자와 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생의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2003년 5월 7일 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중 ‘보호자’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관행의 개선을 권고하였고, 피진정기관에서는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수용하였다.

(3)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사면·복권된 경우 형의 효력이 실효되는 바, 이를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이용, 교육시설의 이용 및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와 관련한 진정사건의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정인은 2002학년도 ○○고등학교 신규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신원조사 결과





밝혀진 전과를 이유로 교원임용에서 탈락한 바 이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고등학교,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을 피진정기관으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은 교원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면·복권된 전과를 이유로 신규교원에 임용 제청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사면법」에 따라 특별사면·복권된 경우 전과기록을 정리하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고,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도록 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 등으로 볼 때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을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게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학교장이 진정인의 인성이나 품성, 교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면접시험 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신원조사회보서에 통보된 전과기록만으로 신규교원 임용을 제청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2003년 1월 27일 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인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정한 신원조사시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은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이를 통보하지 않도록 그 동안의 관행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고, 피진정기관인 ○○고등학교장에게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학교법인 ○○학원에 진정인을 임용 제청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신원조회 관행을 개선하고, 진정인을 임용제청하기로 하였다.

(4)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진정인은 ○○전자(주)에 근무중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이



이 진정인을 승진에서 탈락시키고 지방전출을 시키는 등 차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의 당사자간 대화 유도 및 중재로 진정인에 대해 차기 승진시 이를 반영하고, 서울로 전보할 것을 합의하여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함으로써 조사중에 해결되었다.

(5) 기타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기타 진정사건은 인권상담센터에서 진정접수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진정사건을 분류한 것으로 사인간의 침해사건, 법령제도개선, 입법재판, 재산권, 회사, 기타단체, 기타진정 등 7개 영역으로 분류된다.

기타 진정사건의 접수 및 처리유형은 <표 2-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987건의 진정 접수 중 753건을 종결처리하였는데 종결건수를 기준으로 권고가 5건으로 0.5%이며, 기각 26건으로 2.6%로 나타나 각하사건을 제외한 기각 이상 사건을 기준으로 한 인용률은 19.2%로 나타났다. 한편 각하는 722건으로 95.9%를 차지하고 있고, 각하 처리된 사건 중에는 조사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재로 조사과정에서 진정원인이 회복되었거나 원만히 해소된 조사중 해결사건이 5건이다.

<표 2-4-7> 기타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유형별 현황

구 분	진정접수	처 리 유 형				조사진행
		소 계	권 고	기 각	각하 【조사해결】	
2002년 사건수	571	389	2	6	381 【1】	182
2003년 사건수	416(182)	293(71)	2(1)	10(10)	281(60) 【4】	123(111)
소 계	987	753	5	26	722 【5】	234
비율(%)	100.0	76.3	0.5	2.6	73.2	23.7

* ()는 2002년도 이월사건 수, 【 】 는 조사중 해결사건

또한 위원회가 접수한 기타 진정사건 987건 중에서 각하처리된 진정사건은 722건이며





각하 사유별 내용을 보면 <표 2-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의 내용이 국회의 입법사항 등으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480건으로 66.5%,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거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81건으로 11.2%, 진정이 제기될 당시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가 71건으로 9.8%,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가 39건으로 5.4%,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28건으로 3.9% 등이다.

<표 2-4-8> 기타 진정사건의 각하 사유별 현황

구 분	소 계	조사대상 아님	거짓이유 없음	조사불원 진정취하	1년경과후 진정	구제절차 진행종결	법원판결 현재결정	기 타
2002년사건수	381	280	9	33	15	39	3	2
2003년사건수	341	200	19	48	24	32	12	6
소 계	722	480	28	81	39	71	15	8
비율(%)	100	66.5	3.9	11.2	5.4	9.8	2.1	1.1

이와 같이 기타 진정사건에서 각하사유가 많은 이유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인간의 인권침해(분쟁) 및 재산권 침해, 법령에 관한 내용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비록 조사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주요 정책사안, 법령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자료를 축적하여 향후 인권정책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0. 기업의 입사지원서상 차별관행 조사(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개인간의 차이를 서열화하고 위계화하는 데서 시작되는 차별이 사회 전반에 만연된 가



운데 그것이 차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별 저항 없이 차별적 관행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2002년 말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사건 173건 중 60.3%인 106건이 고용영역에서 발생한 점에 착안하여 인권 위에서는 2002년 말 이러한 차별관행을 바꾸기 위한 첫번째 사업으로 채용상 차별관행 개선을 위한 조사를 계획하였다.

고용의 첫 단계인 채용에 있어 기업들이 입사지원서에 지원자 능력이나 수행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내용을 기재케 하고 이를 채용기준으로 삼는 관행이 상존하고 있는데, 그 기재사항 중 불합리한 차별로 작용할 소지가 있고 관행개선 가능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 자진 삭제 등을 통해 시정케 함으로써 차별 없는 채용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2003년 1월 1차로 38개 기업에 대해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중 지원자의 능력이나 채용분야 업무와 연관성이 적고 불합리한 차별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시정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38개 기업이 모두 가족상황, 질병 관련, 재산사항, 종교, 혼인 여부, 키·몸무게 등의 신체사항 등을 삭제 및 수정·보완할 것임을 통보해 왔으며 실제 기업들은 입사지원서 기재시 능력과 상관없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 차별적 항목들을 과감히 삭제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3년 6월에 추가로 62개 기업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하자 대상 기업이 모두 위와 같은 내용을 삭제 및 수정·보완할 것임을 통보해 왔다. 위원회는 업체별 자진시정 내용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에 통보해 업계에서 채용시 불합리한 차별관행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각각 1월과 6월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표 하자 기업들이 출신학교 소재지, 가족사항, 질병, 병역면제 사유 등 차별적 항목을 자진 삭제하기로 해 신입사원 채용방식에 변화가 오고, 채용에 있어 차별관행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찬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 후 2003년 11월 이들 100개 기업이 자진 시정하기로 한 계획들의 이행도를 점검한 결과, 재산사항, 질병 관련, 학비 지급자, 상별경력의 기제는 기제요구 기업 모두 삭제하였고 종교, 혼인 여부, 학교 주/야간, 병역면제사유, 성장과정, 가족사항, 출신지역, 학교 소재지 기제는 기제요구 기업의 60% 이상이 삭제하였다. 장애사항은 기제요구 기업의 50%가 삭제하였고, 학교 본/분교 기제는 기제요구 기업의 44%가 삭제하였다. 그러나 출신학교명 기제는 지원자를 변별하는 1차 기준이라는 이유로 8개 기업만이 삭제를 하였다. 또한 이의 영향을 받아 조사대상이 아닌 KBS, MBC, 한국관광공사가 출신학교명을 삭제하였다.

<표 2-4-9> 입사지원서상 차별항목 조사대상 기업(100개)

구 분		회 사 명
1차	민간기업(34개)	삼성전자(주), 삼성SDI(주), 삼성중공업(주), LG전자(주), (주)LG CNS, (주)LG텔레콤, SK(주), SK텔레콤(주), SK글로벌(주), SK건설(주),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현대모비스(주), 현대중공업(주), 대우정보시스템(주), 대우자동차판매(주), (주)포스코, (주)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주), (주)KT, 한솔제지(주), (주)영풍, 동양매직(주), 라이즈온(주), (주)국민은행, (주)신한은행, (주)우리은행, (주)조흥은행, (주)한국외환은행, (주)한미은행, (주)중소기업은행,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동부증권(주)
	공기업(4개)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2차	민간기업(58개)	(주)BYC, (주)LG MRO, (주)LG경영개발원/인화원, (주)LG상사, (주)LG홀쇼핑, LG생명과학, LG전선(주), LG필립스 LCD, LG화재해상보험(주), 금호석유화학(주), 대림산업(주), 대상(주), 동부전자(주), 동부투자신탁운용(주), 동양오리온투자신탁증권(주), 동양제철화학(주), 동양파이낸셜(주), 롯데정보통신(주), 부영(주), 삼성테크윈(주), 영보화학(주), 오라관광(주), 오엔씨네트웍스(주), 웅진식품(주), 유화증권(주), 울촌화학(주), (주)금강고려화학, (주)농심, (주)대교, (주)동국제강, (주)두산식품BG, (주)선진, (주)썬앳푸드, (주)유한양행, (주)조선호텔, (주)포스코건설, (주)푸드스타, (주)한국타이어, (주)한진중공업, (주)한화/화약, (주)현대백화점, (주)현대오일넷, (주)호텔현대, 코오롱제약(주), 평화산업(주), 하나로 T&I(주), 한국후지제록스(주), 한솔LCD(주), 한진정보통신(주), 현대정보기술(주), CJ시스템즈(주), CJ(주), CJ푸드시스템(주), SK 씨앤씨(주), SK 텔레텍(주), SK 해운(주), SK와이비스(주), (주)경동보일러
	공기업(4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농협중앙회, 한국영상자료원



<표 2-4-10> 입사지원서상 차별항목 자진삭제 현황

기재사항	총 계 (① + ②)				1차조사 (①)				2차조사 (②)			
	기 재 요 구 업 체 수	삭 제 업 체 수	삭제율 (%)	미삭제 업 체 수	기 재 요 구 업 체 수	삭 제 업 체 수	삭제율 (%)	미삭제 업 체 수	기 재 요 구 업 체 수	삭 제 업 체 수	삭제율 (%)	미삭제 업 체 수
학교명	100	8	8.0	92	38	4	10.5	34	62	4	6.5	58
학교소재지	76	49	64.5	27	36	28	77.8	8	40	21	52.5	19
주/야간	38	31	81.6	7	21	20	95.2	1	17	11	64.7	6
본/분교	34	15	44.1	19	12	9	75.0	3	22	6	27.3	16
가족사항	86	66	76.7	20	34	33	97.1	1	52	33	63.5	19
병역면제사유	84	68	81.0	16	34	32	94.1	2	50	36	72.0	14
신체사항	81	69	85.2	12	31	30	96.8	1	50	39	78.0	11
종교	65	62	95.4	34	31	31	100.0	0	34	31	91.2	3
성장과정	58	45	77.6	13	26	25	96.2	1	32	20	62.5	12
출신지역	35	22	62.9	13	14	9	64.3	5	21	13	61.9	8
혼인여부	30	27	90.0	3	10	10	100.0	0	20	17	85.0	3
재산사항	17	17	100.0	0	8	8	100.0	0	9	9	100.0	0
장애사항	10	5	50.0	5	3	1	33.3	2	7	4	57.1	3
질병관련	4	4	100.0	0	1	1	100.0	0	3	3	100.0	0
기타사항(학비지급자, 상벌경력)	11	11	100.0	0	5	5	100.0	0	6	6	100.0	0

제3절 평가

2003년에 차별행위 관련 진정사건을 처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

우선 주요 기업체의 입사지원서상 차별관행에 대해 국내 주요 기업 및 공사 등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상 차별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능력이나 수행업무와 연관성이 적고 차별 소지가 있는 입사지원서 기재사항(부모재산, 신체사항 등)을 기업 스스로 자진 삭제·수정토록 하여 관행적 차별행위 시정 및 사전예방에 기여하였다.

2002년도에서 이월된 사건을 포함하여 총 445건의 차별행위 진정사건을 처리하면서 기



간제 교원에 대한 임금, 휴가 등 근무조건 차별,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공공시설이용 요금 차별, 여성보건휴가 제한, 특수경력직 육아휴직 배제, 성희롱, 독학사 교사자격증 취득 차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차별행위에 대해 피진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피진정인에게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차별과 편견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약자와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종결을 유도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후원자 연결 거부, 기간제 교사 임용시 나이제한, 나이를 이유로 한 근무조건 차별 등 3건의 피해구제를 하였으며, 기혼여성 입학제한 규정 개정, 무료급식소인 외국인노동자의 집에 대한 쌀 저가(低價) 공급,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입학을 불허한 사례에 대한 피해자 입학조치 등 11건의 차별행위를 조사중 해결하였다.

그러나 진정사건 처리에 모든 역량이 집중된 결과, 각각의 차별사유와 차별영역에서 심도 있는 조사업무 개발이 부족하였고,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5대 차별 분야에 대한 조사업무에 전문적인 접근도 다소 미흡하였다. 또한 차별행위의 경우 특히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중재를 통한 사건처리 해결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에 반하여 전체적으로는 적극적인 합의·중재가 미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안)제정 추진 작업과 연계하여 그 동안 차별행위 관련 진정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차별행위의 유형 및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사회전반에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차별행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및 구제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1절 개 요

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교육과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인권교육과 홍보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에 의거 정부, 학교,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등과 인권교육과 연구를 위한 협의를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하여 교과내용에 인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다.

2003년에 위원회는 먼저 인권교육의 청사진이 될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홍보 및 모니터링 등의 제반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인권교육 실태와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을 망라한 각 영역의 인권교육 현실에 대한 진단과 함께 세부 발전과제에 대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아울러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인권교육강사단’ 운영, ‘인권교육 자료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권교육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다.

또한 인권 애니메이션, 인권 사진, 인권 포스터 등 다양한 인권문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범국민적 인권의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특히 유니버스 형태의 인권 영화 <여섯 개의 시선>을 제작하여 전국의 극장에 개봉함으로써 대중 속에 인권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권 만화 <십시일反>은 발간 이후에 5쇄(총 15,000권)까지 찍어 낼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모았다. 2003년 8월에 월간 <인권>을 창간하고, TV광고 등 인권 광고 제작, 인권 사진전 개최, 인권 포스터 제작·배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인권교육 시스템 구성 추진

(1) 인권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위원회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인권교육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 차원에서는 이미 1994년 총회 결의를 통하여 1995년부터 2004년까지를 ‘인권교육을 위한 10년’으로 선포하고 각 나라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권장해 왔다.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교육과 관련한 국가적 의무의 이행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위원회 출범 이후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청도 크게 증가했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요구는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제도의 변화를 뒷받침할 의식·관행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체계적인 인권교육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수립중인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은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를 망라하는 사회적 합의와 실천체계의 구축, 생활 문화적 접근을 그 핵심으로 한다.

인권교육 종합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1997년 유엔이 제시한 지침과 절차는 먼저 인권교육국가위원회 등 책임기구를 구성한 다음 광범위한 기초실태 및 요구조사에 기초하여 제반 정책과제의 설정·이행·평가·수정의 과정을 밟을 것을 제안하고 있



다. 이에 위원회는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조사연구과정이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세부 정책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유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부기관 교육담당자, 초중등 교사, 인권 시민사회단체 교육활동가, 학계 전문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한국사무소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5일 인권교육 실태와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권교육 현안 및 정책과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후 정부기관, 학교, 시민사회단체 각 영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실정과 정책과제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결과는 향후 자료집 발간 및 배포를 통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사례 확산,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 초·중·고 인권교육과정안(시안) 개발

유엔은 ‘인권교육을 위해 10년’ 동안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학교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의 통합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는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학교교육에서 인권교육의 통합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2003년도에 초·중·고 인권교육과정 모형 개발을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관련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하면서 이와 관련된 교사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2003년 10월 21일에는 워크숍을, 12월 23일에는 공청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발달수준에 따른 계열성 및 타 교과와의 통합성을 고려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인권교육과정 개발을 통하여 차기 교육과정 개편시 인권 관련 교과 집필의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권교육과정안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동 시안은 향후 구성될 위원회 내 ‘인권교육과정자문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학교인권교육과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3)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 구축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인터넷 이용증가, 정보기술 발달 등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교육방식의 하나로 사이버 교육이 다양하게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위원회도 온라인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인권교육 다양화와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개발한 인권 동화 및 매뉴얼, 공무원 인권교육자료인 <인권길라잡이> 시리즈(교정편·검찰편·경찰편) 등을 각 교육대상별로 멀티미디어 콘텐츠화도 추진하고 있다.

2. 인권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여건 조성

(1) 인권교육강사단 운영

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범집행공무원의 인권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인권교육강사단을 구성·운영해 왔다. 인권교육강사단은 2003년 한 해 동안 활발한 활동을 벌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과제를 내놓게 되었다. 즉 강사단의 강의기법 제고와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해의 제고가 대두되었고, 이러한 과제는 2003년도 강사단 워크숍에 반영되었다.

즉 2003년도에는 강사단의 전문교수능력 제고를 통한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상·하반기 2회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상반기(5.30~31)에는 위원회 강사단을 대상으로 강의기법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8.29)에는 위원회 강사단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 인권보호 시스템 정착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구성된 경찰 인권강사단(pool) 및 법무연수원 등 범집행기관 교수요원, 대학 인권교육 관련 교수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하반기 워크숍에서는 인권 및 위원회에 대한 정보제공, 경찰청 자체구성



강사풀 및 법집행기관 교수요원에게 표준교안 및 위원회 교육방향을 전수하고, 인권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이들 강사단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검찰·교도관 등 법집행 공무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출입국 관리 분야, 군대 등으로 강의 대상이 확대되고, 강의 횟수 또한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강사 워크숍을 통한 교수기법을 활용하여 강의의 질적 제고를 이루었다. 위원회는 2003년 한 해 동안 경찰분야, 검찰분야 등 각 분야별로 총 91회, 연인원 9,040명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표 2-5-1 참조)

<표2-5-1> 인권교육 강사단 강의활동 실적

구분	경찰분야	검찰분야	출입국 관리 분야	교정분야	군대분야	계
횟수	80	1	3	5	2	91
인원	8,223	124	210	330	153	9,040

(2) 인권교육자료 개발 및 활용

위원회는 출범 이후 공무원들의 인권의식 증진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교재 개발을 목표로 하여 2002년에는 경찰·검찰·교정 등 법집행 공무원 대상의 인권교육교재인 <인권길라잡이>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2003년에는 인권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교재를 개발하였다. 교재의 주요내용은 인권의 국제적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일반과 각 부문별(행정, 노동, 여성, 복지, 아동, 교육, 환경, 정보) 정책과 관련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교재는 행정공무원 교육 및 연수기관의 인권강좌 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인권교육이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의 지식, 태도, 기능, 행동양식





등 총체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위원회가 인권교육 강사인력 양성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의 효과적인 인권교육 방법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인권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을 주 대상으로 효과적인 인권교육 교수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인권강사와 인권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 2003년 <경찰 인권교육 강사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매뉴얼을 개발하면서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매뉴얼 개발 워크숍(10.31~11.1)을 실시하였다. 이 매뉴얼에는 경찰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교육자들이 보고 익혀야 할 인권교육의 접근방법, 교수내용 및 교육기법 등이 제시되어 있다. 매뉴얼은 책자와 매뉴얼의 각 프로그램의 진행을 소개하는 시청각자료(CD-ROM)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매뉴얼은 경찰대상 인권 워크숍, 독립적인 인권과정 개설 협의 및 인권과정 실행을 위한 물적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위원회의 인권교육 강사단뿐만 아니라 경찰 자체 인권 학교 운영이나 인권 워크숍 운영시 활용하도록 제공될 예정이며, 각종 경찰연수기관에서 위원회 강사단이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활용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학교 인권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 관련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위원회는 쉽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다양한 인권교육매체를 통한 대국민 인권의식 제고를 위하여 2002년에 버림받은 어린이와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문제를 주제로 2종의 동화책 및 매뉴얼을 개발한 바 있다.

2003년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 위원회 및 국가 차원에서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적 제도개선 움직임을 반영하여 동화의 주제를 다양한 차별형태 중 초등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의식 개선을 위하여 이에 관한 동화 <장한 친구 희완이> (작가 윤기현, 삽화 양상용) 및 매뉴얼인 <다르게 함께 사는 세상> (박승희 교수)



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동화책 및 매뉴얼은 초등학교에서 독서지도 및 재량활동 시간에 인권교육 보조 교재로 활용하도록 하여 어린이들에게 장애인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2-5-2> 인권교육자료 개발·활용 현황

구 분	자 료 명	주 요 내 용	활 용
공무원 교육자료	행정과 인권	인권 일반, 행정과 인권, 노동, 여성 등 각 부분별 정책과 인권 등을 수록	행정공무원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
인권교육가 자료	경찰 인권교육방법	경찰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가들이 보고 익혀야 할 인권교육의 접근방법, 교수내용 및 교육 기법 등 소개	경찰 인권교육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
인권동화 및 매뉴얼	장한 친구 희완이 (동화)	장애인과 장애인 주변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장애인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내용 소개	초등학교에서 독서지도 및 재량활동 시간에 인권교육 보조교재로 활용
	다르게 함께 사는 세상(매뉴얼)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와 행동을 가르칠 수 있는 내용 소개	

위원회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독서지도나 재량활동 시간에 위원회에서 발간한 인권동화책 및 매뉴얼 활용을 통한 인권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교사, 어린이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모범사례 및 인권 문예작품 공모를 실시하였다.(2003.9.1~11.22) 이 중 인권교육 모범사례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인권 문예작품은 초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글 부문, 그림 부문, 플래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공모 결과 총 378편이 응모하였다. 위원회는 공모전 후속조치로 인권교육 모범사례 수상작을 모아 인권교육 모범사례집을 발간하였으며, 인권 문예작품 수상작(글, 그림, 플래시)은 홈페이지상에 사이버 전시를 준비중이다.





3. 인권교육 실태 조사

(1) 정부기관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 기본정보 수집과 인권교육 수요 등을 파악하는 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인권교육이 실시되는 초기에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인권교육에 대한 협의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위원회는 법무연수원, 수사보안연수소 등 경찰연수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행정공무원 연수기관 등 정부기관 50곳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실태 조사·분석 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 정부기관에서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교육의 형태는 일회성,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강의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경찰청의 경우 각 지방경찰청별로 자체적으로 ‘인권강사 풀’을 구축하여 인권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경찰종합학교와 서울시 경찰청에서는 ‘인권과정’을 운영하는 등 인권교육이 비교적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었다. 특히 경찰청은 경찰 승진시험 과목 가운데 하나인 ‘경찰윤리’에 인권보호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정부 각 기관에서 인권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인권교육 관련 전문강사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수준의 교육자료였다.

이러한 정부기관의 인권 관련 교과목(특강 포함) 개설 현황 및 개설 계획 조사 및 분석 내용은 향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협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 학 교

위원회는 학교 인권교육 운영 현황과 인권교육 운영과정의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학교분야 인권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대학교 대상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국 254개 대학교 및 대학에 인권 관련 강좌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제인권법 등 인권 관련 강좌가 43개 대학에서 63개 과목(2002년 기준)으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향후 강좌 개설 대학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초·중등학교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 경험이 있는 교사 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면담조사 포함)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계획·진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사항들은 적합한 교재의 부족, 비인권적 교육환경, 교사의 인권의식 부족 등이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는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3) 시민사회단체

또한 인권교육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권실천 시민연대 등 51개 단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번 조사에 응한 단체들이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된 취지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일반 시민들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의식 고취’와 ‘인권활동가 양성’이었으며, 인권교육 방법으로는 ‘영상물 상영과 자료집을 이용한 교육’과 ‘강연 중심의 가치관 및 지식 교육’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인권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부분은 ‘예산의 부족’과 ‘사회적인 인식과 참여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각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기본원리, 특성, 인력 및 교재현황, 예산, 평가, 장애요인 및 기회요인 등을 수집해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국내 인권교육의 단기·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4. 인권교육 관련 기관 협의 및 교육 활성화

(1) 인권교육 관련 기관 협의 및 교육실시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법무연수원, 국방부, 사법연수원, 교원연수기관 등과 기관협의를 실시하였다. 교원연수기관 인권특강 개설을 위해 2003년 10월 21일에 ‘교원연수기관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언론재단의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지원 및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기업체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관련자 면담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3년에는 경찰·검찰·교도관 등 법집행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육군과 해군 수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2회)을 실시하였으며, 언론인 대상 인권 특강 및 사법연수원 법관 대상 인권 특강, 교사 대상 인권 특강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양대, 전북대 등 각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인권위원 초청강연을 실시(6회)하였다. 또한 교육청 교육과정 담당자, 교육연수원 담당자, 교사 등 100명을 대상으로 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관련 워크숍(10.21)과 초등학교 교사 대상 인권동화책 및 매뉴얼을 활용한 인권교육워크숍(12.18)을 실시하였다.

특히 사법연수원과 협의하여 신입 법관 연수과정과 사법연수생 수습과정에서 인권강좌를 개설하고 인권 특강 형태의 강좌를 개설하자는 데 합의를 이루어 냈다. 또한 법무연수원과의 협의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권강좌를 인권감수성 및 인권침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도록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향후 강의내용 개편에 대해 고려하겠다는 점에 합의를 보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교원연수기관에 인권 강좌개설을 요청하였으며, 상호 협의 결과 우선 특강 형태의 강좌개설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그러나 개별협의 등을 통한 협력은 강화되었지만 더욱 가시적 성과를 위해서는 체계적 협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강 형태의 강의가 아닌 정규강좌 개설을 위해서 기관협의를 더욱 더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우선 체계적 방안으로 각 기관의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2) 특별 인권교육 실시

위원회는 진정사건의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9회, 16명) 특별 인권교육 권고는 여타 인권교육 권고와 달리 시행 주체가 우리 위원회이며, 교육 시행 자체가 권고의 이행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또한 주로 의식 및 관행 개선을 위한 피진정인 교육만 단독으로 권고하는 점에서 제도개선 권고 등 타 권고와 병행되는 자체 인권교육과 차이가 있다. 위원회는 특별 인권교육 수강자를 대상으로 진정사안과 유사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인권침해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서로 엇갈렸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1회 4시간 이내의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권고의 다양화를 추진중에 있다.

(3) 위원회 자체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원회는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 관악고등학교, 강남중학교, 대신대학교 학생 및 경향신문 수습기자단이 위원회를 방문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자체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총 8회에 걸쳐 위원회를 방문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700명의 경찰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원회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이들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각급학교 학생들에게도 위원회의 방문이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생활속에서 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위원회 직원들의 인권전문성과 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 기본과정(상·하반기 각 1회, 총 4시간)과 국민기본권 이해 등을 주제로 하는 전문과정(상·하반기 각 1회, 총 16시간)을 운영하였다.





5.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1) 인권 영화 <여섯 개의 시선> 제작 상영

2003년에 위원회는 2002년에 제작한 단편영화 6편을 집대성하여 <여섯 개의 시선(If You Were Me)>이란 이름으로 인권 영화를 완성했다. 박광수, 박찬욱, 정재은, 박진표, 여균동, 임순례 등 6명의 감독이 인권을 주제로 10~20분 분량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옴니버스 형식의 이 영화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을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18가지 차별유형 중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외모, 학력, 사회적 신분 등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차별 문제에 주목했다(프로듀서 이현승, 이진숙).

영화 <여섯 개의 시선>은 영화사 ‘청어람’이 이 영화의 투자 및 국내 배급을, 인디스토리가 해외배급을 맡았고, 동숭아트센터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이를 지원하였다. 2003년 4월 25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선정된 이후, 각종 국제 영화제에 초청됐다(표 2-5-3 참조). 또한 제4회 장애인영화제 개막작(9.24), 제6회 고당영화제(9.24), 여수 인권영화제(10.24) 등에도 초청, 상영되었다. 또한 2003년 11월 14일 전국 53개 상영관에서 동시 상영되었다(12세 관람가). 극장개봉 직전에는 영화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11월 7일엔 명보극장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 강금실 법무부장관, 권기홍 노동부장관, 영화배우 최민식, 유지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시사회를 개최했고 그에 앞서 안성기, 정우성, 송강호, 문소리 등 30여 명의 배우들이 참가한 가운데 인권 영화를 위한 자선경매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한편 이 영화는 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NETPAC) 특별언급(Special Mention)과 제13회 한국가톨릭 매스컴상(12.11, 천주교 주교회의) 영화 부분에서 각각 수상하기도 했다. 6명의 감독들은 상금 전액을 외국인노동자단체에 기증했다.



<표2-5-3> 인권 영화 <여섯 개의 시선>의 국제영화제 초청 현황

영화제명	일 시	장 소	비 고
제4회 전주국제영화제	2003년 4월 25일~5월 4일	대한민국 전주	개막작
제1회 블라디보스톡국제영화제	2003년 9월 12일~1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제13회 후쿠오카국제영화제	2003년 9월 12일~23일	일본 후쿠오카	
제22회 밴쿠버국제영화제	2003년 9월 25일~10월 10일	캐나다 밴쿠버	용호상부문
제8회 부산국제영화제	2003년 10월 2일~10월 10일	대한민국 부산	한국영화파노라마부분
제47회 런던국제영화제	2003년 10월 22일~11월 6일	영국 런던	
제27회 예테보리영화제	2004년 1월 23일~2월 2일	스웨덴 예테보리	예 정
제17회 싱가포르국제영화제	2004년 4월 25일~5월 4일	싱가포르	예 정
제51회 시드니영화제	2004년 6월 11일~25일	호주 시드니	예 정

(2) 인권 만화집 <십시일反> 발간

2002년 위원회가 기획·제작한 인권 만화집 <십시일反>이 2003년 8월 창작과비평사에서 출간되었다. 초판 발행 2주 만에 2쇄를 찍은 이 만화집은 2003년 12월 말 현재 5쇄(총 15,000권)를 발행했다. <십시일反>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2003년 겨울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되었으며,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교사들의 모임’에서도 권장도서로 선정, 수준별 분류에서는 중학교 2학년부터, 분야별로는 ‘역사를 알고 세상을 고민하기’로 분류, 추천되었다. 또한 제44회 한국백상출판문화상 예심을 통과해 최종 후보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어린이 청소년 부문).

<십시일反>은 인권 영화 제작과 더불어 위원회법이 규정하는 18가지 차별 유형을 주제로 했으며 박재동, 손문상, 유승하, 이우일, 이희재, 장경섭, 조남준, 최호철, 홍승우, 홍윤표 등 10명의 만화작가들이 참여해 극화, 만평, 콩트 등 다양한 형태로 창작된 단행본이다.



(3) 인권 사진집 <눈밖에나다> 발간 및 사진전 개최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차별문제는 법·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차별 예방 및 인권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인권 사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사진’은 현장기록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인권 현실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담아내므로 전달력이 강하고 효과가 빠르나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일반적 상업 영역은 재생산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위원회는 차별 유형 중에서 장애, 이주 노동자, 혼혈, 성적 소수자, 노인문제를 주제로 광상필, 김문호, 박영숙, 성남훈, 안세홍, 염중호, 이재갑, 최민식, 한금선 등의 9 명의 사진작가들이 참여한 인권 사진집 <눈·밖에·나다>(2003. 12. 8. 휴머니스트 刊)를 발간하였다. 이와 더불어 12월 10일부터 일주일간 덕원갤러리에서 인권 사진전 <눈·밖에·나다> (프로듀서 안해룡)를 개최했다.

<표2-5-4>인권 사진 프로젝트 제작 현황

작가명	주 제	제 목	내 용
광상필	장애인	절망을 넘어선 자화상	‘장애인’ 사진작가가 담아낸 장애인들의 삶
김문호	이주노동자 가족	People On The Border	한국인과 가족을 이룬 ‘이주자’들의 모습을 통해, 이들의 모습을 낫설어 하고 거부하는 현실 포착
박영숙	성적 소수자	또 다른 현실	성적 소수자의 초상사진을 통해 이들이 이성애자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우리 사회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지적
성남훈	시각, 청각 장애인	혜선이 이야기	하루하루 시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꿈을 키워 나가고 있는 장애인 소녀의 일상
안세홍	이주노동자	우리 밖의 호센	이주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다가서서 보여줌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표현
염중호	차별 전반	이 편할 노무 세상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 위의 철조물과 불법주차 차량, 여성의 유니폼 속에 담긴 차별 등 일상에서 벌어지는 차별 현실
이재갑	혼혈인	Another Korean	혼혈인의 초상사진과 주민등록증을 통해, 혼혈인이라는 이유로 가난에 시달리며 교육,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 지적
최민식	사회적 소수자	가난과 소외에 관한 에필로그	가난과 불평등 그리고 소외의 현장을 담은 사진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이야기
한금선	독거노인	이주 오래된 고독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 조망



(4) 인권 포스터 제작

포스터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지면 한 장에 압축하여 함축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고 장소의 제약이 없고 2차적 활용도가 높으므로 일반 국민의 인권교육·홍보에 효과적인 매체이다.

이러한 점을 살려 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 유형을 주제로 윤호섭 등 12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포스터 제작(프로듀서 안상수)을 추진해왔다. 2004년도에 총 12점의 포스터 작품을 공공장소 등에 게시하여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의식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5) 인권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위원회는 2003년 인권 영화에 이어 차별을 주제로 한 인권 애니메이션을 기획했다.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고 표현의 제약이 없는 애니메이션은 인권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콘텐츠 중 하나이다. 권오성, 박윤경(5인 감독 공동연출), 박재동, 유진희 감독이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연출하는 인권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는 각 10분~15분 분량의 단편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제작하여 2004년에 완성할 예정이다.(프로듀서 오성윤)

6. 월간 <인권> 창간

월간 <인권>은 2003년 8월 1일 첫선을 보였으며, 위원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창간됐다.

고정 꼭지로는 우리 사회의 인권현안을 찾아가는 ‘기획’, 국가인권위 활동을 소개하는 ‘특집’을 비롯해 인권 향상을 위해 애쓰는 인물을 인터뷰한 ‘인권이 만난 사람’, 문인들의





인권 에세이 ‘휴먼필’ 등이 있다. 2003년 12월 31일 현재 통권 5호를 발행해 전국 공공기관의 민원실, 은행 등과 개인 정기구독자 등에게 배포하고 있다.

<표2-5-5> 월간 <인권> 발간 현황

호수	주요 내용			발행부수
	기획	특집	기타	
1호	인권영화, <여섯 개의 시선>	국가인권위원회가 바꾸는 세상	□ 승문고 도서관 지킴이 허병두 □ 물, 인권인가? 인권인가!	20,000부
2호	입사지원서로 보는 우리 사회의 차별	서점에서 만난 인권	□ 들꽃피는 마을 이장 김현수 목사 □ 드 멜로의 죽음과 비엔나 +10	20,000부
3호	권고를 말한다	인권편지를 쓰자	□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이란주 □ 숨겨진 아파트헤이트 달릿	28,000부
4호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	인권, 이만큼 더	□ 참여성노동복지터 전순옥 □ 정신건강, 사회가 함께 푼다	30,000부
5호	반갑다 NAP	차별 & 국가인권위 여론조사	□ 사진작가 이재갑 □ 정보통신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	30,000부

7.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 홍보

(1) 인권 광고 제작

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55주년을 맞아 일반 국민의 차별감수성을 제고하고 진정권을 홍보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를 주제로 TV 광고를 제작, 방영했다.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족 2세’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차별과제를 선정해 집약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전달력과 이해도를 높이고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메시지의 호소력과 수용도를 높였다. 파키스탄 출신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아내, 둘째아들 요셉이가 직접 출연한 이 광고는 박명천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이렇게 제작된 인권 광고는 2003년 1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MBC, SBS, KBS 등에서 총 241회 방영되었으며 전국 78개 전광판을 통해 상영되었다. 인권 광고는 TV CF 포털 사이트인 www.tvcf.co.kr에서 ‘화제의 광고’로 선정됐으며 대학의



광고홍보 관련 학과의 교재인 <TV 광고기획, 연출노트 - 명작 50 따라잡기>의 공익광고 단락에도 소개됐다.

(2) 국민 진정권 보장을 위한 진정안내 홍보물 제작

국민의 진정권 보장 및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달라도 같아요>라는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했다(일러스트레이션 강우근, 카피라이터 윤수정, 디자이너 최준석). 2003년 10월 1차로 읍·면·동사무소, 고등학교, 대학교, 경찰서, 다수인보호시설, 시민단체 등 11,654곳에 포스터 30,000매, 리플릿 131,000매를 배포했다. 또한 12월에는 2차로 기차역, 병원, 보건소, 우체국 및 은행 등 9,983곳에 포스터 4,028매, 리플릿 47,450매를 배포했다.

(3) 언론 홍보

위원회는 2003년 한 해 동안 총 188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다. 이는 2002년 동기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보도자료는 언론사 사회부(64곳), 논설위원실(19곳), 시민단체(215곳) 등에 배포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및 정부부처 등에도 배포하였다. 또한 언론에 1,101회(중앙일간지 및 방송보도 기준) 보도돼 전년도에 비해 50% 가까이 보도량이 증가했다. 또한 주요 쟁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7회에 걸쳐 기자회견(출입기자 3회, 지역기자 4회)을 개최했다. 이 밖에 외국 언론기관 및 해외 인권단체에 위원회 활동상을 전파하기 위해 154건의 보도자료를 영어로 번역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

위원회는 2003년 1년 동안의 보도자료와 신문기사 등을 모아 보도자료집과 기사자료집을 각각 1,500부씩을 발행하여, 국회, 언론사, 시민단체, 정부기관 등에 배포했다. 이 자료집들에는 2003년 한 해 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인권 현안과 위원회의 제반 활동상황을 담았다.





<표2-5-6> 진정안내 홍보물 배포내역

배 포 처	배포처 개소	배 포 수 량	
		포스터	리플릿
지방자치단체	4,089	12,267	40,890
경찰서	3,189	6,472	31,890
법무부	113	384	1,430
학교(고등학교대학교)	2,442	7,326	24,420
시민단체	322	322	1,932
다수인보호시설	894	1,886	18,860
사회복지관	353	706	7,060
대한법률구조공단	55	110	1,100
병원, 보건소	2,796	2,796	13,980
우체국, 은행	6,694	246	33,470
기차역	493	986	-
대사관, 영사관	94	282	940
외국인 관련 시설 및 단체	103	285	2,505
합 계	21,637	34,068	178,477

제3절 평 가

2003년 한 해 동안 위원회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인권교육과 학교 교과과정 중심의 인권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인권교육 관련 국내외 여건과 실태분석 등 기초연구와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인권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의 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청사진이 될 「인권교육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또한 학교교육에서 인권교육의 통합을 위한 ‘학교인권교육과정(안)’ 수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고, 공무원을 위한 인권교육 교재, 경찰대상 인권교육 강사를 위한 매뉴얼 개발, 장애를 주제로 한 인권 동화 및 매뉴얼 발간 등을 통하여 인권교육의 물적 기반 구축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경찰 등 법집행 공무원 대상의 인권교육을 확대하여 법집행



공무원의 인권의식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인권교육 강사단 워크숍을 실시하여 강사단의 교수능력을 제고하였다. 특히 워크숍 참석대상을 위원회 강사단뿐만 아니라 경찰청 인권교육 강사풀 등으로 확대 발전시킨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정부,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별로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통해 향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협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으며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국방부, 교원연수기관, 기업체 등과의 기관협의를 통하여 전 사회적 인권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경찰 분야 인권교육 활성화에 비해서 검찰, 교정기관, 출입국관리소, 군대 등에서는 인권교육이 미흡한 점과 경찰, 검찰 등 법집행공무원 대상의 인권교육에 집중된 결과 교사대상 인권교육이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인권 홍보에서는 대중성 있는 인권 영화를 직접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였고, 인권 잡지 월간 <인권>을 창간하여 정기적으로 다양한 인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각 영역에서 인권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인권 만화집과 인권 사진집은 출판사를 통해 정식 출판되었고, 이 책들은 일반 서점에 유통되어 국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2003년 하반기에는 위원회의 인지도 조사와 차별의식과 관련한 국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론의 향방을 점검하기도 하였으며 2003년 12월 10일에는 ‘인권의 날’ 기념식에 ‘윤도현밴드’를 인권홍보대사로 임명함으로써 대중문화를 통하여 인권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았다.

그 동안 위원회는 인권의식 확산을 위하여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 만화뿐 아니라 사진, 애니메이션, 포스터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우리 사회 인권문화 영역을 나름대로 넓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맞출 수 있는 더욱 확장된 문화 영역에서의 콘텐츠를 개발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우리 사회 전반에 폭넓게 존재하는 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한다.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들과 교류협력의 활성화

제1절 개 요

위원회법 제19조에 따르면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1993년 유엔 비엔나회의에서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서 규정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중 비정부기구(NGO)와 정부를 이어 주는 민간단체 협력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인권 관련 활동에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매우 지대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분야별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한국사회에 인권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이끌어 냈으며 인권의 중요성을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2003년 위원회는 ‘민간경상보조금사업’ 및 ‘시민실천프로그램개발용역사업’을 처음으로 인권단체와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권 관련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는데 노력하였다.

국제적으로는 9.11 테러 이후 안보와 인권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부각되었으며 이라크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 해가 2003년이다. 특히 유엔의 이라크 특사로 활동해 온 유엔인권고등판무관(Mr. Sergio Vieira de Mello)의 폭탄 테러에 의한 사망소식은 인권을 위해 헌신한 모든 국제사회의 성원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되었다.

위원회는 2003년에 유엔 인권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유엔주관 국제회의에 대한 참가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였다. 사회권위원회의 북한 사회권 보고서 심의에도 참가하여 북한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다. 스페인, 모로코, 몽골 등 해외 인권기구 방문을 활발히 추진하였으며(11기관), 그 지역도 유럽과 아프리카로 확대하였다. 또한 해외 인권활동가 등의 해외 방문단 접견(170여 명), 인권 향상과 보호를 위한 국제연대활동, 국가인권기구간 직원교류 등 국제교류협력의 기반을 구축, 확대시키는 데에도 전력을 다했다. 2004년에 개최될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등 국제회의의 한국 유치에 위원회의 적극적인 국제 인권활동의 결과로서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음을 보여 준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인권시민단체와 협력강화

(1) 인권운동 활성화를 위해 인권시민단체 공동협력사업 추진

위원회는 출범 후 2003년 처음으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인권 관련 시민단체와 공동협력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시민실천프로그램개발 용역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단체들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위원회의 개별적 사업들에 반영될 수 있었고, 인권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3년 위원회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인권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예산부족으로 수



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23개 단체를 선정, 총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원사업 분야로는 △ 인권신장을 위한 새로운 분야의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 국제기구 및 단체 등과 연대강화를 위한 사업, △ 국제조약 관련 및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 지역 연대사업 등 네트워크 구축효과가 큰 사업 등으로 정하였다.

<표 2-6-1>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 현황

(단위:천원)

번호	사 업 명	단 체 명	보조금
1	사병의 인권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사업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12,650
2	해외투자 한국기업 인권현황 백서발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7,950
3	군인의 전화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8,400
4	여성인권을 찾는 시민감시단 사업	(사)한국성폭력상담소	4,500
5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한국 시민사회 입장제출 및 보고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11,620
6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수첩 및 CD발간 보급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모임	13,650
7	<빅브라더 보고서>발간 사업	함께하는 시민행동	8,325
8	환자권리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건강연대	8,575
9	국제형사재판소와 동북아시아 인권단체역할 제고를 위한 국제 워크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9,600
10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다큐제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13,000
11	교칙을 바꾸자. 청소년 인권을 찾자	(사)흥사단	5,350
12	여성 장애인 성매매 유입 근절을 위한 연대체 구성과 실천프로그램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10,100
13	중고교 평화 인권반 운영 및 교안개발	(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9,270
14	지역사회 청소년 인권을 위한 심포지엄 및 인권교실	익산 YMCA	4,610
15	기지촌 다큐멘터리 <나와 부엉이> 영/일어 번역 및 자막 편집 사업	두레방	11,613
16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의 보호 및 촉진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조약 홍보 및 교육사업	한국 DPI	9,066
17	지역이동센터 공부방 실무자의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강화 및 인권활동가 양성	(사)부스러기 사랑나눔회	6,370
18	제1회 노근리인권 백일장 및 독후감 대회	노근리사건대책위	6,797
19	2003시민을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울산인권학교'	울산인권운동연대	8,780
20	아시아정의평화연대 활동가 국제회의(JPW) 참석	천주교인권위원회	3,000
21	한국시민사회단체의 국제연대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활동가 국제연대 교육연수	환경운동연합	10,000
22	여성의 빈곤화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여성 공동행동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네트워크 강화	(사)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9,030
23	희귀난치 질환자의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교육사업	한국백혈병환우회	7,744
합 계			200,000





본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을 제정하였고 별도의 관련 학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선정, 지원금액, 평가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지원사업 명 및 단체는 <표2-6-1>과 같다.

지원사업 중 우수사례로는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에서 수행한 ‘해외 한국기업 인권현황 백서발간’ 사업으로 1993년부터 10년간 해외투자 한국기업에서 일어난 노사 갈등과 노동권 침해사례를 종합, 그 유형을 분석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었다. 이는 해외 투자 한국기업의 노동권 분쟁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에서 수행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 수첩 및 CD 발간, 보급사업’은 한국의 법과 인권보호 관련제도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이주노동자에게 인권수첩과 교육용 CD를 제작, 배포하여 이주노동자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습득케 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인권 신장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에서 추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국제연대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활동가 국제연대 교육연수’ 사업은 민변·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연대하여 주요한 국제이슈 흐름인 환경·여성·인권·노동·동북아 평화 등에 대한 인식 공유와 국내외 단체들간의 국제연대 방안을 모색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민실천프로그램개발용역사업’은 대국민 인권의식 제고와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인권실천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하고자 실시되었다. 사업영역은 성적 소수자, 아동·청소년,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5대 분야에서 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5개 사업을 선정, 총예산 1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분야별 지원단체명 및 사업비는 <표2-6-2>와 같다.



<표 2-6-2> 시민실천프로그램 용역사업 추진 현황

(단위:천원)

분 야	사 업 명	단 체 명	사업비
성적 소수자	소수자 인권향상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개선활동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9,200
"	2003 여름 성적 소수자 인권캠프 및 대학 순회 인권학교	동성애자인권연대	6,434
"	여성 성적 소수자 자긍심 프로그램	끼리끼리	5,675
아동 및 청소년	아동 인권향상과 가족기능회복	안산YMCA	10,750
"	아동 온라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10,600
"	좋은 친구 만들기 운동	한국청년연합회(KYC)	7,540
"	1318! 너의 이름은?	울산YWCA	6,250
여성	상담활동가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한국여성민우회	1,610
"	교회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의식개혁 프로그램	기독교여성상담소	8,025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인권 및 모성보호 사업	이주여성인권센터	11,530
"	아클라(AACLA)인권학교	아시아의 친구들(고양)	9,500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찾아주기	지구촌사랑나눔(성남)	13,875
장애인	장애우인권지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2,697
"	장애인과 하나되는 어울마당	목포경실련	3,464
"	청소년과 장애인 그리고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야간학교	참여자치21(광주)	7,850
합 계			125,000

우수사례로는 한국청년연합회에서 수행한 ‘좋은 친구 만들기 운동’은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위한 교정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이수한 일반 사회인과 대상 청소년간의 인간적 만남을 통해 그들의 고민을 들어 주며 사회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포경실련에서 수행한 ‘장애인과 하나 되는 어울마당’의 경우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통합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및 다중편의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함께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조례제정운동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참여계기 마련과 인권의식 증진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조례제정청구라는 완결된 사업방식을 통해 새로운 시민운동 방식을 개발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2) 인권 시민단체와 간담회 및 업무 설명회 개최

2003년에 위원회는 처음으로 부산·광주·전주·대전지역 인권 시민단체와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총 99개 단체에서 137명이 참석하였다. 지역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인권현안 및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첫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3년 2월 초에는 총 42개 단체에서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의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인권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참석 단체들이 개진한 의견을 위원회 수행사업 추진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3) 인권단체 활동가 인권교육 강좌 운영

지역 인권시민단체 상근 활동가의 실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 강좌 프로그램을 지역단체들과 공동으로 기획, 운영하였다. 2003년에는 우선적으로 전주·울산·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3차례 실시하였는데, 총 50개 단체에서 111명이 참석하였다. 인권법 이론, 국제인권기구 활동동향,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소개 등의 교육 내용으로 상근활동가들이 실무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단체간 연대 강화 및 지역 인권 현안에 대한 공동 관심사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4) 인권정책 토론 활성화를 위한‘배움터’시설 개방

위원회 청사 내의 ‘배움터’를 무료로 개방, 인권시민단체들이 각종 인권관련 학술행사,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 수 있도록 하여 시민사회의 여론 형성과 인권운동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제23회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 학술토론회’ 등 2003년에는 총 204



회의 인권 관련 행사가 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려 2002년에 비교하여 47%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위원회 ‘배움터’가 명실공히 한국 시민사회의 주요한 인권정책 토론의 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5) 인권취약지대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및 인권시민단체 행사 참석 등 상호교류사업

본 사업의 취지는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총장, 국장 등의 정책 결정권자들로 하여금 인권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소외계층의 삶의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인권상황 실태를 생생하게 인식하고 인권정책 입안과정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이다. 2003년 방문지역은 독거노인들이 거주하는 ‘쪽방촌’(서울역 부근), 가출청소년 대안가정과 교육시설인 ‘들꽃피는 마을 및 학교’(경기도 안산), 이주노동자 자녀 양육보호시설인 ‘베들레헴 아가방’(서울 보문동), 치매노인 요양보호시설인 ‘샘터마을’(경기도 고양), 중증장애인 요양보호시설인 ‘주보라의 집’(경기도 파주) 등이었다.

또한 위원회는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과 지속적인 상호 의견교류를 위해 원불교인권위원회 창립기념식, 인권운동사랑방 10주년 기념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여성의 전화연합·참여연대 후원의 밤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였을 뿐 아니라 위원회 명칭 사용 및 재정적 후원, 위원장상 수여, 축사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2. 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

(1) 인권 관련 국제회의 참가

위원회는 2003년도 한 해 동안 유엔 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와 조약감시기구인 아동권





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및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위원회 등에 적극 참가하여 2002년에 비교하여 유엔 주최 국제회의에 참가범위 및 횡수를 확대하였다.(표 2-6-3 참조)

유엔 인권위원회는 매년 3~4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6주간 개최되는데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제59차 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는 53개 회원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대표, 국가인권기구, NGO 대표 등 3,000여 명이 참가하여, 시민·정치적 권리 등 21개의 인권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86개의 결의안과 18개의 의장성명이 채택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EU의 발제로 북한에서의 시민·정치적 권리의 침해와 탈북자 처벌 중단을 촉구하는 북한결의안이 최초로 채택되었으며,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인권침해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과 관련하여서는 북한 인권문제 외에 정신대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등이 논의되었으며, 한국정부 주도로 ‘인권증진을 위한 모범적 공치의 역할’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대하여 아동권리 부문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인권위원 중 최소 1명의 아동전문가를 임명할 것, 아동친화적 방식의 진정접수 및 조사방법 개발, 학교에서의 아동체벌을 금지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권고할 것을 제안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고용허가제 도입, 난민심사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통해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인종차별행위, 피해자의 진정이나 사법적 대응에 대한 정보부족을 지적하고 정부 당국의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인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위원회에 참가하여 북한 정부보고서 심의 내용도 모니터링하였다. 사회권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식량부족으로 인한 생활과 교육, 문화활동의 영향, 탈북자 문제, 여성의 지위문제, 사법부의 독립성 미흡, 노동활동 제한 등 북한의 사회권 보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과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의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장애인협약(안) 관련 제2차 유엔특별위원회에서는 각국 정부대표, NGO, 국가인권기구, 유엔대표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엔의 「장애인의 권리 및 존엄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안)」을 성안하기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2002년 멕시코가 제출한 장애인협약(안)은 미흡하여 채택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협약(안)을 만들기 위해 정부(27명), NGO(12명) 및 국가인권기구(1명)의 대표로 구성된 40명의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국제 NGO와 국가인권기구 간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NGO가 주관하는 인권 관련 국제회의에 참여하였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연대회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국제 NGO간 연대방안과 상호 정보교환 등을 위한 최초의 회의이다.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등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인권교육의 평가와 전략’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유엔10개년 계획의 목적에 비추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비엔나+10 아시아협회의’에서 위원회는 아시아지역 국가인권기구를 대표하여 비엔나회의 이후 10년을 평가하고 국가인권기구들의 역할과 발전현황에 관한 연설을 하였다.

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각종 국제워크숍에도 활발히 참가하였다. 유네스코 주최 ‘인종차별과 인종주의 철폐 제3차 10개년 계획 이행 관련 관용 함양과 인종주의 철폐를 위한 교재개발 워크숍’에는 교재개발을 통해 대학생에게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인종주의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인종주의를 극복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말레이시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인권과 사법행정 관련 국제회의’에도 참가하여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기본적 자유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제인권 원칙의 국내법적 집행과 사법체계에 대한 적용 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제11차 아·태지역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지역협력 워크숍에 정부 대표단과 함께 참석하였다. 28개국 정부대표와 11개국 국가인권기구 대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및 NG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 강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인권교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발전권의 현실화를 위한 전략 등 4가지 주제를 핵심내용으로 다루었다.

<표 2-6-3> 국제회의의 참가 현황

주 관	출장기관(회의)	출 장 목 적	기 간	지 역
유엔 (7회)	아동권리위원회	정부보고서 심의 모니터링	1.11~18	제네바
	인종차별 교육교재 개발 워크숍	인권위 인권교육 참고	2.18~21	파리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11차 워크숍	아태지역 정부간 회의로 정부대표, NIs, NGOs 참가	2.22~3.1	이슬라마바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활동 모니터링	3.15~4.19	제네바
	장애인협약특별위원회(2차)	장애인협약 성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참가 및 의견개진	6.21~28	뉴욕
	인종차별철폐위원회(유엔 인권소위원회)	인종차별협약 한국정부 이행보고서 심의 모니터링	8.7~16	제네바
	사회권위원회	북한 정부보고서 심의 참가	11.17~22	제네바
APF 등 아태 (3회)	UN, APF 및 영국 주관 워크숍	장애인협약 관련 워크숍	5.24~6.1	뉴델리
	인권과 사법행정	인권과 사법행정 국제회의 참가(말레이시아 주관)	9.8~1	쿠알라룸푸르
	인권교육실무자 국제회의	아태지역 인권교육 실무자를 위한 회의 참가	11.9~14	방콕
NGO (3회)	ESCR-Net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연대회의 참가	6.6~13	방콕
	비엔나+10회의	비엔나+10 회의 참가	12.13~17	방콕
	일본기구인대학교 심포지엄	심포지엄 참가	12.14~16	일본

(2) 외국의 인권기구와 국제교류 및 협력

2003년도에는 위원회의 국가인권기구간 방문, 교류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의 장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역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실시하였다.

몽골, 모로코, 스페인 등 인권위원회의 방문에는 위원장이 직접 동행하였다. 몽골방문



의 경우 2002년 몽골 인권위원회 위원장 일행의 한국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모로코, 스페인 인권위원회는 2004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와 관련 상호 협의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한 방문이었다.

또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와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Swedish Parliamentary Ombudsmen),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 및 오스트리아의 인권연구소와 옴부즈만 등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2004년도 세계국가인권기구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의 서울 개최에 필요한 제반 실무사항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선진적 인권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유럽인권재판소의 모범적 판례를 우리 위원회가 연구·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표 2-6-4 참조)

<표 2-6-4> 외국의 국가인권기구 방문 현황

방문 기관	방문 인원	방문 목적	방문 기간
몽골 인권위원회 방문	위원장 등 3명	상호 정보교환 및 교류협력방안 논의	8.26~11.29
유럽평의회, 인권재판소 및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 등 방문	인권정책국장 등 3명	“	10.4~10.12
덴마크, 노르웨이 및 오스트리아인권 연구소와 옴부즈만 방문	유현 위원 등 3명	“	12.11~2.21
스페인 옴부즈만 및 모로코 인권자문 위원회 방문	위원장 등 5명	상호 정보교환 및 교류협력방안과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회의의 서울 개최관련 논의	11.22~12.5

위원회는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회원 가입 이후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먼저 APF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위원회의 주요 활동을 알렸으며, 태국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태국정부의 간섭과 위협에 대해 항의 서신을 보내는 등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촉구하는 연대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한 위원회는 외국 국가인권기구와 직원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3년 처음으로 APF 사무국을 비롯하여 5개국 인





권위원회에 총 11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교류사업을 시행하였다.(표 2-6-5 참조)

<표 2-6-5> 국가인권기구간의 직원교류 현황

교 류 기 관	인원	소 속	교 류 분 야	교 류 기 간
APF 사무국	1	정책총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11.10~11.24
필리핀 인권위원회	2	총무/인권교육	인사정책/인권교육	11.10~11.24
피지 인권위원회	2	침해조사/ 인권교육	인권침해/인권교육	11.19~12.3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2	차별조사	차별조사 및 구제	11.22~12.5
호주 인권위원회	2	법제개선/ 침해조사	법령·제도·정책/인권침해조사	11.29~12.13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	2	조사기획/ 국내협력	인권침해조사/국제협력	12.8~12.23

(3) 국제인권보호를 위한 외국 정부, 인권기구, 활동가 등과 협력체제 구축

위원회는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홍콩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 AHRC)의 협조에 따라 아시아지역의 인권침해사태에 대해 연대서한을 발송하여 해당 국가 정부에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연대활동을 지속하였다. 2003년도 인도 및 스리랑카 경찰에 대한 불법구금과 고문, 태국 체류 미얀마 이주 노동자에 대한 탄압, 몽골 토지압류 사건 등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총 14건의 연대서한을 발송,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연대사업에 동참하였다.(표 2-6-6 참조)

2002년에는 70명이 넘는 인권활동가와 정부인사, 국회의원 등이 위원회를 방문한 반면 2003년에는 아·태지역은 물론 유럽,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인권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170여 명의 외국인들이 위원회를 방문하여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위원회 사업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표 2-6-7 참조)



<표 2-6-6> 국제 연대서한 발송 현황

순번	사건명	서한내용	수신자
1	인도네시아 아체(Aceh) 시민들에 대한 군대의 총격사건	사건 진상의 조사, 정부대표단에 대한 재고 및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 등	인도네시아 대통령
2	스리랑카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던 청년의 실종	피해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즉각 석방될 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취하며,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사건의 책임자를 법적·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	스리랑카 수상, 법무부장관, 경찰, 감사원장(IGP)
3	방글라데시 군대의 심각한 인권탄압에 대한 면책 위기	「공동면책령」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직접적으로 반하므로, 동 면책령이 통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	수상,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당수,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
4	스리랑카 경찰에 의한 살해 사건	진상 규명 및 관계자 처벌 등	수상, 법무부장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경찰 감사원장
5	인도, 아디바시인에 군·경찰 총격 사건	사건에 대한 사법적 접근 및 2001년 토지분배 약속의 이행	케랄라주지사, 수상, 환경 및 산림부장관
6	스리랑카 경찰의 고문 및 불법체포 사건	동 사건의 진상규명 및 고문방지협약(스리랑카 Act. no. 22)에 따른 관련 경찰의 법적 조치 촉구	수상, 대통령, 검찰총장, 경찰청장(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표현)
7	말레이시아 경찰구금 시설 내의 고문 및 사망 사건	조사 개시 및 정부가 시민적및정치적권리협약 및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희망	말레이시아 국가인권위원회
8	네팔 군대에 의한 고문 사건	경찰에 의한 고문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 및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고문을 범죄로 인정하도록 촉구	수상, 법무부장관, 네팔주제 유엔대사, 경찰청장
9	태국 이주노동자 추방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던 420인의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에게 대한 해고 및 추방에 대하여, 이들에 대한 법적보호조치를 촉구	수상, 국가인권위원회, ILO지방사무소
10	몽골 울란바토르 시장의 토지 압류 사건	새로 발효된 몽골의 토지사유화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부 가정에 토지 압류조치가 이루어진 데 대해 법적조치를 희망	수상, 울란바토르시장
11	인도 경찰에 의한 고문	살해사건에 대해 친척 및 이웃주민 11명이 경찰에 의해 구타, 고문, 성적학대 등을 당한 사건으로 관련자 처벌, 적절한 의료지원 및 기본적 인권과 자유보장을 촉구	대통령, 수상, 타밀나두 주 수상, 타밀나두 주 내무부장관
12	인도 경찰에 의한 소수부족민 고문 사망사건	인도 경찰은 아디바시(Adivasi) 부족민인 피해자를 절도혐의로 체포하고 고문한 후 의료조치 없이 방치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사, 피해자에 대한 조치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등 촉구	Madhya Pradesh 주 수상
13	스리랑카 경찰의 불법적 체포 및 고문 사건	혐의가 불분명한 스리랑카인 3명이 와타라 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 고문을 받은 사건의 조사, 관계자처벌, 고문방지 및 스리랑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존중 촉구	스리랑카 수상, 법무부장관
14	터키 인권활동가에 대한 정부의 위협 문제	터키의 여성인권운동가에 대하여 경찰이 신체적, 정신적 협박 및 다수의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음, 사건의 진상규명 및 적법한 사법절차를 촉구	터키 법무부장관





<표 2-6-7> 국외 인사의 위원회 방문 현황

단체명	일시	방문목적	방문자	비고
태국 상원의원	2003.1.27	인권위 활동과 한국의 인권보장 상황 파악	살로피탐 상원 인권위원장 등 10명	
영국 외교부	2003.2.4	사형제도 폐지문제 논의	Peter Hodhkinson 영국 외교부 자문위원 등 3명	
국제이주기구	2003.2.11	외국인 노동자 관련 인권위 정책 등 논의	Yorio Tanimura 아태자문관 등 2명	
미국 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연수단	2003.2.12	한국의 노동자(외국인 포함) 인권상황 및 인권위 정책 등 논의	Raahi Reddy APALA 회원 등 5명	
일본 아동권리협약 종합연구소	2003.3.4	인권위의 아동권리 정책 논의 및 정보교환	기타 아키토 와세다대 교수 등 8명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에 관한 2003년도 국제회의 참가자	2003.3.13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에 관한 오찬 간담회	James Reilly 등 19명	
일본 부락해방인권연구소	2003.4.28	한국인권여행 참가자 위원회 견학	소장 도모나가 등 40명	
국제엠네스티	2003.4.28	국내 및 아태지역 인권상황 논의	국제집행위원(아태 담당) 등 3명	
아시아인권위원회	2003.5.19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및 협력방안 논의	Mr. Basil Fernando 대표 등 2명	
아시아재단	2003.5.20	인턴십 지원자 활용방안 논의	Ms. Ardith Betts 장학프로그램국장 등 2명	
버마정치범을 위한 지원연합(AAPP)	2003.6.11	현재 미얀마사태 및 민주화 노력에 관한 논의	미얀마 민주활동가 부찌 등 5명	
유네스코 아태지역 국제이해교육원	2003.7.19	인권위 활동상황 및 한국 인권교육활동 파악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장 및 각국 참가자 40여 명	
국제엠네스티 등	2003.7.25	ICC 로마규정 이행 관련 한국 및 인권위 활동 파악	조나단 오도노후 등 13명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2003.8.6 ~ 8.10	2005년 세계국가인권기구회의 개최, 직원교류 등 협력방안 논의	사무국장 등 2명	
미국 뉴저지주 한인회	2003.8.22	미국실태 및 뉴저지주 제도 소개 및 인권현안 논의	뉴저지주 시민권위원 이건웅 등 2명	
일본 휴라이츠 오사카	2003.8.27	한국인권현황과 인권위 주요활동 이해	미노루 마에가와 기획실장 등 15명	
미얀마 민주활동가	2003.10.22	미얀마 민주화, 국제연대, 외국인노동자 인권현안 논의	민주활동가 띠미웅판	
미국 인디애나법대 교수	2003.12.9	위원장 면담, 인턴십 파견 논의	에드워즈 교수	
아시아민중진보센터	2003.12.9	지학순 평화상 수상단체 (아시아민중진보센터) 위원장 면담	제네신부(전집행위원장) 센디코니(사무국장)	
계		19회	175명	



(4) <국제인권조약국내이행자료집> 증보 발간

위원회는 2002년에 국내 최초로 <국제인권조약국내이행자료집>을 발간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 자료집은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등 유엔의 6대 인권조약에 대하여 국내 이행 관련 각종 문서를 총 6권(3,200쪽)에 담은 것으로 이는 조약별 정부보고서, NGO 보고서, UN 최종평가서, 요약회의록, 특별보고관, 실무그룹의 보고서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3년에는 2003년 아동 및 인종 관련 유엔 조약감시기구 심의를 통해 생산된 새로운 문서, 여성 관련 제5차 정부보고서 및 개인통보제도, NGO 보고서 추가문서를 모아 증보판(1권)을 발간하였다. 또한 기존 자료집 수록문서 중 영문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은 추가 번역하여 기존 조약집의 부록으로 발간(총 6권)하였다. 이 증보판 및 번역판은 기존 자료집을 배포하였던 국내 인권시민단체, 관계 정부부처 및 인권 강좌가 개설된 대학 등에 추가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며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제3절 평 가

2003년도는 위원회가 국내의 다양한 인권현안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UN의 권고에 따라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해로 인권활동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공동협력사업을 체계적인 틀 속에서 실시하였다.

그 일환으로 ‘민간경상보조금사업’ 및 ‘시민실천프로그램개발 용역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소외계층 및 소수자 인권 보장 분야에 시민운동을 활성화시키고, 국민의 인권의식을 확산시키는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상반기에는 부산, 광주, 전주 및 대전 지역의 인권 시민단체들과 순회간담회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인권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단체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 하반기부터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정책결정자들이 현장감 있는 인권정책 개발과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소외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이 처한 인권취약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다. 그리고 지역단체 활동가에 대한 ‘인권교육 강좌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여 지역 인권단체 활동가의 실무능력을 함양시키고 위원회와 상호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민간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사업과제 선정시 신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 보완했다. 또한 민간 보조 및 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기간의 부족과 현장 모니터링 미흡 등은 향후 사업추진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인권시민단체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인권정책 입안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상설 시스템 구축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국제적으로 2003년도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출범,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보호를위한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의 발효, UN인권위원회의 대북결의안 채택,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문제, 장애인권리협약의 성안문제 등이 새로운 공동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2003년은 위원회가 이러한 국제 인권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위원회 설립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다양한 국제회의 참가와 외국 국가인권기구 및 국제인권단체 상호방문과 인적 교류 등을 폭넓게 전개하여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국제 교류와 협력 기반을 구축한 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매년 개최되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하여 대북한 결의안 채택, 이라크 전쟁, 발전권·환경권·주거권 등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권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내 인권단체와 학계에 전달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의 권고안에 대한 정부 이행상황 모니터링, 장애인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국제 NGO 단체가 주관한 회의에 참가하여 상호 정보교환 및 국제 인권 현안



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하겠다.

또한 2003년에는 외국 국가인권기구와 국제인권단체들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위원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위원회의 몽골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APF 사무국장 방한과 위원회 직원의 APF회원국 인권위원회 연수와 교류사업을 통해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와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송출국 주한대사 초청간담회 개최, 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촉구 연대활동 참여 등 위원회의 활동영역을 한층 넓혔다. 특히 위원회의 국제인권자료집 발간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국제인권조약 국내이행자료집>은 유엔 조약감시기구의 심의자료 등 유엔 문서를 국내에 번역·배포함으로써 유엔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인권 정보의 다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 좀더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범세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뿐 아니라 인권단체와 교류협력을 통해 인권옹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인권 현안을 향후 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한국의 인권기준을 국제인권기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 과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2004년 9월에 열리게 되는 세계인권기구 대회와 APF 연례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부응할 수 있는 위원회 역할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1절 개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정보 서비스 제공, 진정상담 및 접수처리의 자동화, 전자결재 시스템, 지식관리 시스템, 문서관리 시스템 등을 통합 운영하여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인권종합정보시스템¹⁾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인권자료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권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분석하여 보존함으로써 위원회 직원들의 조사·연구 업무 활동을 지원하고, 인권 관련 연구자 및 시민사회단체, 일반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2절 중요 추진실적

1. 인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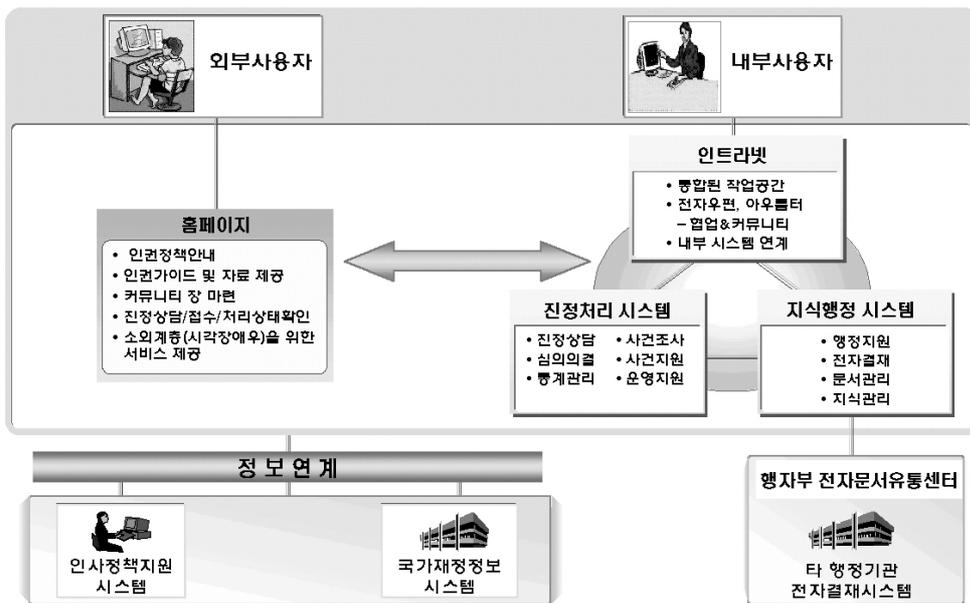
인권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첫째, 인권 관련 진정처리 서비스 창구의 일원화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인권 협력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정보기술(IT)을 통한 위원회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셋째, 국민의 입장에서 쉽고

1) 개발기간 : 2002.11.11~2003.5.31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인권종합정보시스템은 'One-Click 인권행정 정보화 구축'을 목표로 아래 <그림 2-7-1>과 같이 구성되어 홈페이지, 진정처리, 전자결재, 문서관리, 지식관리, 행정지원 시스템 등을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히 전자결재 시스템은 우리나라 국가기관으로서 가장 먼저 「신사무관리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림 2-7-1> 인권종합정보시스템 구성도

(1) 홈페이지/인트라넷

홈페이지는 인터넷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국민,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 이해 관계자들이 인권이라는 주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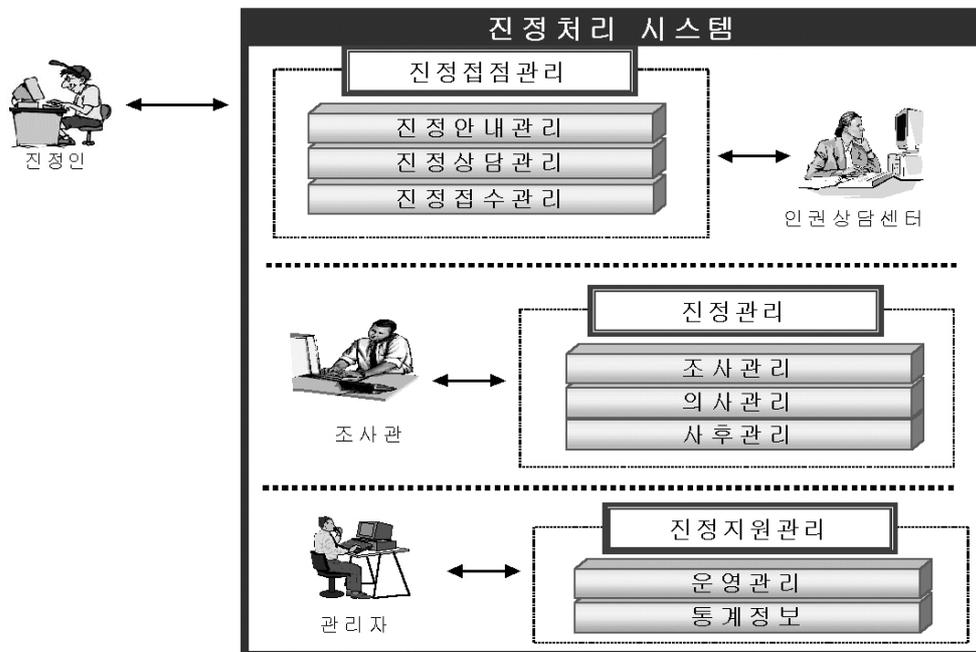


인트라넷 개발로 진정처리, 행정지원, 전자결재, 문서관리 및 지식관리 시스템 등의 정보를 단일창구(One Point Access)로 제공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 활용 능력과 생산성을 극대화하였다.

(2) 진정처리 시스템

진정처리 시스템은 인권상담 및 조사 및 구제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위원회의 진정처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진정처리 시스템 <그림 2-7-2>를 통해 정보화, 지식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내외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림 2-7-2> 진정처리 시스템 구성도





(3) 지식행정 시스템

지식행정 시스템은 전자결재, 문서관리, 지식관리, 행정지원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결재 시스템은 위원회내에서 운영되는 업무연락, 기안, 보고문서, 메모, 파일 등의 정보를 컴퓨터를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행정사무의 생산성을 높였으며, 진정처리, 지식행정 시스템의 업무흐름과 연계하여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모든 결재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둘째, 문서관리 시스템은 위원회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 및 자료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데이터의 안정적 보관을 보장하며, 중앙 집중적 보안관리 및 권한설정을 통한 체계적인 문서관리와 부서간 정보공유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였다.

셋째, 행정지원 시스템은 부서별 또는 업무담당자별로 분산되어 있던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업무처리 과정을 표준화하여 업무보고 및 지시사항, 국회·예산 관련, 회의실·배차신청, 당직보안관리, 일상감사, 인권교육관리 등의 업무를 전산화하였다.

넷째, 지식관리 시스템은 위원회의 지식경영을 위한 제도 및 문화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자료 및 산출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모든 직원이 활용하도록 하였다.

(4) 인권종합정보 시스템 확대 사업 추진

인권종합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은 2003년 5월에 완성된 진정처리 시스템을 확대 개발하는 사업²⁾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진정상담, 사건조사, 심의의결 등 일련의 진정처리 업무에 대한 처리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성된 자료의 활용

2) 개발기간 : 2003. 11. 26 ~ 2004. 3. 25



요구가 증가되어 시스템 확대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가적인 기능개발 및 관련 시스템 연동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이루며, 자동통계 도구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개선하였다.

한편, 인권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의 확산과 쉽고 편하게 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 사이트를 구축³⁾하고 있다. 사이버인권교육시스템의 콘텐츠 구축 내용은 <표 2-7-1>과 같다.

<표 2-7-1> 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 콘텐츠 내용

구분	콘텐츠 내용	교육대상자
대외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동화 2편(<엄마, 엄마>, <흰둥이네 할머니>) • 인권길리잡이 3권(검찰편, 경찰편, 교정편) • 우리교과서의 인권이야기 • 기타 인권교육책자 원문 	어린이 공무원 교사, 학생 국민
대내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권협약 과정 6강 • 국민기본권 이해 과정 2강 	위원회 직원

2. 인권 정보자료 서비스 체제 구축

(1) 장서개발 및 자료조직

2003년 2월 18일 1차 인권자료운영자문단 회의를 시작으로 총 5회의 인권자료운영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자문단에서 결정된 장서(藏書)개발정책을 바탕으로 하여 직원의 추천 및 사서들의 수서업무(Acquisition Work)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선정함으로써 자료의 전문성,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노력

3) 개발기간 : 2003.10.31~2004.2.28





하였다.

인권전문도서관으로서의 균형 있는 장서구성을 위하여 법령, 제도, 정책, 교육, 연구 등 각 분야에서 생산된 인권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수집하였다. 특히 단행본의 경우 인권 전문도서의 확충을 위하여 국제기구 발간자료와 일본 법학도서, 인권 관련 해외 박사학위논문 등을 구입하였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발간하는 연속간행물의 수집을 강화하였다.

영상자료는 국내 독립 다큐멘터리와 함께 인권 관련 일반 상업영화 DVD와 방송사 제작 프로그램 중 인권 관련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구입하였다.

2002년에 입수한 자료를 포함해서 9,000여 종의 자료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분류표, 편목규칙(編目規則), 별치기호(別置記號) 등 기본적인 자료조직지침을 확정하고, 이 지침에 따라 단행본, 연속간행물, 매체자료 등의 ‘서지(書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서지 데이터베이스는 내부 인트라넷 및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인터넷에서 인권자료실 소장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자료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권주제용어집’작성 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에는 인권주제용어 1차 수집을 마쳤다.

<표 2-7-2> 인권자료실 장서 현황

구 분	예 산		수량 (종)
	국 내	국 외	
단 행 본	국 내		7,067
	국 외		2,144
영 상 자 료			388
연속 간행물	국 내		151
	국 외		63
전자 정보원	국내의 법률정보		2
	국내의 전자저널		3



(2) 인권자료실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2003년 6월 1일부터 인권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료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실 소장자료 ‘원문복사서비스’를 시행하였다. 외부 이용자가 인터넷(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인권자료실 ⇒ 소장자료검색 ⇒ 원문복사 신청)을 통해 인권자료실 소장자료 중 필요한 자료를 신청하면, 저작권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복사하여 우편, 팩스, 메일 등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자료실에 새롭게 입수되는 연속간행물과 단행본을 소개하고, 한주간의 인권정보 동향과 인권 관련 학술행사를 안내하는 ‘메일링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매주 1회씩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인권자료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 대상 자료이용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자료실의 소장자료 활용방법과 구독중인 웹 데이터베이스 사용방법을 소개한 교육용 책자 <인권자료실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다.

인권자료실을 홍보하고 외부 이용자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곳에서 찾는 인권정보 - 인권자료실로 오세요’라는 주제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열린 인권자료실’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의 자료관리 담당자와 간담회를 통해 인권자료실 이용 활성화 및 효과적인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인권자료실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생하는 <도서관계> 등의 전문잡지와 신문 등을 통하여 인권자료실을 소개하고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인권자료실에서는 2003년 한 해 동안 총 16회에 걸쳐 직원 대상 영화 상영회와 일반인 초청 상영회를 개최하여 인권 관련 영상물을 소개하고,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일반인들도 인권자료실에 방문하여 자료실 소장 영상자료를 볼 수 있도록 자료실 내에 영상자료실과 개인용 영상자료 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3절 평가

위원회 출범 이후에 시작된 ‘인권정보화 서비스 기반구축 3개년 계획’에 따라 1차적으로 세운 목표가 달성되어 우리 위원회의 정보화 수준이 타 국가기관의 수준까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서비스 제공, 위원회 활동 홍보, 인권과 관련된 각종자료 및 정보 제공, 인권정책 제안창구 및 인권모임 개설 등으로 대국민 인권서비스를 향상시켰다. 또한 전자결재, 진정처리, 지식관리, 문서관리, 전자우편·팩스 등을 활용하여 위원회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꾀하였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발간한 인권 동화, 공무원 인권교육 교재, 영상자료 등 인권교육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인권침해 및 차별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아직은 개발단계이지만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사이버 인권교육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상반기 때 구축 완료된 진정처리 시스템의 확대사업은 상담 및 조사기능을 보강하고 특히, 통계기능을 강화하여 우리 위원회 주요업무인 진정상담 및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자료실에서는 2003년에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인권 주제 분야를 중심으로 장서개발을 하였으며, 서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효과적인 교류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열린 인권자료실’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인권자료실을 외부에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서지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가 자료를 검색할 때에 적합한 문헌을 검색할 수 있도록, 이미 구축된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위원회 발간자료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인권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더욱 풍부한 인권 관련 원문정보를 제공하고 팸플릿, 소책자, 세미나 자료 및 DVD 또는 CD 등 비도서자료에 대한 ‘자료조직세부지침’을 작성할 계획이다.

제1절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1. 추진배경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합리한 차별관행이나 제도, 정책 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참여정부는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학벌, 비정규직 등 5대 차별에 대한 시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대한 침해행위와 아울러 성별 등 18개 사유에 의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차별의 개념이나 유형, 그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위원회는 좀더 적극적인 차별 시정을 위하여 「차별금지법(안)」(이하 ‘법안’) 제정에 관심을 가지고 출범 초기부터 외국의 차별금지 관련 법이나 각종 국제기준에 대하여 검토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2003년 중점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사업을 선정하였다.

2. 주요 추진실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차별에 대한 개념정립과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차별사유나 영역, 구제수단 등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우선 위원회는 참여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장애 등 5개 분야뿐만 아니라 현재 위원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8가지 사유에 대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교육기관의 이용 등 3개의 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차별금지의 영역을 범주화하고 불합리한 차별의 내용들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동 법안에는 차별의 개념, 차별행위의 정의 및 각 분야별 차별금지의 내용 및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의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위원회는 2003년 1월 28일 인권위원,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자문기구로 결성하여 차별금지의 범위와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등을 진행시켰다. 또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추진위의 결정에 따라 추진위 일부 위원들로 구성된 ‘조문작성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법안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안 제정에 있어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추진 단계에서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는 법안의 제정과정 자체가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중요한 일이다. 우선 ‘차별금지법제정 국민제안창구’를 개설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학계나 시민단체 등을 추진위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차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아울러 외국의 차별금지 관련법이나 정책 등을 폭넓게 검토하여 법안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자 하였다.



3. 평가 및 향후계획

「차별금지법」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차별유형의 구체적 적시, 쟁점 사항 검토, 구제수단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행정부처와 협의과정이 장기화되면서 2003년의 법안 제정 일정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차별 사유별로 사회적 합의 수준이 상이한 만큼 각각의 사유별 차별행위와 영역별 차별금지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 작업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차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효과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검토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제2절 태스크포스팀 운영(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비정규직)

2003년 1월 7일, 전원위원회의 제3차 워크숍에서는 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인권 현안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2003년 중점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수행팀(Task Force Team, 이하 ‘TFT’)을 운영하기로 하고 우선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비정규직 관련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각 과제별로 상임위원을 팀장으로 하여 비상임위원, 외부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팀을 구성, 한 해 동안 운영하였다.

각 TFT의 주요 사업 과제는 사안별 실태조사, 외국 사례 연구, 기존 법제 비교연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과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공동연구 또는 워크숍 실시, 공청회, 청문회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이러한 연구 활동과 더불어 관계 기관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현재 2003년 12월에 완료된 사회보호법 TFT를 제외하고 국가보안법 TFT와 비정규직 TFT는 2004년 사업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1. 국가보안법 TFT

(1) 추진배경

국가보안법은 그 운용과정의 반민주성 및 인권침해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내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 인권NGO 등으로부터 수차례의 걸쳐 개폐 권고를 받은 법이다.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 계승’이라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55년 이상 존속해 온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법률로 법 존재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접근방법은 ‘사실상의 국가’이자 유엔 회원국이라는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화적인 남북관계 정립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관련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인권 현안 문제 중 하나이자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근원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의 연혁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모든 논의들을 다시 한번 조명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2) TFT 추진활동

국가보안법 TFT는 2003년 3월 3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3년말 까지 총 12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팀원 발제 및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 회의에



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개략적으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의 개정연혁 △국가보안법의 연혁과 개폐론 검토 △국가보안법 관련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 △국가보안법 적용례 (제7조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제적 시각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처벌 곤란 부분에 대한 검토 △국가보안법과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의 관계 △국가보안법 개폐 불가 입장 및 한총련 이적성 관련 문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대처방향 등이다.

(3) 평가 및 향후 계획

초기에는 1년 정도 TFT를 운영하면 소기의 결과물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방대한 업무량과 기타 여건상 추가적인 활동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 동안 팀 내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발제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권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는 점은 국가보안법 논의를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2004년 상반기 중에는 국가보안법 TFT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며 구체적 계획으로는 공청회를 통해서 국가보안법 존치론 및 폐지론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수렴하고, 또한 TFT 운영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2. 사회보호법 TFT

(1) 추진 배경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이중 처벌 및 피보호감호자 처우 등 집행현실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제정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을 2003년 주요 인권 현안으로 선정하고, 유현 상임위원을 팀장으로 하여 비상임위원 1인과 외부 전문가 5인으로 TFT 팀을 구성,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연구 검토를 시작하였다.

(2) 주요 활동 사항

2003년 2월 1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동년 12월 6일까지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보호법상 국내의 각종 연구자료 및 판례, 보호감호제도 관련 외국의 입법례, 외국의 보호감호 관련 실태, 법무부와 청송보호감호소의 피보호감호자와 관련된 각종 처우 실태 자료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하였다.

TFT의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003년 5월 23일부터 청송제2보호감호소 감호자 500여 명이 사회보호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농성이 장기화함에 따라 피보호감호자들의 피해가 우려되었으며, TFT의 연구와 관련하여 당시 보호감호소에 대한 상황파악을 위해 동년 6월 3일 TFT의 방문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피보호감호자들의 주된 요구사항은 물론 보호감호소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위원회는 객관적이며 실제적인 분석과 판단을 위해 보호감호제도 및 그 집행현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기로 하였고, 2003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송보호감호소 현장방문에 의한 피보호감호자 및 보호감호소 교정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 기록조사, 전반적인 시설 조사를 통하여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판단의 실태, 수용시설 상태, 수용생활, 피보호감호자 교육 현황, 작업 환경, 외부교통, 진료시설 및 운영과 생활과 처우 면에서 보호감호제도의 형벌에 대한 보안처분제도로서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집행현실에 있어 인권침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TFT는 1년 가까운 심층적 논의 및 검토, 보호감호소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03년 12월 보호감호제도 및 집행실태 등에 대한 의견을 위



원회에 제출하였다.

(3) TFT활동 결과

TFT에서 제출한 의견과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회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전원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2004년 1월 12일 국회와 법무부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폐지를 통한 보호감호제도 폐지를 권고하기로 하였다.

권고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보호법은 도입 목적과 그 과정에 있어 정당성이 결여되었으며, 오늘날 보안처분의 본질에서 볼 때 형벌가중규정과 더불어 보호감호를 부과하는 헌법 제13조 이중처벌금지에 반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보호위원회의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감호면제 등의 결정은 헌법 제12조제1항 적법절차, 제27조 헌법상 보장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며 사회보호법이 원칙적으로 행형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헌법상 과잉처벌금지에도 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범위험성 예측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제도가 결여된 것은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9조와 궁극적으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에 부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보호감호 집행현실에서 볼 때 보호감호처분이 그 목적에서 벗어난 과잉처벌로 판단되며 청송보호감호소의 위치, 수용생활, 의료, 교육, 재사회 프로그램 등 현실적 처우와 생활의 실태는 보호감호제도 본래의 취지는 물론, 헌법 제10조 및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0조 등에 반하여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제도로서의 의미를 이미 상실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제도의 개선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것이 인권보호라는 국가의 책무에 부합되며, 보호감호제도 이외에 사회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치료감호제도는 별도의 대체법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3. 비정규직 TFT

(1) 추진배경

최근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고용관계에서 시간제·계약제 등 다양한 비정규 고용형태가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조건은 임금·수당·사회보장제도·각종 복지혜택 등에 있어 정규직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렇듯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당사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국내 소비위축, 노사관계의 불안 등 국민경제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권 문제의 하나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2003년 1월 21일 비정규직 TFT 팀장 유시춘 상임위원을 비롯한 인권위 내부 직원들의 첫 예비회의를 시작으로 외부 전문가 자문청취를 포함, 총 3회에 걸친 예비회의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TFT의 주요 활동방향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2003년 출범한 새 정부 역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 내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 활용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공공부문 스스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모범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전파한다면 우리 사회의 노동영역에 있어 친인권적인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TFT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 5인을 선정하였다.



(2) 주요 활동내용

위원회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TFT 활동계획으로 청문회와 토론회 등은 실태조사와 연관하여 추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우선 2003년 3월 19일 서울지하철공사, 근로복지공단, 공공연맹 관계자 3인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에서는 서울지하철공사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 비정규직 고용·관리 현황 및 운영방식, 용역·파견 비정규직 고용현황, 임금·상여금·수당 등 노동조건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있었으며, 공공연맹 관계자로부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악용사례 등을 청취하였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행정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교육분야 등 고용기관의 법적 지위, 기관의 고용 및 운영방식 등 그 대상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고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의를 필요로 하였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TFT의 문제 해결방안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활발한 특정 비정규직 직종 및 집단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지만, 결국은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하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003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업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를 선정,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하였다. 실태조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 대한 양적 조사와 함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산하 공기업·투자기관,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의료·가스 부문 등 총 38개 사업장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주도한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조달청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시에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의 구조조정 관련 지침, 비정규직 관련 각종 판결, 외국의 비정규직 보호정책 등을 조사·연구하였다. 실태조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내용, 조사 규모 및 대상 등에 대해서 연구진과 TFT가 지속적으로 공동토의를 실시하였다.





(3) 평가 및 향후 계획

비정규직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완전하지 못한 현실에서, 위원회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각종 조사와 연구, 논의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비롯해, 시민사회·학계·관계자들과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보호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3절 북한인권연구팀 운영

1. 추진배경

2003년 4월 16일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유럽연합이 상정한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됨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동결의안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국회와 국내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무부 및 종교자유위원회의 전세계연례인권보고서 중 북한인권보고서,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의 북한인권과 재외탈북자에 관한 보고서,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의 보고서 및 국제회의 개최 등 북한인권과 관련한 활동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원회에 북한인권에 대한 진정사건이 접수된 것을 비롯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북한인권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와 국내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되었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방법 및 해결방안 등 북한인권사업이 인권의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지난 2003년 4월 28일 제40차 전원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비상설기구인 ‘북한인권연구팀’(이하 ‘연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북한인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2. 활동 사항

연구팀은 첫째,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학술문헌을 비롯하여 유엔, 유럽연합, 미국 등의 자료, 그리고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발간자료 등을 포괄적으로 수집·축적하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엔에 제출된 북한의 국가이행보고서, 북한인권에 대한 유엔의 권고내용, 미국 국무부 연례인권보고서, 미국 종교자유위원회의 연례보고서, 앰네스티의 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서, 북한인권시민연합 및 좋은벗들의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하기 위해 총 3회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담회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2003년 6월 5일 북한인권 관련시민단체 간담회에서는 ‘북한인권의 성격과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 ‘협력적 적대관계에서의 북한인권’ ‘북한인권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제 및 토론시간을 가졌고, 2003년 7월 30일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북한인권 논의에 대한 문제제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적인 이해와 전략적 접근’ ‘북한 핵문제와 북한인권’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북한인권 전문가를 초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2003년 10월 17일에는 북한의 식량난과 재외탈북자의 인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북한인권문제와 대북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북한인권과 국제사회의 동향’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지정토론을 하였다. 각 토론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위원회는 2003년 6월 5일 위원회 11층 배움터1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북한인권에 관한 입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목적으로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좋은벗들, 북한인권시민연합, 평화네트워크 외에도 15개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하였다.

먼저 좋은벗들은 ‘북한인권의 성격과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좋은벗들은 북한인권 낙후의 원인을 10년간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으로 보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인도주의적 원칙의 접근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의 입장과 시각으로 북한 주민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한국정부 및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협력적 적대관계에서의 북한인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북한인권을 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분야별 모든 인권단체와 유기적 협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네트워크는 ‘북한인권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북한의 인권문제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맞물려 악화되어 왔으며 유엔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평화와 인권이 선순환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김정일 체제를 타도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대상으로 볼 것, 식량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무기화’시키지 말 것,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적대적 대립관계의 완화에 대한 합의,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는 여러 시민단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며, 향후 북한인권연구팀의 운영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2)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 간담회

위원회는 2003년 7월 30일 위원회 11층 배움터1에서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북한인권문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북한인권 문제 제기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 및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 북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북한인권을 논의함에 있어 정치적 차원의 접근 지양, 북한인권 관련 객관적인 관점 유지, 인권상황의 점진적인 개선 △북한인권문제의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국제적 압력, 남북관계, 북한정권의 개혁 개방과 같은 변수들이 있음 △북한이 유보하고 있는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 △북한인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체제 구축 △유럽연합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체제 구축 △탈북자문제 등의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며 탈북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3) 식량난과 탈북자 간담회

위원회는 2003년 10월 17일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한 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으로 위원회 11층 배움터1에서 ‘북한의 식량난과 재외탈북자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민족복지재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참석하여 발제를 하고, 북한이탈주민 2명이 증언을 하였으며,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문화방송 PD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북한인권문제와 대북지원’에 대해 발표한 한민족복지재단은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개선은 외부의 압력으로 이루어져야 할 성격이 아니라 북한의 경제 부흥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사회에서 교류를 통한 의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민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인권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및 러시아 내 탈북자의 수 파악 등 탈북자들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북한 인권과 국제사회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북한 인권을 거론할 때 인권의 보편성에 근거하여야 하며 장기적 전략에 근거한 단계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정치적 권리에만 치중되어 있던 북한인권 문제를 식량권, 여성 인권, 아동인권 등으로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었고, 국민들이 북한문제에 관하여 인권적 측면에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연구팀에서는 UN대북인권결의안 채택, UN인권위원회 식량권 특별보고관의 역할 및 활동, 북한이 UN에 제출한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및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정부보고서, 2003년 11월 20일 미국 상하원 양원에 제출된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The Hidden Gulag> 등을 분석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3. 평가 및 향후 계획

2003년은 위원회가 북한인권 연구사업을 시작한 첫 해로 기존연구 분석과 현황파악, 그리고 국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데 주력하였다. 북한인권 문제는 한



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장기적이고도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위원회는 2004년도에 북한인권연구팀을 상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유엔·유럽연합·미국·일본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중국 및 북한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공청회, 청문회 및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북한인권에 관한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공식적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유엔 인권위원회 및 인권고등판무관실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모니터링함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인권의 시각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유엔인권위원회 특별절차 등 국제인권체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내에 국제인권체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아직까지 초기단계인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관계당국 및 관련 정부부처의 원활한 협조 여부가 중국 및 북한 방문의 성사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4절 지역순회상담 및 홍보

1. 원거리 지역의 인권상담 접근성 제고

지역사무소가 없는 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2003년 5월 13일부터 부산, 광주, 전주, 대전 등 4개 도시를 순회하며 각 도시에 임시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사관과 지역 변호사들이 직접 시민들을 만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및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였다.



**<표 2-8-1>** 지역순회상담 전체 일정

지 역	기 간	비 고
부 산	5.13(화) ~ 5.14(수) [2일간]	5월 셋째 주
광 주	5.20(화) ~ 5.21(수) [2일간]	5월 넷째 주
전 주	5.22(목) ~ 5.23(금) [2일간]	
대 전	5.27(화) ~ 5.28(수) [2일간]	5월 다섯째 주

2. 지역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장 간담회 개최

지역 시민단체 간담회는 모두 99개 인권시민단체들과 각 지역 인권현안 및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모임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검찰·경찰·군부대·구급시설·보호시설 기관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주요 업무 및 활동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위원회 조직과 사업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으나 다양한 단체 및 기관들이 함께 참석한 관계로 집중적인 논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지역 및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쟁점 중심으로 논의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각 지역순회 때마다 위원회의 상임위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총 74개 경찰관서의 간부경찰 910명에게 ‘경찰활동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 등에 대하여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3.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홍보 활동

2003년에 시범적으로 부산, 광주, 전주, 대전지역 4개 지역의 대도시를 방문하며 인권



상담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동안 총 19개 신문과 11개 TV 방송 그리고 11개 라디오 방송이 위원회의 첫 번째 지역순회행사를 적극 보도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져 왔던 위원회의 기능과 활동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당면한 인권 현안 문제에 대해 소홀하기가 쉽다. 앞으로 위원회는 지역사무소가 설치될 때까지 지방에 거주하는 원거리 지역시민들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지역시민단체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체제 구축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순회상담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4. 평 가

지역순회 인권상담 및 홍보활동은 수도권지역에 비하여 위원회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위원회의 특별기획사업이다. 지역기관장 및 시민단체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각급기관과 시민들에게 위원회의 주요 업무와 활동내용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별·기관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지역인권운동의 활성화 및 인권위와 시민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련 기관의 인권 마인드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이번 지역순회상담을 통하여 향후에 지역 및 기관 등의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사전준비의 필요성과 지역의 관계기관장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인권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관련 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표 2-8-2> 지역순회 인권상담 및 교육·홍보 실적

구분	부산	광주	전주	대전	계	
인권상담 센터운영	일자	5.13(화)~5.14(수) 10:00~19:00	5.20(화)~5.21(수) 10:00~19:00	5.22(목)~5.23(금) 10:00~19:00	5.27(화)~5.28(수) 10:00~19:00	
	장소	부산시청2층 민원실 앞	광주동구 벤처빌딩 9층	덕진구청 민원실	대전시청 2층 전시실	
	상담	56건	35건	26건	25건	142건
	진정접수	9건	5건	3건	2건	19건
	방문자수	65명	40명	29명	27명	161명
기 자 간담회	일자	5.13(화), 10:30	5.21(수), 10:40	5.22(목), 10:30	5.27(화), 10:30	
	장소	광장호텔	무등파크호텔	리베라호텔	스파피아호텔	
	참석자	부산KBS 등 4개사	광주매일 등 16개사	전북일보 등 10개사	대전일보 등 7개사	37개 언론
시민단체 간담회	일자	5.13(화) 11:00~13:00	5.21(수) 11:00~13:00	5.22(목) 11:00~13:00	5.27(화) 11:00~13:00	
	장소	광장호텔	무등파크호텔	리베라호텔	스파피아호텔	
	참석자	민변부산지부 등 29개 단체, 41명	민변광주지부 등 25개 단체, 32명	전북평화인권연대 등 26개 단체, 41명	민변대전지부 등 19개 단체, 23명	99개 단체 137명
기관장 간담회	일자	5.13(화) 15:00~17:00	5.21(수) 15:00~16:30	5.22(목) 15:00~16:30	5.27(화) 15:00~16:30	
	장소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	광주시청 3층 상황실	전북도청 영상회의실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	
	참석자	부산지검 검사장 등 16명	광주지검 검사장 등 10명	전주지검 검사장 등 6명	대전시장 등 11명	43명
인권특강	일자	5.14(수) 14:00~15:30	5.20(화) 14:00~15:30	5.23(금) 14:00~15:30	5.28(수) 14:00~15:30	
	장소	부산지방경찰청 대강당	남부경찰서 회의실	전북지방경찰청 회의실	충남지방경찰청 대강당	
	강사	유 현 상임위원	박경서 상임위원	박경서 상임위원	유시춘 상임위원	
	참석자	간부경찰, 350명	간부경찰, 250명	간부경찰, 170명	간부경찰, 140명	910명
언론보도 및 홍보	신문	2개 부산일보 국제신문	8개 한국일보, 대한매일 광주일보, 무등일보 전남일보, 광주타임스 전남매일, 호남일보	6개 전북일보, 전북중앙 전북도민일보 새전북신문 전라일보, 매일전북	3개 대전일보 대전매일 충남일보	19개 신문
	TV	2개 부산KBS 부산방송	3개 광주KBS, 광주MBC 광주방송	3개 전주KBS, 전주MBC 전주방송	3개 대전KBS, 대전MBC 대전방송	11개 TV
	라디오	2개 부산KBS 부산MBC	5개 광주KBS, 광주MBC 광주CBS, 광주평화방송 광주교통방송	2개 전주MBC 전주교통방송	2개 대전KBS 대전교통방송	11개 라디오

제3편

인권보호·향상을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

- 제1절 인권정책업무의 체계적인 수행
- 제2절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친화적인
법령 및 제도의 실현
- 제3절 인권 보호 기능의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 제4절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체계 구축
- 제5절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협력관계의 활성화



제1절 인권정책업무의 체계적인 수행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마련

인권 상황을 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사안에 대한 시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관행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전반의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 같은 종합계획이 바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이다. NAP가 인권의 보호와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틀로 올바르게 정립되고 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이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국제인권기구는 인권 상황의 궁극적인 개선을 위해서 각 국가가 인권정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 일환으로 유엔에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여 각국어로 번역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5월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위원회'는 2001년 5월 한국정부에 대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6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각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는 국가인권기구들이다.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된 국가들에서는 국가인권기구가 기본계획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기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본계획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수립을 2004년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채택하고, 그 동안 인권 영역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각 국가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추진해 온 정책 및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이다. 국민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야말로 NAP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협의과정은 NAP에 대한 신뢰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이를 만든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 각 부문에서 많은 기본계획들을 수립하였으나 이들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 계획들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우선 인권상황 개선에 기여해 온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수립을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한다. 추진기획단에서는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각 권리 영역에서의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국민의식조사와 전문가 의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사들은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조사 설계를 통하여 실시될 것이다.

NAP 수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 바탕을 둔 실현 가능한 계획안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 정부 각 부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은 필수 조건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행정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의 목표와 계획을 통해 2004년내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그 세부계획은 각 국가기관에서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2.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법에 차별을 금지하는 몇몇 조항들이 있었지만 선언적 의미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 관행이나 제도 및 정책 등을 바꾸기 위해서는 각종 차별의 형태 및 영역의 실정과 효율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수단 확보 등 법적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2003년 1월 28일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고, 2004년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선정하였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개념정립과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위원회는 차별의 개념 및 판단 근거의 정립과 관련하여 학계나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과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법률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조문화 작업을 거쳐 법률안 시안(試案)을 작성할 것이며, 이 시안에 대하여 학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법률안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차별을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2004년도에 입법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제정될 차별금지법이 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등의 18가지의 차별사유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평등이 구현될 수 있는 종합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3. 주요 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수행팀(Task Force Team) 운영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사회보호법 문제를 2003년도 주요 인권현안으로 선정하여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과제수행팀(TFT)을 운영해 왔다. 사회보호법 TFT의 경우 2004년 1월 13일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가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현재 보호감호제도의 집행 여건상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보호법 폐지를 통한 보호감호제도의 폐지와 치료감호제도 등에 대한 대체 법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2004년 상반기중에 국가보안법 TFT와 비정규직 TFT의 종합적인 연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반영하고 관련 부처에서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권고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보안법TFT의 경우 그 동안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통하여 축적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탐색하여 왔다. 향후에 국가보안법 존치론 및 폐지론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청문회 등도 실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위원회의 공식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비정규직TFT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동안 비정규직 문제를 어떠한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행정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교육 분야 등 조사대상기관의 법적 지위, 기관의 고용 및 운영방식 등 그 대상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고용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문제에 대해 차별, 노동권, 사회권 등 모든 각도에서 다시 분석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2004년도에는 ‘인간배아복제와 생명윤리’의 문제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새로운 과제수행팀(TFT)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배아 복제로 인한 예기치 못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생명윤리법」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배아복제는 원래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치료제 개발연구에 이용되어 왔으나, 현재 동물복제 및 인간복제로까지 이어짐으로써 인권침해와 생명윤리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복제를 위한 배아복제 연구 금지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질병치료를 위한 인간배아복제의 금지에 대해서는 국내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4. 북한인권 관련 사업

2003년 4월 16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정점으로 북한인권 관련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고조되었다. 위원회는 2003년 4월 28일 제40차 전원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회 내부에 비상설조직으로 ‘북한인권연구팀’을 구성하였다. ‘북한인권연구팀’은 2003년 한 해 동안 북한인권 관련 기존연구 조사 및 분석,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 간담회’, ‘북한의 식량난과 재외탈북자의 인권’ 등 총3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북한인권연구팀은 또한 현재 남한의 남북자기족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다.

위원회는 2004년도에 ‘북한인권연구팀’을 상시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첫째, 북한인권 관련 현안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둘째, 유엔·유럽연합·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활동과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후속과정 등을 모니터링하고, 북한인권 관련 국내 시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것이다. 셋째, 중국 및 북한 등을 현지 방문하여 재외탈북자의 현황 파악 및 당사국의 입장 등을 조사할 계획이





다. 넷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공청회 및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활동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국제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

또한 2004년 북한인권사업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국내외 북한인권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재외탈북자의 인권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북한인권 문제는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신중히 접근해 나아가야 할 위원회의 중장기 사업이다. 위원회의 북한인권연구사업은 현재 접근이 어려운 북한주민이나 재외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의 인권뿐만 아니라 국내의 북한이탈주민, 납북자가족, 납북후 귀환자의 인권문제도 포함하여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2절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법령 및 제도의 실현

1. 인권법령정비시스템의 구축

위원회는 2003년 한 해 동안 인권의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법령 및 정책들 중에 인권침해 또는 차별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법령 제·개정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인권침해와 차별 관련 법령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협력체계의 미흡 등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령 개선이나 침해 예방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령의 경우에는 2년간 단 1건의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표명이 있었을 뿐이다. 위원회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권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사전 통보하는 제도가 있으나 관계기관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현재 법령 제·개정안 검토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관련 행정기관과 유기적, 체계적인 협조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예방을 체계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법령정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선, 기존 법령 또는 제·개정 법령 중 중요 개선 대상 법령을 선별해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하고 필요시 해당 법령에 대하여 소관 부처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별 법령개선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들을 발간 배포하고,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조례·규칙 등의 개선을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야별로 법령 개선 사례, 연구자료 및 전문가의 학술자료 등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병행하고자 한다.

인권법령정비시스템의 구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개선노력을 제고시키고, 인권법령의 개선권고와 의견 표명이 실효성을 확보하며 유사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국제인권협약의 국내 이행사항 모니터링

위원회는 지구촌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법령과 정부기관의 정책이 더욱 능동적으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고, 국제인권협약의 국내 이행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는 대내적으로는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한국의 국민과 이 지역 안에 있는 외국인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인권 선진국가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 세계적인 인권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제인권협약 관련 판례, 문헌 등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인권침해·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과 국내법의 괴리를 좁혀 나가기 위해서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이행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특히 유럽 인권협약 관련 인권법원의 판례조사, 인권협약 관련 국제회의록 모니터링, 한국 가입협약 및 국제관습법과 국내법 비교 조사, 한국 가입 인권협약 정부보고서 내용분석 및 협약위원회의 지침·권고·결정 등 분석,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인권협약의 유보조항 및 협약의무이행을 어렵게 하는 법령의 분석 및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리하여 인권보장을 위한 국내법령 검토와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할 경우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검토기준과 대처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3. 인권상황 실태조사 체계화

2003년도 실태조사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의 연속성, 인권 현안, 지식기반 구축, 위원회의 필수업무 등 크게 4가지 원칙을 수립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업원칙에 따라 제안된 개별연구과제는 연구의 필요성, 적절성, 타당성, 효과 등을 중심으로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위원회’(위원장 박경서 상임위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결정되었다.

그러나 2003년 사업추진 및 수행과정에서 해결하여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2004년도부터는 이를 반영하여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우선, 실태조사 과제 선정시 위원회의 인권정책업무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구축한다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합과 동시에 인권 현안 과제의 시급성, 활용가능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가 전체의 인권 관련 업무와 밀접한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둘째, 실태조사 결과를 주요 인권문제에 대한 대표성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조사 계획단계에서부터 전국 또는 조사대상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실태조사 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제한된 인원과 예산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의거 전국단위의 주기적인 조사방식을 지향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중장기 계획은 그간의 연구수행 과제들에 대한 평가 및 2004년 위원회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 마련과 연계하여 수립할 예정이다.

제3절 인권 보호 기능의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 진정사건 조사·구제의 실효성 확보

그 동안 직원의 충원, 조사관 역량강화 및 조사업무 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해 온 결과, 2003년도에는 위원회 출범 초기와 2002년도에 비하여 진정사건 처리건수와 신속성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진정사건의 조사 및 구제업무의 효율성 강화, 권고와 의견 표명 등의 실효성 확보문제는 여전히 위원회가 풀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조사대상 범위의 확대, 조사방법 및 권고 유형의 다양화, 조사 및 구제업무의 표준화 등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이 있어





야 할 것이며, 구금·보호시설, 군대 등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방문실태조사를 통하여 이미 권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조사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재 위원회법 제2조제2호마목 및 제3호에 규정된 ‘다수인보호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조사방법 개선방안으로 현재의 서면조사 원칙에서 직권 또는 실지조사 등을 적절히 병행함으로써 조사·구제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셋째, 조사 및 구제방법의 다양화를 위하여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등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모델 등을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고자 한다.

넷째, 조사 및 구제 업무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유형별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판례 및 위원회 결정 사례를 분석하고 그 동안의 전문가 토론회 및 청문회 의견수렴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그 밖에 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중대한 인권문제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2~3인의 조사관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문제에 대한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고려하고 있다.

2. 지방사무소 설치 추진

전국 각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주고 지역의 주민들이 위원회에 쉽게 접근하여 인권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사무소가 필요하다.



2003년도 진정사건 3,815건 중 서울·경인지역이 1,398건으로 37%인 반면, 지방의 경우는 2,417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진정기관 또는 조사대상 기관인 검찰, 경찰, 군대, 구금·보호시설 등이 모두 전국 각지에 산재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의 신속성과 진정인들에 대한 신속한 방문조사 및 면전진정 접수를 위해 최소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광역별로 4개 대도시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참고로 미국의 고용기회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를 사례로 들면, 2003년 기준 1년에 약 3,720억원(한국의 19배)의 예산을 가지고 2,720명의 직원이 전국 51개의 지방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연간 8만여 건 이상의 차별 관련 진정사건들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법과 설치근거 법령인 직제령(대통령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지방사무소의 기능과 인력과 조직에 관한 전반적인 필요사항을 정리하여 지방사무소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에는 직제 소요정원을 신청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자 한다.

3. 인사·예산의 독립성 확보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기구에 의한 기본권 침해 내지, 기본권 보호의 실패라는 배경에서 태동되어 그 주된 업무를 “국가기구로부터의 인권 보호”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여타 국가기구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엔 총회가 지지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 Paris Principles, 1991)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에 대하여 한 장을 할애, ‘독립성’이야말로 국가인권기구의 존립 근거임을 천명하고 있고, UN 인권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를 평가함에 있어서 인사·예산상의 독립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





로 두고 있다.

따라서 ‘독립성’ 확보는 위원회의 설립 초기 단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 제정까지 3년여 동안 주된 관심 사항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정된 위원회법 제3조에는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독립성은 UN이 권고하고 있는 ‘독립성’의 수준과 위원회의 설립을 위해 노력한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수준과도 거리가 있어 설립된 지 2년이 넘는 지금도 끊임 없이 많은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인사분야에서 다양한 영역의 인재 확보가 어렵다. 위원회 업무 특성상 의료, 법률, 교육,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행정자치부 등이 조직 및 직원채용과정에 관여하는 현재의 국가공무원 기용방식으로는 필요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

둘째, 예산분야에서는 현재의 예산확보 방식으로는 업무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가 곤란하다. 위원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직무상 특별히 독립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처에 부여된 ‘예산요구액 감액시 독립기관장의 의견 제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인사와 예산의 예속은 국가기관에 대한 시정권고를 주된 업무로 하는 위원회 업무에 대한 실질적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남아공, 스페인 등 많은 국가에서 국가인권기구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과 직원채용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인도, 필리핀, 태국, 남아공 등에서는 헌법에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근거를 두어 국가인권기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설립과 권한의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제4절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체계의 구축

1.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위원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경찰, 검찰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인권 동화 등 인권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인권교육 강사 구성 및 운영, 인권교육 업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 왔다. 그 결과 법집행 공무원의 인권의식 제고, 인권교육의 인적·물적 여건 조성 등에서 많은 진전을 도모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인권교육의 체계화·종합화·효율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인권교육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2003년도부터 추진해 온 ‘인권교육발전5개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인권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인권교육발전 5개년 계획 관계자 워크숍,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조회, 기본계획 시안 검토를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인권교육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연도별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급학교·지역사회·직장·국가기관 등 각 영역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위원회가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 인권교육과정안’ 개발사업은 향후 교사, 학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시안으로 최종 보고





될 예정이며, 이 시안이 학교교육과정에 편입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권교육과정안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교육과정 해설서 및 용어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학교 정규과정에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자료를 순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교육모범사례 및 문예작품 공모의 확대를 통해 인권교육의 현장 적응성을 높이고 학교 인권교육의 조기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는 인권교육 강사들과 더불어 각급 학교의 교사, 경찰청에서 구성된 인권교육 강사,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및 인권관련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들의 인권지식과 감수성 제고를 통해 사회 각 부문에서 인권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3. 인권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의 극대화

위원회는 인권종합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다양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사이버인권교육 시스템 구축과 진정처리 시스템 확대 구축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인권자료실은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통해, 단체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인권 관련 장서 개발을 확대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인권자료실의 활용방법 등을 알리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외 연속간행물의 목차정보를 자료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기사 검색의 효율성과 연속간행물의 이용도를 높일 것이다. 또한 서명이나 저자명을 모를 경우라도 알고 있는 주제어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인권과 관련된 용어를 수집 정리하고, 서지 데이터베이스(bibliographic database)의 오류점검 및 보완작업을 수행하여 이용자가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인권자료실에 소장된 장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인권문화는 개개인의 인권감수성을 높임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서로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말한다. 따라서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는 단순히 홍보에 머물지 않고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인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문화 콘텐츠는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위원회 출범 원년인 2002년부터 기획에 들어갔던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은 2004년도에도 계속된다. 지난해 제작·보급한 인권영화 <여섯 개의 시선>과 인권 만화책 <십시일反>은 인권이라는 다소 무겁고 딱딱한 주제를 일반 국민에게 친근하게 제시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할 뿐이고 더 많은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콘텐츠를 만들고자 한다. 이에 2004년도에 두 번째의 인권영화와 인권 만화를 기획·제작할 것이다. 이러한 콘텐츠 개발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일정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더욱 치밀하고 장기적인 기획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또한 2003년부터 추진해 온 인권 애니메이션과 인권 포스터 제작을 완료할 것이다. 애니메이션은 인권 감수성과 상상력을 확장하는 데 유용한 매체이며, 보급에 있어 공간적 제약이 적은 포스터 역시 폭넓게 일반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매체의 역할을 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56주년에 즈음하여 인권 영화 상영회와 인권을 주제로 한 포스터, 만화, 사진 등 전시회를 함께 개최하는 ‘인권문화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2003년 8월 창간한 월간 <인권> 역시 매월 정기적으로 인권정보를 제공하고 인권 현안을 다룸으로써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밖에도 방송 신문 등 언론사와 차별예방 및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도 추진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포스터, 사진 등 각 영역에서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를 살핌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에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자 한다.

제5절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협력관계의 활성화

1. 국내 인권단체와 협력 토대 마련

위원회 출범 후 처음으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인권시민단체와 함께 민간경상보조금 사업과 시민실천프로그램개발 용역사업을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의미 큰 일이었다. 인권시민단체들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권 내 인권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인권분야 활동가들에게는 자기 분야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지원사업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사업선정과 지원금액, 평가 등에 대한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으로 다양한 인권활동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더욱 실질적인 인권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지원금 확충이 요구된다.

한편 2003년도에 시민실천프로그램개발 용역사업의 경우 사회적으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심각한 성적 소수자·아동 및 청소년,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5개 분야를 선정하여 시민참여 인권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사회적 인식과 시민운동의 접근이 미약한 차별분야를 주제로 공모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중적으로 육성·보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인권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공동협력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체들과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관계를 위해 인권시민단체 간담회 및 업무설명회와 같은 정례적인 자리를 마련하여 다양한 여론수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실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강좌’를 질적으로 보강하고 다양화하여 자체 교육기회가 부족한 지역 인권단체들이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인권시민단체 간담회는 지방순회 인권상담 및 홍보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2.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2004년도에 2개의 인권 관련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하나는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The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이고, 다른 하나는 제9차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 연례회의(The Ninth Annual Meeting of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이다. 이 두 개의 국제적인 행사는 2004년도 9월에 서울에서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는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이하 ‘ICCC’)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지역국가인권기구연합체에서 후원하는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대회로 1991년 파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역별(유럽, 미주, 아프리카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4개 지역)로 순환하여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제7차 대회의 서울 개최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 포럼(APF)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의를 주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이다. 이 회의를 통해 위원회는 아시아지역에서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확산시키고, 국제무대에서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은 1996년 설립된 이래 2003년말 현재 12개 국가인권기구가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위원회는 2002년 11월 APF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APF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2004년도에는 APF 활동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다. 2004년도 제9차 연례회의의 서울 개최와 회의주제는 최종적으로 제8차 연례회의(2004년 2월, 네팔)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위원회는 이 연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아·태지역내의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입지(리더십)를 강화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기구간 연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2004년 2월 APF 제8차 연례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이 국가인권기구국제 조정회위원회(ICC)의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ICC는 세계의 국가인권기구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아·태, 아프리카 및 미주 등 4개 지역에서 선출된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엔이 인정한 기구이다. ICC는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창설과 강화를 주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인권보호를 위해 유엔고등판무관실과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고 유엔 및 국제인권 워크숍에서 채택된 주요 권고사항 등의 이행을 검토하고 장려하는 기능을 한다. 위원장은 아태지역의 국가인권기구를 대표하여 매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ICC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국제적인 인권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세계적인 인권 현안을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권 관련 국제기구·단체 등과 교류·협력 강화

위원회는 1993년 비엔나 선언에 따라 탄생된 준국제기구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인권 관련 국제기구·단체 등과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적 인권 보호와 증진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인권 보호와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아·태지역에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역기구로 APF가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APF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인권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아시아의 인권 선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직원들에 대한 국제연수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직원의 국제인권법과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인권기구나 단체와 교류사업을 벌이고, 각종 국제연수 프로그램에 참여를 확대할 것이다.

셋째, 유엔 등 인권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가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국제적인 업무가 활성화되고 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유엔인권위원회, 조약감시기구회의 등 제반 인권 관련 국제회의, 워크숍 등에 참가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2003년에 구축한 외국 인권기구 교류협력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위원회는 각 국가인권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들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인권법에 대한 연구와 선진적인 정책결정 사례에 대한 연구를 위한 협력관계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에서 파악된 100여 개의 국가인권기구 현황자료집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4. 국제인권기구에 주재관(연락관) 파견

인권 관련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것 외에도 원활한 국제협력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 중의 하나는 국제인권기구 주재국에 상주직원을 파견하는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거의 1년 내내 50여 개 의제(agenda)와 관련된 국제인권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호주 시드니에는 아·태지역 12개 회원국을 비롯하여 국가인권기구를 설립중인 나라들을 지원하기 위한 APF 사무국이 있다.

따라서 이들 국제인권기구 주재국, 특히 인권기구가 밀집되어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우리 주재관을 상주시켜 관련 회의에 참가시키고, 각국의 국제인권규약 이행실태 및 인권 쟁점을 파악하고 한국의 인권상황 설명 및 홍보, 위원회의 입장 전달 창구 역할, 기타 주요 국제 인권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주재관 제도를 통해 위원회는 각종 국제회의 운영절차 습득, 국제사회와의 신속·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국제 인권 동향에 대한 위원회의 즉각적인 대처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의 효과도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위원회는 국제사회와 상시 협력증진을 통해 아·태 지역에서 인권선진국으로서 지위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준국제기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부 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 위원회 조직 및 부서별 기능
3. 2003년도 위원회 운영실적
4. 2003년도 주요 업무일지
5.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6. 유엔인권기구 및 국제NGO 현황
7. 우리나라의 국제인권협약 가입 현황
8. 위원회 발간자료



1.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성 명	학 력	주 요 경 력	비 고
위 원 장 김 창 국	서울대법과대학 수료 서울대행정대학원 발전정책과정 수료	·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 부장검사(전주, 광주지검) · 제8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 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한국방송공사 이사 · 제2기 통일고문회의 통일고문 · 참여연대 공동대표	
상임위원 박 경 서	· 서울대 사회학과 · 독일괴팅겐대 석사, 사회 학박사 인도네시아 한림 원 명예 철학박사	· 서울대 사회학과 외래교수 ·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 · 재단법인 크리스찬아카데미 부원장 ·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 정책위원장 ·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초빙교수 · 동북아평화연구소장 · 대한민국 초대인권 대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유 현	· 서울대 법학과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수료 ·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사법연수원교수 · 광주·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변호사	제2소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유 시 춘	· 고려대 국문학과	· 민가협 총무 ·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 민예총 이사 · 공정선거 민주개혁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 · 국민정치연구회 정책실장	제3소위원회 위원장



성 명	학 력	주 요 경 력	비 고
위 원 조 미 경	· 서울대 법대 · 한양대 법대 · 서울대대학원 법학석사 ·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 아주대 법학부 교수· 법학부 부장 · 수원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 수원법조윤리협의회 위원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
위 원 김 오 섭	· 고려대 법학과 · 서울대사법대학원 수료	· 제6회 사법시험 합격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민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변호사	제3소위원회 위원
위 원 신 동 운	· 서울대 법학과 · 서울대 대학원 형사법 석사 ·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 법학박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편집위원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편집위원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 대법원양형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법원행정처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장 겸 교무담당부학장	제2소위원회 위원
위 원 정 강 자	· 이화여대 도서관학과	·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장 · 남녀차별개선실무위원회 위원 ·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고용평등추진본부 공동대표 ·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 여성부 차별개선위원회 의원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제1소위원회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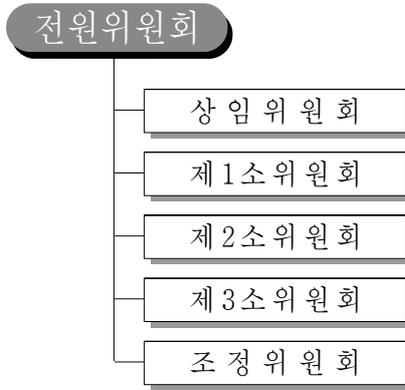


성 명	학 력	주 요 경 력	비 고
위 원 김 덕 현	· 한양대 법학과	·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변호사 · 예방접종 심의위원 ·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 국무총리자문기구 정책평가위원회 민간위원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법무부 및 법제처 자체심사평가 위원회 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
위 원 이 흥 록	· 서울대 법학과 · 서울대사법대학원 수료	· 제8회 사법시험 합격 · 부산지방변호사회 재무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 ·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변호사 · 인권정책연구회 이사장 · 국민회의 당무위원	제3소위원회 위원
위 원 김 만 흠	· 서울대정치학과 ·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박사	·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 미국남가주대 정치학 방문교수 · 민주개혁국민연합 정책위원장 · 참여연대 실행위원 및 자문위원 · 제15회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 가톨릭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사무총장 최 영 애	·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	· 미국위스콘신주립대학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추진위원회위원장 ·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 대책위원회 공동집행 위원장 · 서울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과인권위원회 위원장 · 여성부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위원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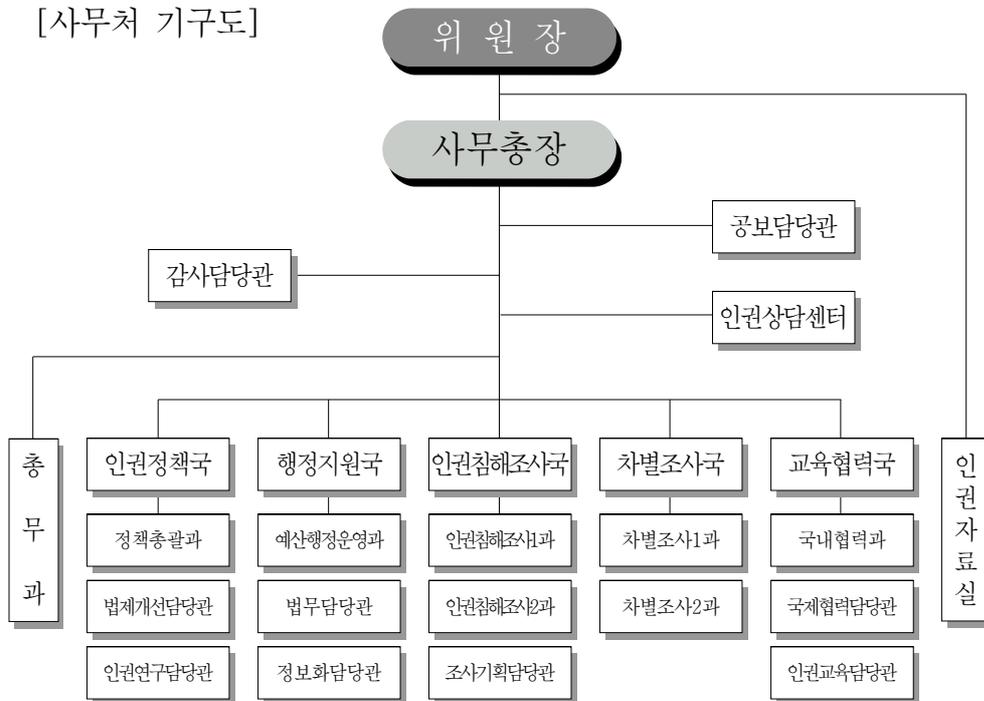


2. 위원회 조직 및 부서별 기능

[위원회 기구도]



[사무처 기구도]





[부서별 기능]

구 분	기 능
인권상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 및 상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진정에 대한 안내 및 상담 • 진정서 등의 접수·분류 및 조사국 송부 • 면진진정 업무총괄 • 일반권리구제 상담 • 진정 및 상담내용에 관한 분석 및 통계의 작성,유지 • 진정 및 상담내용에 관한 통계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 진정 사건 관련 정책연구과제 개발 • 진정 및 상담의 접수와 처리 및 상담기법의 개발 및 개선 • 전문상담원의 위촉·교육 및 관리 • 구금보호시설 진정함 설치·관리 • 면정진정 신청 및 접수에 관한 통계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베이스 유지·관리
공보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홍보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사단체 및 일반 국민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활동 • 홍보업무에 관하여 위원장과 사무총장 보좌 • 위원회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홍보 • 위원회 홍보자료 제작 계획 수립 및 발간·배포 • 위원회 및 인권 문제에 관한 언론보도 분석·배포 • 언론매체 및 외신의 보도지원 • 언론매체와 인터뷰 및 기고에 관한 사항 • 기자실 운영, 사진실 운영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기타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 국가인권위원회직원윤리규정의 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국가인권위원회징계위원회규칙의 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소속직원의 재산등록, 심사·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 인권위원의 겸직금지 및 퇴직인권위원의 공직취임제한에 관한 사항 • 소속직원의 비위방지계획의 수립·집행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안건에 대한 조사·사정업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그 밖에 위원장 및 사무 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총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직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보안업무 • 관인의 관리 • 문서의 분류·수발·통제·보존 등 문서관리 •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 •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세입·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 그 밖에 다른 국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구 분		기 능
인권 정책국	정 책 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정책수립 •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과 시행 •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 및 인권백서의 작성 • 주요업무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 인권에 관한 정책과제 개발 • 주요 인권현안의 파악 및 분석 • 제1소위원회의 안건 및 의사관리, 의결사항의 정리 및 배포·자문위원회의 운영
	법제개선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의 총괄 •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 및 의견의 제시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고서 작성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국제인권조약·기준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조사·분석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이행에 관한 연구와 의견표명 •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인권 관련 판례의 조사·분석
	인권연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의 수행 및 지원 • 각 분야 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다만, 인권침해조사국 및 차별조사국 업무에 관한 실태조사는 해당 조사국과 인권연구 담당관이 협의하여 시행) • 인권침해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분석 및 판단기준, 예방조치에 관한 일반지침의 제정에 관한 사항 • 차별행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분석 및 판단기준, 예방조치에 관한 일반지침의 제정에 관한 사항 • 인권관련 연구기관·단체 및 전문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진정사건 내용 분석 및 중요한 사안에 대한 연구지원
행정 지원국	예산행정 운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국회관계 업무의 총괄·조정 • 위원회 주요사업 결과의 심사분석 및 평가 • 위원장 및 사무총장의 지시사항 관리 • 조직·정원 및 각국·과·담당관의 업무분장의 관리 •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 위원회업무처리에 관한 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분석 • 위임집결규정의 제정 및 관리 •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안건 및 의사일정의 관리·지원 및 회의록 작성과 의결사항 배포
	법 무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에 대한 법률적 자문 • 위원회 관련 법령안 및 국무회의 제출안건의 입안·심사 및 협의 •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 법령질의·회신 및 그 밖의 법무 관련 사항 • 위원회 업무 관련 규칙·훈령·예규·지침안의 작성 • 다른 국 과 또는 담당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규칙·규정·예규·지침안의 심사 • 위원회 관련 법령집의 관리 및 편찬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적 자문 • 고문변호사에 대한 각 자문요청 및 자문의견 정리 및 송부 • 국가인권위원회 공보 편찬·배포



구 분		기 능
행정지원국	정보화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정보화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 위원회 행정정보화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 • 위원회 웹사이트의 개발 및 유지·관리 •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의 유통관리 • 정보화 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 전산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지원 • 그 밖의 정보화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조사국	인권침해조사1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조사국의 총괄·조정·기획 및 소위원회 운영관리 • 인권침해조사국의 예산, 보안, 기타 일반사무 업무 등 • 검찰 및 국가정보원에 대한 진정조사 및 구제 • 경찰에 대한 진정조사 및 구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진정조사 및 구제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진정조사 및 구제 • 기타기관에 대한 진정조사 및 구제
	인권침해조사2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금시설·군 관련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의 조사 및 직권조사와 그 구제 • 구금시설·군 관련기관 조사와 관련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시행, 조정·법률구조·보상금 지급 • 구금시설·군 관련기관 조사와 관련된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구금시설·군 관련기관 조사와 관련된 수사의뢰·과태료 부과, 징계권고·고발에 관한 사항 • 조사 및 처리한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관한 사항 • 군 관련 구금시설 방문·실태조사 및 군 관련 인권상황 실태 조사와 그 개선
	조사기획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의 조사 및 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총괄·조정 • 인권침해의 조사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와 개선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의 조사 및 구제와 관련된 통계의 유지·관리 • 대규모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사건 또는 상황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 •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건의 조사 • 구금·보호시설(다만, 제2항에 의한 군관련구금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실태조사·방문조사의 계획 수립·시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다수인보호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인권침해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의 진행상황 점검 및 분석 •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전원위원회, 제2소위원회 및 인권침해 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조정 사례의 분석 및 결정례집 발간·배포
차별조사국	차별조사1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총괄·조정 • 차별행위의 조사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와 개선에 관한 사항 • 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와 관련된 통계의 유지·관리 • 대규모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사건 또는 상황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 • 차별행위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의 진행상황 점검 및 분석 • 전원위원회, 제3소위원회 및 차별행위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조정사례의 분석 및 결정례집 발간·배포 •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와 그 구제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사유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 병력 - 사회적 신분 - 출신지역/출신국가/출신민족/인종/피부색



구 분		기 능
차별 조사국	차별 조사1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사항의 조사와 관련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 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징계권고, 고발에 관한 사항 • 조사 및 처리한 차별행위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관한 사항 •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업무편람 발간 • 제3소위원회·차별행위조정위원회의 안건, 의사일정의 관리·지원 및 회의록 작성과 의결사항 배포
	차별 조사2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와 그 구제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사유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혼인여부/임신 또는 출산 - 가족상황 - 성적 지향 - 나이 - 옹모 등 신체조건 - 종교/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 진정사항의 조사와 관련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 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징계권고, 고발에 관한 사항 • 조사 및 처리한 차별행위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관한 사항
교육 협력국	국내 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관련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시행 • 인권 관련 단체의 실태 및 활동상황에 관한 자료수집 • 인권 관련 단체 지원 및 상호 협력 사업 • 인권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시행 •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인권 관련 국제단체와 교류·협력 • 위원회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가입·활동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 인권 관련 해외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보급 • 직원의 해외연수 및 교육훈련 • 민간부문 국제인권활동의 지원 • 인권에 관한 국제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 주요국제회의의 참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유엔인권기구(조약감시기구 포함)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 인권교육업무와 관련된 기관과 협의 • 인권교육 프로그램 자료의 개발 및 보급 • 인권교육 관련 업무 조정 • 인권교육 전문요원의 양성훈련 • 국내외 인권 관련 교육제도 및 교육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인권강사 은행의 구성 및 운영
인권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 국내외 도서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자료 교류 및 협력 • 인권자료실 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발간자료 등록 및 관리·보존에 관한 사항 • 자료실 수집자료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 인권자료목록의 발간 및 자료실 홍보 • 기타 자료실운영에 관한 사항 	



3. 2003년도 위원회 운영실적

※ 2003. 1. 1 ~ 2003. 12. 31(1년간)

구 분	개최회수 (회)	상 정 안 건(건)							계	
		보고	논의	의 결						
				권고	합의	기각	각하	기타		
전원위원회	24	27	23	25		9	4	13	101	
상임위원회	18	12	4	1				17	34	
소 위 원 회	제1소위원회 (정책 및 대외협력 등)	28	6	25	18		1		50	
	제2소위원회 (인권침해 조사 등)	30	48	2	60	23	563	1,932	111	2,739
	제3소위원회 (차별조사등)	25	35	50	35	3	220	831	5	1,179
계	125	128	104	139	26	793	2,767	146	4,103	





4. 2003년도 주요 업무일지

2003년 1월

- | | |
|--------|---|
| 1월 7일 | 2002년 주요 기업 입사지원서상 차별관행 조사결과 발표 |
| 1월 9일 | 제36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사건 전원위원회 회부, 인천공항 개장검색관련 인
격권 침해사건의 합의권고 등 61건 의결 |
| 1월 10일 | 제24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과제 방문조사 시행결정 및 2003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기본계획(안) 논의 |
| 1월 11일 | 제네바 제32차 UN 아동권리위원회 참석, UN인권고등판무관실 방문 및 우
리나라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관 (박경서 상임위원, 장영아, 정연걸) |
| 1월 13일 | 제1차 행정심판위원회
2002년 재상정한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청구사건 본건 기각의결
제32차 전원위원회
만덕복음병원 사건에 대해 관련자 2명 검찰고발 및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련
기관에 시정 권고 등 5건 의결 |
| 1월 15일 | 군의문사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
| 1월 20일 | 제25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2003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위원회 구성(안) 보고 |
| 1월 21일 | 사회보호법 Task Force Team 구성
보호감호제도의 인권침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유현 상임위
원을 추진위원장으로 한 전문가 7명으로 구성 |



- 1월 22일 외국인을 위한 러시아어 진정서 양식 홈페이지 게시
제30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시설 등 처우와 관련한 기본권 침해사건 권고 등 8건 의결
- 1월 27일 태국 상원소속 ‘사범및인권위원회’ 샬로파탐 (Kamnuan Chalopathump) 위원
장과 상원의원 9명 및 전문가·자문위원 2명 등 총 16명 인권위 방문
제33차 전원위원회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차별한 사건에 대한 개선권고 등 6건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 현안 과제를 노무현 대통령당
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게 제출키로 결정
제31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시설 등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 권고 등 4건 의결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개정
정책및대의협력소위원회를 제1소위원회,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를 제2소위
원회,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를 제3소위원회로 명칭 변경 등
- 1월 28일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 발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 시안을 마련코자 김오섭 인
권위원을 추진위원장으로 하여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등의 전문가 17명으
로 구성
- 1월 30일 제32차 제3소위원회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건 각하 후 이송결정 등 16건 의결



2003년 2월

- 2월 3일 국가보안법 Task Force Team 구성(팀장 박경서 상임위원)





- 2월 3일 <국제인권조약 국내이행자료집 발간
UN의 주요 6대 인권조약에 대한 각 정부의 이행실태와 각종 관련 문서들을
종합하여 국내 최초로 총정리함
제26차 제1소위원회
국제수형자이송법(안)에 관한 논의 등 2건 의결
- 2월 4일 영국 외무부 사형전문위원 겸 국제사형폐지연맹 영국대표 피터 호지킨슨
(Peter Hodgkinson)과 주한 영국대사 찰스 험프리(Charles Humfrey) 일행 위원
회 방문
- 2월 5일 제27차 제1소위원회
경찰관의 무연고 환자 이송 관행에 대한 개선권고 등 2건 의결
- 2월 6일 인권 영화 <대륙횡단>(감독 여균동) 등 시사회 개최(영화진흥위원회)
- 2월 10일 제28차 제1소위원회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권고(안) 전원위원회 회부
제38차 제2소위원회
군영창 수감자 인권침해사건 관련 공군의 영창관리규정 중 일부 개정 및 관
련자 인권교육실시 권고 등 50건 의결
제33차 제3소위원회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사건 기각 등 9건 의결
제34차 전원위원회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권고 등 9건 처리
- 2월 11일 국제이주기구(IOM) 아·태지역 지문관 Mr. 타니무라(Yorio Tanimura)와 서
울사무소장 고현웅 일행 위원회 방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설명회 개최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부산인권센터 등 42개 단체 참석



- 2월 12일 미국 노총 소속 아시아·태평양 노동동맹(APALA) 한국연수단 3명 위원회 방문
- 2월 15일 제26차 상임위원회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구속된 1급 장애인의 진정사건 관련 불구속 수사요청 긴급구제조치 권고
- 2월 17일 제34차 제3소위원회
교도관의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건 기각 등 37건 의결
사회보호법 TFT 제1차 회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방안 및 청송감호소의 실태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방안 등 논의
- 2월 18일 인권자료운영자문단 제1차 회의 개최
2002년 업무실적 및 2003년 사업계획 보고, 국내인권자료 수집·활용 계획 및 인권역사자료실(가칭) 설치 계획 심의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서신날인 관행 시정 권고 일부 수용
검열제외 대상자 확대 및 결봉투와 서신의 각장마다 날인하는 행위 중지
- 2월 20일 기간제 교원(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청문회 개최
- 2월 24일 제35차 전원위원회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사건 관련, 담당검사 등 검찰청장에 고발, 수사관 등 수사의뢰,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구조요청 및 법무부 정책권고 등 4건 처리
제29차 제1소위원회
민간 경상보조 사업 기본계획 및 시민실천 프로그램 개발 용역사업 기본계획 의결
제39차 제2소위원회
인천지검 가혹행위사건 조사계속 결정 등 48건 의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아·태지역 위





크숍 참가, ~ 27일 (김철홍 인권교육담당관)

- 2월 26일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제안창구’ 개설 공고
2003. 3. 1.부터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개시

2003년 3월

- 3월 3일 제40차 제2소위원회
경주경찰서 인격권 침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유치장업무 담당자의 인권교육 및 관련규정 준수 권고 등 32건
국가보안법 TFT 제1차 회의 개최, 업무추진계획 등 논의
- 3월 4일 제35차 제3소위원회
‘의무관의 비인격적 언사’건 권고 등 65건 의결
일본 아동권리조약종합연구소장 일행 위원회 방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토론 및 정보교환
- 3월 5일 제4차 인권상황 실태조사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보고, 상임위원회 간담회 결과 보고, 주제별 과제제안서 확정, 참여자격 확정, 사업공모, 위원회 직접수행과제 등
비정규직 TFT 제2차 회의 개최
정부기구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3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공보> 창간호 발간
일반 국민들과 법집행자들에게 국가인권위의 결정내용 및 구제사례를 널리 알려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학술 연구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발간
- 3월 10일 제36차 전원위원회



호주제도와 관련한 의견표명, 북파공작원과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특별법제정 권고 등 총 10건 의결

3월 10일 제30차 제1소위원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표명 의결

제41차 제2소위원회

청송제1보호감호소 부당한 징벌과 관련하여 징벌에 대한 재심사 권고 등 57건 의결

3월 11일 인권 영화 <여섯 개의 시선> 시사회

얼굴값/박광수 감독,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박찬욱 감독, 그 남자의 사정/정재은 감독, 신비한 영어나라/박진표 감독, 대륙횡당/여균동 감독, 그녀의 무게/임순례 감독

3월 12일 삼성전자, 포스코, LG전자, 국민은행, 한국전력 등 38개 기업이 입사지원서상 차별항목을 자진 삭제하기로 함

3월 13일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에 대한 2003년도 국제회의 참가자 오찬간담회

3월 14일 사회보호법 TFT 제2차 회의

외국의 보안감호제도 운용실태 소개, 감호대상범죄의 본형에 대한 형량의 문제 등 논의

3월 16일 호주제도에 대한 의견 헌법재판소에 제출, 민법 제778조 및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 부분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

3월 17일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1차사업 공고

제36차 제3소위원회

진과를 이유로 한 감사장 수여 차별사건 권고 등 43건 의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 참가 모니터링, ~ 4. 17 (교육협력국장 등 7명)





- 3월 18일 '유치장 시설환경 인권실태조사' 발표
- 3월 21일 제42차 제2소위원회
울산중부경찰서 가혹행위 진정사건 검찰총장에 수사의뢰, 서울송파경찰서 가혹행위 진정사건 피진정인들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등 84건 의결
- 3월 24일 제37차 전원위원회
외교공관 앞 표현의 자유침해 진정사건 관련 종로경찰서장 및 해당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실시 권고 등 총 6건 처리
제31차 제1소위원회
기간제 교원에 대한 고용 등에 관한 지침개선 권고 등 의결
- 3월 26일 제38차 (임시)전원위원회
정부의 이라크전 파병에 즈음하여 위원회의 반전·평화·인권에 대한 의견 표명
- 3월 31일 제43차 제2소위원회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부당 수사사건 관련 피진정인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등 42건 의결
제37차 제3소위원회
성적 지향에 의한 재화이용 차별사건 권고 등 33건 의결

2003년 4월

- 4월 1일 인권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전자결재 시스템 본격 실시
- 4월 7일 제44차 제2소위원회
성남 중부경찰서 과도한 신체검사 진정사건 관련 피진정인에게 특별인권교육 실시 권고 등 65건 의결



- 4월 7일 제38차 제3소위원회
기타 사유에 의한 고용차별 사건 기각 등 32건 의결
<2002년 연간보고서> 발간·배포
국가인권위 설립과정부터 2002. 12. 31.까지의 위원회 활동내용과 평가 및 향후 과제와 개선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함
국가보안법 TFT 제2차 회의 개최
국가보안법의 연혁, 이념적·헌법상의 문제 논의
- 4월 9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청문회 개최
- 4월 14일 제39차 전원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 노동부에 권고 등 총 5건 처리
제32차 제1소위원회
도로교통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 경찰청에 개선 권고
- 4월 21일 제45차 제2소위원회
군의원사 사건에 대해 국방부에 수사 의뢰 등 2건 의결
제39차 제3소위원회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의한 평등권 침해건 각하 등 21건 의결
국가보안법 TFT 3차 회의
- 4월 22일 2003년도 제1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심사결과 공고
- 4월 23일 제2차 인권자료운영단 회의
2003년도 장서개발계획과 복사서비스 방안, 발간물등록번호 부여방안에 대한 검토 등
- 4월 25일 <여섯 개의 시선>,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
- 4월 28일 일본 부락해방연구소 ‘한국인권여행’ 방문
일본의 부락민 등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문제 의견교환 (일본부락해방·인권연구소장, 부락해방동맹중앙본부중앙서기차장, 김동훈 교수 등)





- 4월 28일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 뉴질랜드 University of Waikato 법학과 교수 Margaret Bedgood와 고은태 한국지부장 방문
제40차 전원위원회
북한인권연구팀(팀장 인권정책국장) 구성, 지방순회 인권상담 및 홍보행사 보고 등 총 4건 처리
제27차 상임위원회 개최
인권위공무원윤리강령(안) 의결 등 4건 처리
제33차 제1소위원회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개선권고 등 3건 의결

2003년 5월

- 5월 1일 이홍록 비상임인권위원 임명
- 5월 7일 제46차 제2소위원회
청송제1보호감호소 서신불허사건 제도개선 권고 등 113건 의결
제40차 제3소위원회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사건 권고 등 50건 의결
- 5월 12일 제34차 제1소위원회
미가입 유엔인권협약 권고 의결
제28차 상임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제2차 공고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
제41차 전원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관한 개선 권고 등 3건 처리
국가보안법 TFT 제4차회의



- 5월 13일 부산지역 순회 인권상담, 홍보, 진정접수 및 상담(5월 13일 ~ 14일)
부산지역 주재기자 간담회(부산KBS 등 4개사), 부산지역인권시민단체장 및
간사 간담회(29개 단체, 41명), 부산지역관계기관장과 간담회 개최
- 5월 14일 전문상담원과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워크숍 실시
주제 : 정신보건법의 이해
- 5월 18일 제4회 광주인권상 시상식 위원장 축사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주관으로 5·18기념문화관 민주홀에서 개최
- 5월 19일 홍콩소재 국제NGO인 아시아인권위원회 위원장 바질 페르난도(Mr. Basil
Fernando) 등 2명 위원장 방문
- 5월 20일 아시아재단의 Ms. Ardith Betts 장학프로그램국장 등 2명 위원장 방문
광주지역순회 인권상담, 홍보, 진정접수 및 상담(5월 20일 ~ 21일)
광주지역 주재기자 간담회(광주MBC 등 16개사), 광주지역인권시민단체장
및 간사 간담회(25개 단체, 32명), 광주지역관계기관장과 간담회 개최
- 5월 21일 제47차 제2소위원회
의정부교도소 서신 지연처리사건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인권교육실시 등 78
건 의결
- 5월 22일 전주지역 순회 인권상담, 홍보, 진정접수 및 상담(5월 22일 ~ 23일)
전주지역 주재기자 간담회(전북일보 등 10개사), 전주지역인권시민단체장
및 간사 간담회(26개 단체 41명), 전주지역관계기관장 간담회 개최
- 5월 25일 장애인권리 및 장애인권리협약안 논의를 위하여 인도에서 개최된 APF 워크
숍 참가. ~ 6월 2일 (한희원 인권침해조사국장)
- 5월 26일 제35차 제1소위원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에 대한 검토 보고 등 2건 처리
제42차 전원위원회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요구(안) 등 3건 처리





- 5월 26일 국가보안법 TFT 5차 회의
- 5월 27일 대전지역 순회 인권상담, 홍보, 진정접수 및 상담(5월 27 ~ 28일)
대전지역 주재기자 간담회(대전일보 등 7개사), 대전지역인권시민단체장 및
간사 간담회(19개 단체 23명), 충청지역관계기관장 간담회 개최
- 5월 28일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인권담당관 내방하여 세계 인권에 관하여 논의
- 5월 29일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위원회 8차 회의
- 5월 30일 인권교육강사단 워크숍(서울교육문화회관)
- 5월 31일 인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2003년 6월

- 6월 2일 제48차 제2소위원회
청송제2보호감호소 재소자 농성 관련 실태파악을 위한 방문조사 등 68건 의결
인권침해및조사구제규칙 개정
인권자료실에서 외부이용자를 위한 우편복사서비스 시작
2003년 인권논문 공모사업 공고(2003-25호)
- 6월 4일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 6월 5일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북한인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개최
제41차 제3소위원회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차별사건 권고 등 52건 의결
- 6월 6일 태국에서 개최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ESCR)-Net 회의 참가, ~ 6월 13
일 (국제협력담당관실 유인덕, 정책총괄과 이용근)
- 6월 9일 제36차 제1소위원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검토



- 6월 9일 제43차 전원위원회
계구사용행위위헌확인심판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의견제출 등 4건처리
- 6월 11일 미얀마 민주활동가 부찌 등 5명 위원장 방문
현재 미얀마 사태 및 민주화 노력에 관한 논의
인권교육방법론 연구진 회의 개최
- 6월 16일 제49차 제2소위원회
운동선수 이적동의서 발급거부사건, 인천서부경찰서 가혹행위 사건 등 70건
의결
외국어 진정서 양식 게시(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제42차 제3소위원회
출신국가에 의한 고용차별 사건 각하 등 58건 의결
국가보안법 TFT 7차 회의
- 6월 17일 비정규직 토론회(배움터)
- 6월 18일 계구사용 공청회 개최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위원회 9차 회의
- 6월 19일 제1차 인권백서 발간회의
- 6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성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참가,
~ 6월 28일 (유현 상임위원, 교육협력국 최영란, 차별조사국 김정학)
- 6월 23일 제44차 전원위원회
형사소송법·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검토 등 3건 처리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위원회 10차 회의
- 6월 24일 제29차 상임위원회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3차 사업계획(안) 등 3건 처리
인권상황실태조사추진회의
제37차 제1소위원회





수용자 집필권 침해방지를 위한 정책권고(안) 검토 등

- 6월 24일** 화상 상담, 인터넷 상담 개통(시범실시) : 평일(13:00~16:00), 토(09:00~11:00)
- 6월 25일**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 회의
 위원장 주재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북한인권 관련 향후 일정 설명, 국회 답변내용 부가 설명 (연합뉴스 등 15명 참석)
 ‘사랑의 헌혈하기’ 행사(43명 참석)
- 6월 26일** 62개 대기업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분석 및 입사지원서의 자진시정 내용 기
 자브리핑
- 6월 30일** 제30차 상임위원회
 서울지검 고문치사 불기소처분 관련 등 의결
 제43차 제3소위원회
 성별에 의한 재화차별 사건 권고 등 45건 의결

2003년 7월

- 7월 1일** 2003년도 2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사업과제 선정
 구금시설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 군 수사과정 및 영창 인권상황 실태
 조사,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의 유형분석 및 지침개발
- 7월 7일** 제31차 상임위원회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사업 추진 개선 방안 등 1건 의결
 제50차 제2소위원회
 종로경찰서 집회의 자유침해사건 집회개최 허용 권고 등 164건 의결
 국가보안법 TFT 8차 회의



- 7월 8일 계구사용 관련 공청회 개최
계구시연 및 계구 관련 각계의견 청취 및 토론
- 7월 9일 인권백서발간위원회 개최
- 7월 14일 제38차 제1소위원회
출입국관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외 2건 의결
제45차 전원위원회 개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등 의결
제51차 제2소위원회
구금시설의 부당한 계구사용 관련, 가족수갑 폐지 등 제도개선 권고, 청송교도소 수용자 집필권 침해사건 전원위원회 회부 등 39건 의결
- 7월 16일 제3차 인권자료운영자문단 회의 개최
- 7월 17일 구금시설 진정함 설치 촉구 공문발송
- 7월 19일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장 및 각국 참가자 등 40여 명 위원회 방문
위원회 활동상황 및 한국 인권교육상황 파악
- 7월 21일 제44차 제3소위원회
신체의 자유 침해사건 권고 등 88건 의결
국가보안법 TFT 9차 회의
- 7월 22일 제52차 제2소위원회
유승준 입국 불허사건 전원위원회 회부 등 78건 의결
- 7월 25일 국제엠네스티 조나단 오도노후 등 13명 방문
ICC 로마규정 이행관련 한국 및 인권위 활동 파악을 위해 방문
- 7월 28일 제46차 전원위원회
거주이전의 자유침해의 진정사건(유승준 입국 불허사건) 기각 등
제53차 제2소위원회 개최
- 7월 29일 2003년도 3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사업과제 선정





사회보호법 관련 실태조사,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권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7월 30일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03년 8월

8월 1일 김만흠 비상임인권위원 임명

월간 <인권> 창간

창간호는 20,000부를 발행하여, 파출소,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민원실에 배포. 매월 <인권>을 발행하기로 함.

8월 2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69차 국제도서관연맹(IFLA) 대회 참가, ~ 8월 10일 (심민석 인권자료실장)

8월 4일 제45차 제3소위원회

평등권 침해사건 각하 등 34건 의결

8월 5일 인권 만화집 <십시일反> 발간

10명의 만화가(박재동, 손문상, 유승하, 이우일, 이희재, 장경섭, 조남준, 최호철, 홍승우, 홍윤표)가 참여하여 창작과비평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

8월 5일 제32차 상임위원회

징계권고에 따른 조사서류 요구에 대한 보고, 사본송부 결정 등 4건처리

8월 7일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Asia-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F) 사무국장(Kieren Fitzpatrick) 및 부국장 접견

제8차 APF 연례회의 논의, APF 제10차 연례회의(2005년도) 한국 개최 문제,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회의(2005년도)의 APF 연례회의 동시 주최 관련 문제, 2004년 동북아 워크숍, 직원교류계획 후원 등 논의



- 8월 7일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및 UN인권소위원회 심의 참석, ~ 8월 14일 (박경서 상임위원)
- 8월 12일 제33차 상임위원회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검토 등 3건 처리
- 8월 18일 을지연습에 따른 비상소집훈련 및 화재대피훈련 실시
- 8월 19일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토론회
- 8월 21일 제34차 상임위원회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의 긴급구제조치 의결
- 8월 22일 미국 뉴저지주 한인회의 시민권위원 이건용 등 2명 위원장 방문
미국 뉴저지주 인권보호제도 소개 및 인권 현안 논의
- 8월 25일 제39차 제1소위원회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검토의견 등 의결
제47차 전원위원회
투표권 배제로 인한 평등권 침해의 건 기각 등 5건 처리
- 8월 26일 몽골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8월 29일 (위원장, 유시춘 상임위원, 심상돈 총무과장)
제4차 인권자료운영자문단 회의
기획수서자료에 대한 외부전문가 선정, 추천결과 및 향후 자료구입업무 일정 보고
- 8월 27일 일본 휴먼라이츠 오사카의 미노루 마에가와 기획실장 등 15명 방문
한국의 인권현황과 인권위의 주요 활동 파악
- 8월 29일 인권교육강사단 제2차 워크숍 (서울시교육연수원)





2003년 9월

- 9월 1일 제46차 제3소위원회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검찰직렬 제외 차별사건 권고 등 68건 의결
제10차 국가보안법 청문회 개최
- 9월 8일 제40차 제1소위원회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 검토 등
제55차 제2소위원회
본인의 동의 없는 지방공무원 진출인사 사건, 중국동포 입국금지사건 법무부에 입국허용 권고 등 총 84건 의결
제48차 전원위원회
군인건강보험 배제로 인한 평등권 침해 사건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육아휴직 배제 사건에 대한 권고 결정 등
- 9월 12일 <여섯 개의 시선>, 제13회 후쿠오카국제영화제 초청
<여섯 개의 시선>은 2003년 한 해 동안 제1회 블라디보스톡국제영화제(9.12.), 제22회 밴쿠버영화제(9.25.), 제47회 런던국제영화제(10.22.), 제4회 장애인영화제(9.24), 제6회 고당영화제(9.24) 등에 초청받음
- 9월 14일 Amnesty International 등 인권기구 방문
한국의 인권 현안 설명과 자료 수집 및 협조. ~ 9월 20일(박경서 상임위원)
- 9월 15일 제56차 제2소위원회
전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 가혹행위사건 피진정인들에 대한 수사의뢰, 수용자 신문·잡지구독 제한규정 개선 권고 등 총 157건 의결
제47차 제3소위원회
사회적 신분에 의한 재화 차별사건(비학생청소년 차별) 권고 등 46건 의결



- 9월 20일 미국 EEOC에 조사관 교육참석, ~ 9월 28일 (차별조사2과 이수연 조사관)
- 9월 22일 제41차 제1소위원회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제49차 전원위원회
사생활의 자유침해관련 사적정보 보호를 위하여 민사집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 등 3건 의결
제57차 제2소위원회
서울대학병원 환자 행복추구권 침해사건 전원위원회 회부 등 104건 의결
- 9월 24일 제58차 제2소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격권 침해사건 전원위원회 회부 등 30건 의결
- 9월 25일 제42차 제1소위원회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의 2건 의결
위원회 홈페이지 진정상담실 서비스 개시
- 9월 26일 2003년도 4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사업과제 선정
사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주거빈곤계층 사회적권 보장현황 실태조사, 군대 내 성폭력 현황 실태조사
- 9월 27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국가인권기구팀의 진정처리 관련 질문서 답변자료 제출
- 9월 29일 제48차 제3소위원회
국가공인자격증 민간자격증 가산점 차별사건 권고 등 41건 의결





2003년 10월

- 10월 1일 제35차 상임위원회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제4차 사업 구술심사회의 결과
- 10월 2일 <여섯 개의 시선>, 제8회 부산국제영화제 초청 상영, 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NETPAC) 특별상(Special Mention) 수상
- 10월 6일 제59차 제2소위원회 개최
서울시립대 교수 제자 성희롱 사건 전원위원회 회부 등 90건 의결
주중 한국영사관 직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 중국 현지 실지조사, ~ 10월 9일 (인권침해조사국 정혜웅, 김원숙 조사관)
- 10월 9일 제36차 상임위원회
2003년도 용역사업 추진계획(안)[병역복무자 관련] 등 3건 처리
- 10월 13일 제43차 제1소위원회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자건강권 관련 정책검토 등 5건 처리
제50차 전원위원회
서울지검 피의자고문치사 관련 항고에 대한 검찰처분 보고,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중개정령안등 4건 의결등
제60차 제2소위원회
외부의사의 수용자 치료 도중 원치 않은 발치사건 위원회 조사대상 여부 전원위원회 회부 등 85건 의결
- 10월 14일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10월 15일 제49차 제3소위원회
○○대학교의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원자격 차별사건 권고 등 58건 의결
- 10월 17일 ‘북한의 식량난과 재외탈북자의 인권’ 간담회 개최



- 10월 21일 인권 현장 방문 : 나사로의 집 방문 (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
- 10월 22일 땀마웅땀(Mr. Tin-Maung Than) 미얀마 민주화운동가 위원회 방문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국제연대 참여 호소
제44차 제1소위원회
테러방지법수정안 검토 등 4건 처리
- 10월 23일 인권 현장 방문 : 쪽방촌 (서울 중구 후암동 소재)
인권상담가이드북 발간 (인권상담센터)
제50차 제3소위원회
평등권 침해(마약사범차별) 사건 기각 등 28건 의결
- 10월 27일 제45차 제1소위원회
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51차 전원위원회
대학교수의 여제자 성희롱 사건 : 학교 당국에 성희롱 예방계획을 세워 교육을 하도록 권고 등
제61차 제2소위원회
청송교도소의 수용자 집필권침해사건 직원교육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권고 등 125건 의결
- 10월 28일 <여섯 개의 시선> 기자 시사회(서울극장)
- 10월 29일 인권현장 방문 : ‘들꽃피는 마을’시설 관계자 격려 및 위문금을 전달 (경기도 안산시 와동 소재)
- 10월 30일 ‘입사지원서 차별시정 토론회’ 개최
기업이 원하는 입사지원자 정보, 입사지원자가 원하는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의 차별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토론
- 10월 31일 제37차 상임위원회
군 영창 방문조사계획(안) 의결





10월 31일 구금시설수용자 건강권 보장 관련 시민사회 간담회(배움터1)

2003년 11월

11월 3일 제62차 제2소위원회

인천동부경찰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사건 전원위원회 회부 등 130건 의결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위 권고 관련 보건복지부 수용 통보

11월 4일 제46차 제1소위원회

민법중개정법률안 검토 의견 등 2건 처리
제38차 상임위원회

사회보호법 TFT 실태조사 연구용역 관련 방문조사 계획 등 2건 의결

11월 5일 위원장과 사무총장, 노무현 대통령 주재 「참여정부 차별시정정책 추진방향」 국정회의 참석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참석)

인권교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인권교육실태와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11월 6일 제51차 제3소위원회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의한 평등권 침해 사건 기각 등 29건 의결

11월 7일 <여섯 개의 시선> 귀빈 초청 시사회

극장 개봉을 앞두고 명보극장에서 귀빈 초청 시사회 개최, 정부요인으로 윤덕홍 교육부총리, 강금실 법무부장관, 권기홍 노동부장관, 최기문 경찰청장 등 250여 명 참석

11월 8일 영문 연간보고서 발간

11월 10일 제47차 제1소위원회

대학시간강사 차별사건 검토 등 2건 처리
제52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중개정안 의결 등 4건 처리

- 11월 10일 제63차 제2소위원회
도봉경찰서 폭언 및 폭행사건 피진정인 인권교육 수강 권고 등 66건 의결
- 11월 11일 뉴욕, 토론토의 인권 관련 NGO 방문, 제네바 UN인권위원회 방문 및 북한 A규약 심사 참석, ~11월 21일 (박경서 상임위원)
제11차 비정규TFT회의
- 11월 12일 인권 현장 방문 : 베들레헴 아가방(성북구 보문동 소재)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하반기 주요 일정 설명,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 11월 13일 제39차 상임위원회
2003년 인권상황실태조사 5차 사업 관련 안건 의결 등
- 11월 14일 ‘외국인노동자 인권의 보호 증진’을 주제로 외국대사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
: 페렌레이 우르쥔훈데브(Perenlei Urjinlhundev) 주한 몽골대사, 알라딘 곤잘레스 빌라코르테(Aladin Gonzales Villacorte) 주한 필리핀 대사 등 8명의 주한 외교사절 참석
<여섯 개의 시선>, 전국 53개 극장에서 동시 개봉
- 11월 17일 제52차 제3소위원회
성별에 의한 평등권 침해(여성보건휴가제한)건 69건 의결
- 11월 21일 인권 현장 방문 : 샴터마을 방문 시설운영현황 청취 및 시설시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소재)
사회보호법 TFT 회의
- 11월 22일 ‘선진국 차별시정 제도 및 기구 운영사례연구 정책연수’ 호주 및 뉴질랜드 방문 (김선민 인권연구담당관 외 2명)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차별조사업무 관련 직원교류, ~ 12월 5일 (차별조사국 송초아, 남경혜 조사관)





- 11월 24일 제48차 제1소위원회
 미가입여성협약선택의정서 및 아동협약선택의정서에 대한 의견검토
 제40차 상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조례 및 규칙의 인권상황실태조사 계획(안), 외국인 인권침해
 현장 조사계획 의결
- 11월 24일 제53차 전원위원회
 교육청의 시정권고 이행유보 결정 관련 보고
-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주년 기념식
- 11월 26일 군의문사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 11월 28일 제49차 제1소위원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 검토 등
 사회보호법 TFT 회의
 제64차 제2소위원회
 수용자 영치품 휴대허가 기준완화(안경휴대) 개선권고 등 167건 의결

2003년 12월

- 12월 1일 제53차 제3소위원회
 사회적 신분에 의한 고용 차별사건 기각 등 70건 의결
- 12월 3일 제50차 제1소위원회
 대학시간강사 차별사건 검토 등 2건 처리
- 12월 4일 제12차 비정규TFT 회의
- 12월 5일 사회보호법 TFT 회의
- 12월 8일 비정규TFT 회의



- 12월 8일** 에드워드 미 인디애나 법대교수, 민경훈변호사, 위원장 면담
 한국의 인권현황 및 국제인권법에 대한 토론, 위원회에 인디애나 대학 국제
 인권법 프로그램 학생 인턴십 요청
 인권 사진집 <눈·밖에·나다>발간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권고
 제2차 고문방지협약국가이행보고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외교통상부에 제출
 제54차 전원위원회
 개인통보제도 국내구제절차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고문방지협약 제21조와
 제22조 수락 권고 등 7건 처리
 제65차 제2소위원회
 전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 가혹행위에 관한 사건 등 3건 의결
- 12월 9일** Indiana Law School 인권센터 George Edwards 소장(인디애나 대학교 법대 교
 수) 방문, 한국의 인권현황 및 국제인권법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
 아시아민중진보센터 대표단 위원회 방문
 제네신부 아시아민중진보센터 전 집행위원장, 샌디코니 아시아민중진보센
 터 사무국장
 외국인 노동자 차별 예방 및 국민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TV 광고물 제작 방
 영 (12월 9일~ 12월 31일, MBC, KBS, SBS 방송)
- 12월 10일** 제55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의 날 행사 개최(세종문화회관 컨벤션
 센터)
 대통령 내외 참석, 인권단체 인사 표창장 수여, <여섯 개의 시선> 감독 감사
 패 전달, 윤도현밴드 인권홍보대사 위촉
 인권 사진전 <눈·밖에·나다> 개최





12월 10일부터 일주일간 (덕원갤러리 5층)

- 12월 11일**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 회의 개최 준비 관련 국외출장 : 덴마크 코펜하겐, 노르웨이 오슬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인권기구 (유현 상임위원, 유시춘 상임위원)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개최
<여섯 개의 시선>이 천주교 주교회의가 주관하는 제13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상 영화부분 수상
- 12월 12일**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 개최(11층 배움터)
- 12월 13일** Vienna+10 아시아협의회의(Asian Consultation on Vienna Plus 10) 참석차 방콕 출장(박경서 상임위원)
제1회 직원 정보화 경진대회 실시
- 12월 15일** 2003년 보도자료집 및 기사모음집 제작
2003년도 6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사업과제 선정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 12월 16일**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유형 및 예방지침개발을 위한 공청회 개최
- 12월 17일** 사법제도와 성매매여성의 인권 토론회(11층 배움터)
- 12월 18일** 인권 현장 방문 : 중증장애인 요양·보호시설 주보라의 집(경기도 파주소재)
인권 동화 활용 공모작 시상 및 워크숍 개최
- 12월 19일**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토론회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공청회 개최
- 12월 20일** 스페인 및 모로코 인권기구 방문 (위원장, 정강자 위원, 사무총장, 인권정책국장)
- 12월 22일** 제55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보상금지규칙중개정(안) 등
- 12월 23일** 학교인권교육과정안 개발 공청회 개최



12월 26일 국가인권위 인지도 여론조사 및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발표 (12. 12~12. 26 실시)

12월 29일 제2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상 시상식 개최 (가작 2편)
직원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강사: 서울대 성희롱·성폭력상담소 신상숙 전문위원)
인권상황실태조사 결과 발표회(11층 배움터)
제54차 제3소위원회
독학사의 교사자격증 취득 차별사건 권고 등 90건 의결

12월 31일 2003년도 종무식(11층 배움터2)
위원장 송년사, 표창장 전수(모범공무원1, 우수공무원1, 업무유공11명,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입상자 11명)





5.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명		A 규 약
내용		
정식 명칭	국문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영문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CESCR
채 택 일		1966. 12. 16.
발 호 일		1976. 1. 3.
당사국 수		148(2003. 11. 2.기준)
조약감시기구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위원회 혹은 사회권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대한민국 적용일		1990. 7. 10.
정부보고서		1994. 1. 5./ 1999. 10. 12.
반박보고서		1995. 4./ 2001

구분	문 제 영 역	권 고 내 용
제 1 차 정부 보고서에 대한 권고의 견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의 국내법상 지위 • 노조결성, 교사단결권 • 파업의 과도한 제한 • 경찰의 노조활동공격 • 여성차별(가정폭력, 국적법, 교육기회, 고용차별) • 높은 산업재해 • 영세업체 최저임금 배제 • 외국인 근로자 차별 • 의무교육 기회 부족 • 고등교육 기회 부족 • 저소득층 교육기회 부족 • 열악한 주거환경 • 강제철거 • 취약계층 지원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의 국내법적 지위보장 • 규약에 대한 교육 • 규약의 사법절차 적용 • 국내법과 규약의 일치노력 • 단결권, 파업권 보장 • 여성차별 철폐, 구체적 프로그램 작성 • 산업안전 강화 • 최저임금제 전면 실시 • 외국인 근로자 동등대우 • 주거권 보장 • 의무교육,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 인권교육의 실시 • 국빈, 무주택, 장애인 복지제도 확충

구분	문 제 영 역	권 고 내 용
제 2 차 정 부 보 고 서 에 대 한 권 고 의 건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해고와 감원, 고용안정성의 퇴보, 수입 불균등의 증가, 결혼기정의 증가, 많은 사람들을 주변화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급속한 경제발전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경제회복과 시장경쟁을 위해 어떤 권리 혹은 어떤 집단은 권리가 희생됨. • 실업, 불안전 고용, 주택보급, 빈곤, 이주에 대한 통계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는 정부와 다른 기구, 이를테면 유엔의 기관과 비정부기구가 제공하는 통계와 큰 차이가 있으므로 데이터 수집방법을 신뢰할 수 없음. • 규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짐으로써 특별법 등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음 •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남아선호, 여아낙태에 의한 여성의 재생산권 위협, 호주제도, 가정폭력, 낮은 고등교육률, 여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남녀의 평균임금차이) • 비정규직 차별 • 높은 산업재해 • 교사들의 단체교섭 및 파업금지 • 파업에 대한 불법화 •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아동노동 • 도시의 인구집중 및 시골의 공동화 (정부정책의 도시집중화) • 기초생활보장법, 연금법 • 장애인 의무고용 쿼터제 불이행 • 철거민에 대한 보상 및 임시거주 제공 미비 • 높은 사설의료기관 비율로 인한 주변화된 집단의 의료서비스 접근 제한 • 질 낮은 공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 여성의 고등교육 기회 부족 • 의무교육 기회 부족 • 과도하게 엄격한 난민지위 인정기준 • 인권교육이 인권 관련 종사자들의 필수교육과목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보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관련기구와 관계부처는 권리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 방법을 검토 •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 규약에 모든 국내법(특별법, 규약가입보다 먼저 제정된 법 포함)보다 우선적인 지위 보장 • 신설된 여성부에 적절한 자원제공 • 비정규직의 권리보장 • 교사와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파업권 보장 • 아동성매매와 아동 노동금지 및 피해자들의 보호와 복구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 정부내 주택문제 지원을 위한 진정을 다루는 담당관 지정 • 강제철거민에 대한 보상 및 임시 거주지 제공 • 공교육제도 강화계획수립(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계획, 사교육에 비한 공교육 제도의 기능과 질에 대한 재검토, 고등교육을 포함한 모든 수준의 교육 접근성에 대한 연구,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증진을 위한 교과과정 재평가) • 인권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대규모 캠페인 실시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 수립



□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명		B 규 약
정식 명칭	국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영문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CCPR
채택일	1966. 12. 16.	
발효일	1976. 3. 23. (단 제41조는 1979. 3. 28.에 발효)	
당사국 수	151 (2003. 11. 2.기준)	
조약감시기구	인권이사회 혹은 자유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대한민국 적용일	1990. 7. 10.	
유보조항	제14조 5항 및 7항, 제22조, 제23조 4항, 제41조	
유보철회	제23조 4항을 1991. 3.15.에 유보철회 / 제14조 7항을 1993.1.21.에 유보철회	
정부보고서	1991/ 1997. 10. 2 / 2004년 제출 예정	
반박보고서	1992/ 1999	
정식 명칭	국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영문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CCPR-OP1
채택일	1966. 12.16.	
발효일	1976. 3.23.	
당사국 수	104 (2003. 11.2.기준)	
대한민국 가입일	1990. 4.10.	
대한민국 발효일	1990. 7.10.	
정식 명칭	국문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영문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 CCPR-OP2-DP
채택일	1989. 12.15.	
발효일		
당사국 수	50 (2003. 11.2.기준)	



구 분	문 제 영 역	권 고 내 용
제 1 차 정부 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과 규약 불일치 • 평등권 불철저 • 국가보안법 • 안보상황 과대평가 • 경찰력 과도 사용 • 안기부 수사권 행사 • 북한방문 금지 • 재소자 전향제도 • 광범위한 국가기밀 • 사형규정범죄 과다 • 기소전 구금기간 과다 • 정치적 투옥 • 여성차별 • 죄형법정주의 • 집회와 시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과 헌법 일치 노력 • 국가보안법 점진적 폐지 • 사형규정 범죄 축소 • 죄형법정주의 준수 • 평화적 집회시위보장 • 규약에 대한 유보철회 • 인권규약에 대한 교육홍보
제 2 차 정부 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비준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는 헌법 6조를, 규약 가입 후 시행된 법은 규약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함. •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지속적 적용 • 국가보안법상 불합리하게 광범위한 '반국가조직'고무 행위의 범위 •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가부장제 사회(태아성감별, 불균형적인 남녀 성비, 높은 모성사망률) • 가정폭력과 부적절한 법과 관행 • 강간 피해여성에게 저항의 증거 요구, 고소를 피하기 위해 강간 피해여성과 혼인, 부부강간을 범죄시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안법 단계적 폐지 • 국가보안법 7조의 긴급한 개정 • 폭력으로부터 여성보호를 약화시키는 현존 법규정을 없애고, 가정폭력방지법을 강화 • 남녀차별금및구제에관한법의 효과적 이행과 여성에게 동등한 고용기회와 조건보장 • 체포, 구금에 대한 본 규약 9조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 • 고문조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 • 형사절차 개혁 • 준법서약제 폐지 • 법관임용제도에 대한 완전 정보공개 •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입법·집회장소 제한 폐지





	문 제 영 역	권 고 내 용
제 2 차 정 부 보 고 서 에 대 한 권 고 의 건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고용차별, 소기업 고용 여성에 대한 보호미흡, 남녀간의 임금격차 • 피의자 구속에 대한 제한적 실질심사 • 지나치게 긴 재판 전 구금 기간 • 고문과 비인도적인 처우,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 •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결수 준법서약제도 • 판사재임용제도에 의한 사법적 독립성 침해 • 광범위한 도청과 정보의 남용 • 집회장소에 대한 지나친 제한 •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결성의 자유 제한 • 유보조항(규약 제14조 5항: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 제22조: 노동조합 결성, 결사의 자유) • 규약위반에 대한 구제 미흡 •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철회 • 개인통보(진정)에 대해 국내법이 아니라 규약이 정한 대로 즉각 보상 • 공무원, 의료인 등에게 인권교육 실시



□ 고문방지

내용		규약명	고 문
정식 명칭	국 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영 문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f Punishment : CAT
채택일			1984. 12.10.
발효일			1987. 6.26.
당사국 수			133 (2003. 11. 2.기준)
조약감시기구			고문방지위원회 (Committee against Torture)
대한민국 적용일			1995. 2.8.
정부보고서			1996. 5./ 2004년 제출 예정
반박보고서			1996.11.

구분	문 제 영 역	권 고 내 용
제 1 차 정 부 보 고 서 에 대 한 권 고 의 견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벌법상 고문범죄에 대한 정의의 부재 • 자백유도를 위한 고문 • 피의자에 대한 장기간 심문 • 고문범죄 책임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미흡 •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 • 고문피해자 보상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범죄규정 도입 • 인권조약과 인권보호 기준에 따른 국내법 정비 • 경찰, 검찰 등 법집행 공무원과 의료인들에 대한 인권교육 • 구금, 수감장소를 감찰하는 독립적 정부기구 설치 • 고문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위원회에 조사결과 보고 • 구속기관 단축 •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 • 고문방지조약 유보조항(다른 당사국의 불이행에 대해 통보하고, 이에 대해 위원회가 심리할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 당사국의 개인이 위원회에 피해사실을 보고할 수 있는 조항) 철회



□ 여성차별철폐

내용		규약명	여 성
정식 명칭	국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영문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CEDAW	
채택일		1979. 12.18.	
발효일		1981. 9.3.	
당사국 수		174(2003. 11. 2.기준)	
조약감시기구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대한민국적용일		1985. 1.26	
유보조항		제9조, 제16조 1항 중 (c),(d),(f),(g) 유보 비준	
유보철폐		16조 제1항 중 (c),(d),(f)를 1991. 3.15.에 유보철폐 / 제9조를 1999.8.24.에 유보철폐	
정부보고서		1986/ 1989/ 1994/ 1998	
반박보고서		1998	
정식 명칭	국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영문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CEDAWOP	
채택일		1999. 10.6.	
발효일		2000. 12.22.	
당사국 수		53 (2003. 11.2.기준)	



구분	문 제 영 역	권 고 내 용
제 3 · 4 차 정 부 보 고 서 에 대 한 권 고 의 견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조항(2,4,9,16조) •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정책의 실제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 부족 • 남녀고용평등법이 차별에 대해 완전히 정의하고 있지 않음. • 여성폭력의 만연 • 정책결정, 사법분야에 여성참여 미흡 • 직장내 성희롱, 사적부문(private sector)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미흡, • 직종분리, 남녀임금격차, 고급여성 인력 고용기회 미흡,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 부족 • 우선해고와 파트타임 여성노동자의 증가 • 농촌여성의 지위하락 • 여성특별위원회의 지위와 예산 • 남녀차별적인 최하 혼인연령제한 • 높은 낙태율 • 불평등한 상속법 • HIV/AIDS여성정보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에 일치하도록 헌법과 기타 관련법에서 차별정의 • 2000년 이전에 유보조항 철회 • 성별분리통계자료에 의한 법과 정책이행에 대한 상세한 보고 • 법률지원에 대한 홍보 및 법에 대한 여성의 의해를 돕기 위한 대책수립 • 차별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 법률가, 의료인, 법집행관 등에 대한 성인지적 훈련 등 종합대책 마련 • 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쉼터 설치 • 여성의 정치참여 및 교육지원, 여성지도자에 대한 인식향상, 정당의 여성쿼터제(30%) 도입, 사적부문에도 여성쿼터제 도입 • 파트타임 여성노동자 증가에 대한 통계 제공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이행 및 여성의 무보수 노동 인식 • 공사영역 여성 동일보호 • 유급출산휴가 연장 • ILO조약 110, 111호 비준 • 성별 제한적인 채용 및 광고 제거 •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신고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 농촌여성의 지위와 복지보호 • 장애여성의 사회보장



□ 아동의 권리

내용		규약명	아 동
정식명칭	국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영문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채택일		1989. 11.20.	
발효일		1990. 9.2.	
당사국 수		192 (2003. 11. 2.기준)	
조약감시기구		아동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대한민국 적용일		1991. 12.20.	
유보조항		제9조 3항, 제21조 (a), 제40조 2항 (b),(v) 유보 비준	
정부보고서		1994. 11./ 2000	
반박보고서		1996/ 2002	
정식명칭	국문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영문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CRCOPAC	
채택일		2000. 5.25.	
발효일		2002. 2.12.	
당사국 수		57 (2003. 11.2.기준)	
대한민국 서명일		2000. 9.6.	
정식명칭	국문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영문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CRCOPSC	
채택일		2000. 5.25.	
발효일		2002. 1.18.	
당사국 수		64 (2003. 11.2.기준)	
대한민국 서명일		2000. 9.6.	



구분	문 제 영 역	권 고 내 용
제 1 차 정 부 보 고 서 에 대 한 권 고 의 건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유보조항(9조3항: 아동의 부모 면접권 보장, 21조 a항: 입양 절차 제한, 40조 2항 5호: 형법위반 아동에 대한 심사) • 조약이행, 감시체제 미흡 • 아동 관련 정책 평가를 위한 양적, 질적 데이터 수집을 위한 대책 부족 • 교사, 사회사업가, 판사, 법집행관, 심리학자, 보건인 등 아동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조약내용 교육 부족 • 아동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 확대를 위한 이행미흡 • 여아, 장애아, 혼외아동에 대한 배려 부족 • 가족에 대한 지원부족 • 국적권, 사상, 양심, 표현, 결사, 집회자유 미흡 • 입양아동의 이익에 대한 배려 부족 •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아동유기와 아동가장 • 체벌의 만연 • 경쟁적 풍토의 교육 • 아동고용문제 • 소년사법제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약유보철회 • 조약교육 홍보강화 • 여아, 장애아, 혼외출생자 보호, 남녀차별적인 최하 혼인연령 제한 폐지 • 아동 관련 전문가 교육 실시 • 국내법과 조약의 일치(비차별, 아동의 최대이익, 아동의 견해존중) • 아동 ombudsman 혹은 이와 동등한 독립적인 진정·감시 기구 설치 및 민간단체와 협력 • 국적법 개정 • 아동 관련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방법과 분리지표체계 마련 • 체벌금지 • 최소 고용연령 조정 • 입양제도 개선 • 아동권리에 국가자원 배분강화 • 가정, 학교, 사회에 대한 아동참여강화 • 양심, 표현, 결사자유보장 • 가족지원, 아동가장지원확대 •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감시체제 구축 • 교육정책 재검토 • 소년사법제도 개선 • 위원회 회의록과 권고의 홍보



□ 인종차별철폐

내용		규약명	인종
정식명칭	국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영문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CERD	
채택일		1966. 3.7.	
발효일		1969. 1.4.	
당사국 수		169 (2003. 11. 2.기준)	
조약감시기구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대한민국 적용일		1979. 1. 4.(단 제14조 선언은 1997. 3. 5.에 적용)	
정부보고서		1980/1982/1984/1986/1988/1990/1992/1996.5.30./ 1998(9·10차 합본)/2002(11·12차 합본)	
반박보고서		2003	

구분	문 제 영 역	권 고 내 용
제8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차별 금지규정 미흡 • 인종차별 처벌규정 부재 • 외국인거주자 차별 • 혼혈아동 차별 • 의견의 자유보장 미흡 • 외국인 근로자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차별 금지규정 도입 • 인종차별 처벌조항 도입 • 외국인 거주자 차별 철폐 • 인종·외국인 관련 정보제공 • 외국인 근로자 보호
제9·10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 피부색, 혈통, 출신국가, 출신민족에 의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의 부재 •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법의 부재 • 외국인 노동자(특히 불법 체류 노동자)와 거주자의 불안정한 지위 • 혼혈아동 및 망명 희망자와 혼인한 여성에 대한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 피부색, 혈통, 출신국가, 출신민족에 의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 도입 • 외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대책 마련 • 외국인 거주자 차별 철폐 • 인종차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 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확산하고 교육, 훈련 위한 자원제공



□ 이주노동자의 권리

내용		규약명	B 규 약
정식명칭	국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국문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 MWC	
채택일		1990. 12.18.	
발효일		2003. 7.1.	
당사국 수		23 (2003. 11.2.기준)	
조약감시기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위원회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대한민국 가입 여부		미가입	





6. 유엔인권기구 및 국제NGO 현황

인권 관련 유엔회의	
총 회 (General Asse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유엔의 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도 토의할 수 있음 • 특정지역의 인권침해 사태가 총회의 주요 토의 의제가 되며, 그 결과 일정한 권고가 채택되기도 함 • 국제인권규범을 정립하는 장의 역할
경제사회이사회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의 6대 주요기관 중 인권문제를 업무상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기관 •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고할 수 있음(유엔헌장 제62조 제2항) • 협약안 작성 총회제출 및 국제회의의 소집 권한
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1974년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인권증진을 위한 기구로 설립 (결의 51) • 회기 : 위원국들은 1년에 3~4월 6주간 제네바에서 회의 • 목적 : (a)국제적 인권규범의 수립 (b)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진정서 심의, 결과보고 (c)유엔 내의 새로운 인권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책의 제안 (d)인권 관련 활동에 대한 자문 (e)인권소위 보고 검토 • 구성 : 53개국 대표로 구성된 정치적 기구의 성격이며 임기는 3년 /산하 보조기관으로 인권소위(Sub-CHR),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및 대표(Special Representative), 실무그룹(Working Group),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등이 있으며, 이들은 위원회 내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에 의해 설치되었다.
인권소위원회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1974년 인권위원회 설립시 산하에 설치 • 회기 : 매년 제네바에서 4주간의 회기 • 목적 : (a)인권 권리장전에 입각한 각종 인권선언 및 협약 초안작성 (b)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문제에 관해 인권위에 권고 (c)인권관계 진정서 심의 및 결과 인권위에 권고 (d)기타 경제사회이사회 및 인권위에서 위임하는 인권문제 • 구성 : 지역배분 원칙에 따라 인권소위원회 위원(expert)은 개인 자격으로 26명 선출 / 임기4년 / 각국별 정위원 및 교체위원 각 1명으로 구성 • NGO와 밀접한 연대 유지
유엔인권기구	
인권고등판무관실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1993년 총회의 결의(48/141)로 사무국 내에 설치 • 1대 고등판무관 Mr. José Ayala-Lasso, 에콰도르 ('94-'97) • 2대 고등판무관 Ms. Mary Robinson, Ireland ('97-'02) • 3대 고등판무관 Mr. Vieira de Mello ('02~'03) • 목적 : (a)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세계적인 협력관계 구축 (b)인권침해 방지와 긴급상황에 대처 (c)지속적인 평화원칙에 따라, 인권증진·민주주의·발전 증진 (d)전 유엔 조직에 걸친 유엔 인권 프로그램 강화 조정 (e)인권조약 감시기구 등의 활동 지원 • 구성 : 제네바 본부의 20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상설기구로 설치, 세계 각국에 지부 설치 • 1982년 설치된 인권센터가 인권고등판무관실 신설과 함께 통합됨



난민고등판무관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1951년 총회 결의(319/1949)에 의해 실시 • 9대 고등판무관 Mr. Ruud Lubbers ('01~) • 목적 :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 • 구성 : 53개국 정부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예산 책정, 승인, 감독,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세계에 100여 개의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음
인권조약감시기구 (개별조약에 근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혹은 사회권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협약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 구성 : 임기 4년의 위원 18명 • 회의일정 : 매년 2회(4,11월) 제네바에서 개최 • 정부보고서 제출 주기 : 최초 2년, 매 5년
인권이사회 혹은 자유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협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 구성 : 임기 4년의 위원 18명 • 회의일정 : 매년 3회(3,7,10월) 제네바에서 개최 • 정부보고서 제출 주기 : 최초 1년, 매 5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협약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 구성 : 임기 4년의 위원 23명 • 회의일정 : 매년 2회(1,6월) 빈과 뉴욕에서 교대로 개최 • 정부보고서 제출 주기 : 최초 1년, 매 4년
아동권리위원회 (Committee on Rights of the Chi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협약 : 아동권리협약(CRC) • 구성 : 임기 4년의 위원 10명 • 회의일정 : 매년 3회(1,4,9월) 개최 • 정부보고서 제출 주기 : 최초 2년, 매 5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협약 :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 구성 : 임기 4년의 위원 18명 • 회의일정 : 매년 2회(3,8월) 제네바에서 개최 • 정부보고서 제출 주기 : 최초 1년, 매 4년
고문방지위원회 (Committee against Tor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협약 : 고문방지협약(CAT) • 구성 : 임기 4년의 위원 10명 • 회의일정 : 매년 2회(4,5,11월) 제네바에서 개최 • 정부보고서 제출 주기 : 최초 1년, 매 4년
기타 인권 관련 유엔 전문기구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1965년 • 목적 :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 구성 : 전세계 136개국의 지부를 통하여 166개국에 대한 원조 • 기능 : 특별기금조성, 기술원조 사업, <인간개발보고서> 발간 등
유엔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1964년 • 목적 : 개발도상국의 국제경제 통합 및 무역개발 • 구성 : 192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상설사무국이 있음 • 기능 : 무역 및 경제 관련 정부간 토론, 연구, 정책분석 및 자료수집, 기술지원 등



<p>유엔아동기금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1946년 유엔 총회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1953년 상설화 • 목적 : 개발도상국 등에서 기아에 시달리는 어린이에 대한 원조 • 구성 : 세계 36개국의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7개 지방사무소 및 126개 국가사무소를 가지고 160개국에 대한 원조를 하고 있으며, 정부 및 개인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됨 • 기능 : 아동에 대한 구호물자와 서비스 제공 등으로 아동인권 보호
<p>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1919년, 1946년 유엔이 출범하면서 최초 유엔 전문기관으로 명명 • 목적 : 기본노동권의 최소기준을 조약 혹은 권고의 형식으로 국제노동기준을 구축하여, 사회정의 및 노동권,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함 • 구성 : 각국의 노사정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1회 개최되는 총회, 3회 개최되는 이사회 및 상설 사무국이 있음 • 기능 : (a)기본노동권의 최소기준을 조약 혹은 권고의 형식으로 국제노동기준을 구축, (b)노동정책 및 직업훈련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
<p>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1946년 유네스코 헌장을 발효하면서 설립 • 목적 :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국가간 협력증진 및 세계의 안보와 평화 구축 • 구성 : 190개 회원국('03.10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총회와 집행이사회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능 : (a)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b)대중 교육과 문화 보급 촉진 및 장려 (c)지식의 유지, 증대, 전파, 추구
<p>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1948년 유엔의 특별기구로 설립 • 목적 : 인류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 • 구성 : 192개의 회원국 보유, 세계보건총회 및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능 : (a)중앙검역소 업무와 연구자료 제공 (b)유행성 질병 및 전염병 대책 후원 (c)회원국의 공중보건 관련 행정 강화와 확장 지원
<p>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1945년 • 목적 : 삶의 질과 영양공급의 증진, 농업생산성의 향상, 농업 조건 향상 • 구성 : 187개국과 유럽연합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총회, 이사회와 8개국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무국으로 구성 • 기능 :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업여건의 향상 (b)식량생산 증가를 위한 장기적 전략 (c)천연자원 보전과 식량안보
<p>인권 관련 유엔 독립기구</p>	
<p>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 유엔헌장에 근거한 유엔의 주요사법기구로서 1946년 설립되었고, ICJ 성문법이 존재 • 목적 : 국가간 법적 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 국제기구의 법적 자문 • 구성 : 9년 임기를 가진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유엔총회와 안보리에 의해서 각각 선출됨. 국가별 재판관은 최대 1인
<p>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년 설립 노력의 결과로 2002년 7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조약(Rome Statute)이 60개국 이상의 비준으로 발효됨 • 목적 :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 • 특징 : ICJ는 국가간 분쟁을 다루는 반면, 국제형사재판소는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하여 개인을 형사처벌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주요 국제 인권 NGO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 1961년, 영국 런던 •목적 : 모든 양심수의 석방, 정치범에 대한 공정한 재판, 고문과 사형제도 폐지, 모든 비사법적인 처형과 실종의 종식 •기능 : 방대한 국제적 조직망을 바탕으로 연대서한을 발송하며, 연례보고서를 발간
인권감시그룹 (Human Rights Wat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 1975년 타결된 헬싱키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NGO로 출범 •목적 : 세계 70개 나라의 인권상황을 감시 •기능 :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 조사, 연구 및 자료 발간
인권인터넷 (Human Rights Inter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 1976년, 캐나다 주재 •목적 : 세계 인권공동체의 정보교환 •특징 : 세계 인권 관련 5,000개 기관 및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인권활동가와 인권기관을 정보화 차원에서 돕고, 정부 및 비정부기구에 인권 및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교육하는 것을 추구함
국제인권옹호연맹 (International League of Human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 1942년, 뉴욕 •목적 : 개인에 대한 정치적 인권보호 •특징 : 주로 유엔, 유네스코, ILO 등 국제기구에서 영향력 행사가 목표
국제법률가협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 1952년, 베를린에서 설립되어 제네바에 본부가 있음 •목적 : 법치주의와 인권 향상 •특징 : 60여 나라의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코, 아프리카 통일기구(OAU), 유럽평의회 등의 협의자격을 부여받음
국제민주법률가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 1946년 파리에서 창립되어 브뤼셀에 소재 •목적 :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정치적, 경제적 불의에 반대하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 •특징 :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80개국 법률가들로 구성
아시아인권위원회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 1986년, 홍콩에 본부 •목적 : 아시아 지역의 인권 의식 확산, 인권침해 희생자들 구제를 위한 국제적, 아시아적 여론 형성 •특징 : 아시아지역 법률가 및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8년 아시아인권헌장(Asian Human Rights Charter)을 발표하는 등 아시아지역 인권시스템 구축에 큰 노력을 하고 있음
아시아인권교육정보센터 (Asian Regional Resource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 ARR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 1992년 •목적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고 홍보 •기능 : (a)시민을 위한 교육 교재 개발 (b)홍보 (c)자료의 DB구축 (d)인권교육기구들의 네트워크 구축 (e)인권교육 전문성의 교류 (f)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유엔인권교육10개년행동계획을 이행을 촉진



7. 우리나라의 국제인권협약 가입 현황

협약명	협약채택 (발효)	당사국 수	우리나라 가입 (발효)	유보조항 (유보철회)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48. 12. 9. (51. 1. 12.)	133 * '01.10월 기준	50. 10. 14. (51. 12. 12.)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52. 12. 20. (54. 7. 7.)	115 * '02.8.25. 기준	59. 6. 23. (59. 9. 21.)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49. 12. 2. (51. 7. 25.)	74 * '02.2.5. 기준	62. 2. 13. (62. 5. 14.)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54. 9. 28. (60. 6. 6.)	54 * '02.2.5. 기준	62. 8. 22. (62. 11. 20.)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65. 12. 21. (69. 1. 4.)	169 * '03.11.2. 기준	78. 12. 05. (79. 1.4.)	*14조 선언(1997. 3. 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79. 12. 18. (81. 9. 3.)	174 * '03.11.2. 기준	84. 12. 27. (85. 1. 26.)	16조1항 (g) (16조1항 중(c),(d),(f) '91.3.15. 철회 / 9조 '99.8.24. 철회)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66. 12.16. (76. 1. 3.)	148 * '03.11.2. 기준	90. 4. 10. (90. 7. 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66. 12.16. (76. 3. 23.)	151 * '03.11.2. 기준	90. 4. 10. (90. 7. 10.)	14조5항, 22조 (23조4항 '91.3.15. 유보철회 / 14조7항 '93.1.21. 유보철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66. 12. 16. (76. 3. 23.)	104 * '03.11.2. 기준	90. 4. 10. (90. 7. 10.)	



협약명	협약채택 (발효)	당사국 수	우리나라 가입 (발효)	유보조항 (유보철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89. 11. 20. (90. 9. 2.)	192 * '03.11.2. 기준	91. 11. 20. (91. 12. 20)	9조3항, 21조(a), 40조2항 (b),(v)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51. 7. 28. (54. 4. 22.)	140 * '02.2.5. 기준	92. 12. 3. (93. 3. 3.)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체약 국의 영역에서 3년 거주요 건을 충족한 난민에 입법상 의 상호주의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제7조 유보 *선언내용: 대한민국은 제1 조 A에 규정된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 라는 용어가 "1951년 1월 1 일 이전에 유럽 또는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는 것을 이 협약 제1조 B에 따라 선언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67. 1. 31. (67. 10. 4.)	138 * '02.2.5. 기준	92. 12. 3 (92. 12. 3.)	대한민국은 체약국의 영역 에서 3년 거주요건을 충족 한 난민에 입법상의 상호주 의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난 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7 조 유보
고용 정책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122) Convention Concerning Employment Policy	64. 7. 9. (66. 7. 15.)	94 * '03.12.17 기준	92. 12. 9. (93. 12. 9.)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84. 12. 10. (87. 6. 26.)	133 * '03.11.2. 기준	95. 1. 9. (95. 2. 8.)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100) Convention Concerning Equal Remuneration for Men and Women Workers for Work of Equal Value	51. 6. 29. (53. 5. 23.)	161 * '03.12.17 기준	97. 12. 8 (98. 12. 8.)	



협약명	협약채택 (발효)	당사국 수	우리나라 가입 (발효)	유보조항 (유보철회)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111) Convention Concerning Discrimination in respect to Employment and Occupation	58. 6. 25. (60. 6. 15.)	159 * '03.12.17 기준	98. 12. 4. (99. 12. 4.)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00. 5. 25. (02. 2. 12.)	57 * '03.11.2. 기준	[서명 00. 9. 6.]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00. 5. 25. (02. 1. 18.)	64 * '03.11.2. 기준	[서명 00. 9. 6.]	
기업의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135) Convention concerning Protection and Facilities to be Afforded to Workers' Representatives in the Undertaking	71. 6. 23. (73. 6. 30.)	74 * '03.12.17 기준	01. 12. 27. (02. 12. 27)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98. 7. 17. (02. 7. 1.)	92 * '03.12.17 기준	02. 11. 13. (03. 2. 1.)	



8. 위원회 발간자료

연번	자 료 명	저(편)자	발행시기	담당부서
1	Report on main activities in 2002 & plan in 200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2003. 1	국제협력담당관실
2	아시아 시민사회 포럼 (ACSF) 참가결과보고서	정강자	2003. 1	국제협력담당관실
3	차별관련 법령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	2003. 1	차별조사1과
4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민주화실천가족 운동협의회	2003. 1	조사기획담당관실
5	유치장 시설환경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교도소인권모임	2003. 1	인권침해조사1과
6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설명회	국가인권위원회	2003. 2	국내협력과
7	기간제 교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 청문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	2003. 2	차별조사1과
8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2	국가인권위원회	2003. 3	정책총괄과
9	(실무자를 위한) 인권핸드북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협력국	2003. 3	국내협력과
10	구금시설 내 진정권 보장 현황 실태조사	이순래, 장규원	2003. 3	인권상담센터
11	면전진정 가이드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2003. 3.	인권상담센터
12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쟁점과 대안	국가인권위원회	2003. 4	정책총괄과
13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청문회	국가인권위원회	2003. 4	조사기획담당관실
14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보장을 위한 연구	김정범 등저	2003. 4	인권연구담당관실
15	제1차 전문상담원 기본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2003. 5	인권상담센터
16	2003년도 지역 인권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국가인권위원회	2003. 5	국내협력과
17	2003년도 제1차 인권교육 강사단 워크숍	국가인권위원회	2003. 5	인권교육담당관실
18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보고서	인권침해조사국 조사기획담당관실	2003. 5	조사기획담당관실
19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5	조사기획담당관실
20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3. 6	법제개선담당관실



연번	자 료 명	저(편)자	발행시기	담당부서
21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3. 7	법제개선담당관실
22	구금시설내 계구사용과 수용자의 인권 (공청회 자료집)	신양균 외	2003. 7	인권침해조사2과
23	인권침해조사 법규집(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	2003. 7	인권침해조사1과
24	십사일反 : 10인의 만화가가 꿈꾸는 차별 없는 세상	박재동 외 그림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창작과 비평사 발행	2003. 8	공보담당관실
25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토론회 자료집)	이인호 외	2003. 8	정책총괄과
26	정신보건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방지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2003. 8.	인권상담센터
27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 참가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실	2003. 9	국제협력담당관실
28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3.10	정책총괄과
29	북한인권 간담회 : 북한의 식량난과 재외탈북자의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2003.10	법제개선담당관실
30	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방향 : 학교 인권교육과정 개발 워크숍	국가인권위원회	2003.10	인권교육담당관실
31	인권상담 가이드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2003.10	인권상담센터
32	인권의식 확장을 위한 제1차 전문상담원 기본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2003.10	인권상담센터
3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nual Report 2002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2003.10	정책총괄과
34	입사지원서의 차별적 항목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3.10	차별조사2과
35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3.10	인권연구담당관실
36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	한국사회학회	2003.11	인권연구담당관실



연번	자료명	저(편)자	발행시기	담당부서
37	인권교육 실태와 발전방향 : 국가인권교육계획 관련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03.11	인권교육담당관실
38	장애인권리협약(안) 관련 제2차 유엔 특별위원회 참가 결과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3.11	국제협력담당관실
39	군인문사 관련 정책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03.11	법제개선담당관실
40	눈 밖에 나다 (사진집)	곽상필 등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휴머니스트 발행	2003.12	공보담당관실
41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3.12	인권연구담당관실
42	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3.12	인권연구담당관실
43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03.12	법제개선담당관실
44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유형 및 예방지침(안) 개발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이호중 등저	2003.12	인권연구담당관실
45	사법제도와 성매매 여성의 인권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03.12	정책총괄과
46	인권동화책 및 매뉴얼을 활용한 인권교육 워크숍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3.12	인권교육담당관실
47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공청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3.12	정책총괄과
48	2003 기사모음집 : 2003.12.1 - 2003.11.30	국가인권위원회	2003.12	공보담당관실
49	2003 보도자료집 : 2003.12.1 - 2003.11.30	국가인권위원회	2003.12	공보담당관실
50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발표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3.12	인권연구담당관실
51	2003년도 인권논문집 : 제2회 인권논문공모 수상작	국가인권위원회	2003.12	인권연구담당관실
52	인권교육모범사례집 : 2003년 인권교육모범사례 공모전 수상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2004.12	인권교육담당관실
5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안내서	유엔인권고등 판무관실 지음, 국가인권위원회 옮김	2003.12	정책총괄과



연번	자 료 명	저(편)자	발행시기	담당부서
54	국내 거주 화교 인권실태조사	성공회대학교 (박경태 등저)	2003.12	차별조사1과
55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두레방 (김동심 등저)	2003.12	차별조사2과
56	구금시설 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	한림대학교 (조은경, 이인경 저)	2003.12	인권연구담당관실
57	장한 친구 희원이 (인권동화)	윤기현 글, 양상용 그림	2003.12	인권교육담당관실
58	다르게 함께 사는 세상 : 장애인 인권교육 입문	박승희	2003.12	인권교육담당관실

찾아보기

ㄱ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39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71
개인통보제도	54, 207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9, 232, 296
경찰윤리	180
계구사용(구급시설)	69, 125, 127
계호근무준칙	47, 127
고문방지협약	54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248
고용허가제도	4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38
공무원임용시험령	50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49, 74
공업및상업부문에서근로감독에 관한협약	29
공인민간자격	148
공중위생관리법	34
광주민중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법률	23
교원자격검정령	161
교육공무원법	48, 153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 처리규칙	37, 68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37, 45, 67
국가공무원법	15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59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150
국가배상법시행령	154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2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4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	255
국가통보제도	55
국민건강보험법	150
국민연금법	33
국제형사재판소	34

군의문사	72
군형법	133
귀환 납북자	76
근로기준법	162
기간제 교원	66, 158

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132
납북자	76, 243

ㄷ

대법원규칙	132
대북인권결의안	228, 243
도로교통법	27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56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30
동성애자	162

ㄹ

미국 국무부 연례인권보고서	229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232
민간경상보조금사업	194
민사집행규칙	132

ㅁ

반공법	223
별정직 공무원	151
병역법시행령	26
보안업무규정	166
보호감호제도	223
북한이탈주민	229, 244
북한자유법안	232
불법체류	42, 58

INDEX

비엔나 선언	257
비엔나회의	193, 201
비학생청소년	159

ㄱ

사면법	166
사생활 침해	67, 124, 132
사이버인권교육시스템	215
사형제도	63, 77
사회보호위원회	225
산업안전보건법	28
산업연수제	4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4, 162
산재장해자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162
지침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지침	25
생명윤리법	242
성매매	42, 75
성적지향	162
성희롱예방교육	155
세계인권기구대회	209
소년법	22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47
수용자집필제도운영지침	47
수용자합동점검시행지침	125
수형인명표	166
시간강사	71
시민실천프로그램개발용역사업	196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27, 39, 225

ㅇ

아·태국제이해교육원	201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	53
그래피에관한선택의정서	
아시아인권위원회	204
양성평등목표제	149
여성공무원인사관리지침	152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	52

관한협약	
여성차별철폐위원회	52
여성차별철폐협약에대한선택의정서	53
여성채용목표제	149
외국인보호시설	131
유럽연합	229
유럽인권재판소	203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255
유엔인권이사회	55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	54
이적동의서(운동선수)	130
이주노동자와그가족보호를위한국제협약	208
인간배아복제	243
인권및기본적자유보호에관한유럽규약	40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81, 240
인권홍보대사	191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 208
입국규제업무처리지침	129

ㄷ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15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30
장애인이동시설	130
장애인협약	201
제외탈북자	229, 244
정보인권	70
정신보건법	28
정신의료기관	68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23
조약감시기구회의	257
주민등록번호	60, 132
지문날인	31
지방공무원법	13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39
징벌권(구급시설)	128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5
채용신체검사	49, 74
청소년보호법시행령	163
청소년증	16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65
출입국관리법	31, 42
치료감호제도	225
치안유지법	222

㉡

테러방지법	35
특수경력직공무원	152
특수민원위로보상규정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26

㉢

평생교육법	173
폐쇄회로카메라(CCTV)	74

㉣

학교인권교육과정	176, 182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	46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161
행형법	33, 127, 225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2, 124, 166
호주제	42
혼혈인	59
휴먼라이즈위치(HRW)	229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인쇄일 | 2004년 4월 28일

발행일 | 2004년 4월 30일

발행인 | 김창국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우 100-842

<http://www.humanrights.go.kr>

전 화 | (02) 2125-9726

FAX | (02) 2125-9728

인 쇄 | P·R프린테크 (02) 2236-8787

비매품

